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2011. 12.

교육과학기술부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질의·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
|--|----|
| ■ 과학 기술 | 1 |
| ● 과학탐구대회 종목 문의 | 3 |
| ● YSC 청소년 온라인 과학탐구 대회 팀구성 질의 | 3 |
| ● 영재교육 전문적인 실시 요청 | 4 |
| ● 개정 교육 과정 과학내용 문의 | 5 |
| ● 초등학교 수학교과 난이도 관련 | 5 |
| ● 건설 기술사 계속교육 필요성 및 소관부처 | 6 |
| ●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과 교육비 지급 의무 | 7 |
| ● 기술사 공동직무능력표준의 의미 | 8 |
| ● 전문연구 요원 선발 시험관련 | 8 |
|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관련 질의 | 9 |
| ●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기준관련 | 9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10 |
| ●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신고요건 기간제한 폐지 관련 | 11 |
| ● 컴퓨터 그래픽학과가 이공계와 예체능계에 따른 자격불합리 관련 | 12 |
| ● 사업장내 연구소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 12 |
| ● 한국과 일본의 표준자오선 | 13 |
| ■ 전문 대학 | 15 |
| ●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3년제 전문대로의 편입이 가능한지 | 17 |
| ● 간호학과 4년제에 관하여 | 17 |
|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장학금 지급 기준 | 18 |

- 대학의 교원확보율 보고시 강의시수에 따른 인원산출 18
- 대학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가능 여부 19
- 대학학과 명칭 관련 19
- 대학학과 폐지관련 20
- 산업위탁교육생의 교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20
- 손해배상 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21
- 어학연수 학점인정 관련 21
- 일본전문학교졸업에 대한 전문대학자격 인정여부 22
- 임시이사 지위 소멸에 따른 이사장 직인 날인 공문서 효력 22
- 전공심화과정에서 조기졸업 가능 여부 23
- 전문대학 처장의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 23
- 전문대에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24
-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의 교직과목 이수 24
- 전문대학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능 여부 25
- 전문학력 인정여부 확인 25
- 준예산에 대한 문의 26
- 취업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26
- 퇴사시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 제적 27
- 해외대학 한국분교 설립 문의 27

■ 대학 및 대학원 29

- 국립대 법인화 관련 31
- 대학교 법인화에 관련 31
- 4년제 대학 간호학과 신설기준 문의 32
- 4년제 사립대학 교수 임용 자격에 대한 문의 33
- 각종학교관련 33
- 간호학과의 일반편입 지원자격 34
- 겸직관련(벤처기업) 34

| | |
|---|----|
| ● 계절학기 운영관련 | 35 |
| ●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정의에 관한 질의 | 36 |
| ● 공무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하는 것으로 질병 휴직 중인데 명예퇴직 가능 여부 | 36 |
| ● 교과부 인증 학교 관련 | 37 |
| ● 교수의 겸직 관련 | 38 |
| ● 교육 공무원영리업무 금지 관련 문의 | 38 |
| ●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및 기피에 관한 질의 | 39 |
|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 | 40 |
| ● 국가공무원명퇴-국립대조교수임용 후 명예퇴직급수급여부 | 41 |
| ● 국립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 관련 문의 | 41 |
| ● 국립대 기성회수당 개선요청 | 42 |
| ● 국립대교수의 등기이사 자격여부 | 42 |
| ● 국립대교수의 등기이사자격여부 | 43 |
| ●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한 문의 | 44 |
| ●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수신분에 대한 문의 | 45 |
| ● 국립대학의 겸임교원 관련 | 45 |
| ● 기타경비(학생회비 등) 통합고지에 대한 질의 | 46 |
| ● 대학 교수 확보율에 관한 질문 | 46 |
| ● 대학 이중등록관련 | 47 |
| ● 대학교 재입학에 대한 문의 | 48 |
| ● 대학교 학생수 비례 교수의 수 | 49 |
| ● 대학교수의 휴가 여부 | 49 |
| ● 대학교원 겸직관련 | 50 |
|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의 | 50 |
| ● 대학의 홈페이지 및 학과 정보 | 51 |
| ● 대학자격증 취득관련 실습비 부담 문의 | 51 |
| ● 대학총장 임기만료후 처리에 대한 문의 | 52 |

| | |
|---|----|
| ● 대학교 학과 폐지 반대 | 52 |
| ● 보건계열의 전과, 복수전공 관련 문의 | 53 |
| ● 비인가 학교 취득학점 비인정 관련 대학원 진학 할 수 있는지 | 53 |
| ● 사립대학 교원 채용에 관한 질의 | 54 |
| ● 사립대학교 교원 및 직원 징계 업무 관련 질의 | 55 |
| ● 사립대학교 교원의 정년 | 56 |
| ● 사립대학교원 겸직관련(25조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의) | 56 |
| ● 사립학교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임면권자 문의 | 57 |
| ● 산학협력기관 사용료 관련 | 57 |
| ● 시간강사 해결을 위한 방안 | 58 |
| ● 신입생의 휴학 가능여부 | 59 |
| ● 약대 입시 특별전형 관련 | 59 |
| ● 약대 전형에서 소정의 학점의 의미 | 60 |
| ● 약대 6년제 대학교의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문제점 | 60 |
| ● 약학대학 입학시 같은 군 내 1개이상 대학지원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 61 |
| ● 외국대학 교육학 이수자의 학위인정 여부 | 61 |
| ● 외국대학의 정식인가문의 | 62 |
| ● 의무 학점 관련 | 62 |
| ● 일반편입 모집인원 제한 관련 | 63 |
| ● 재입학 및 계약학과로 재입학 관련 | 63 |
| ● 재입학관련 | 64 |
| ● 전과제도(대학교) | 64 |
| ●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현황 요청 | 65 |
| ● 전업 및 비전업 시간강사 구분과 그에 따른 강의료 산정에 관한 의문 | 65 |
| ● 전임강사관련 | 66 |
| ● 전임강사와 일반강사의 비교문의 | 66 |
| ● 전임교수 신분관련 | 67 |
| ● 직급보조비에 관해서 | 68 |

| | |
|---|----|
| ● 학과/전공 개설 관련 | 68 |
| ● 학점교류시대학원과정 개설 교과목에 대한 계절학기 문의 | 69 |
| ● 국제대학원 및 영어전용학위 리스트 요청 | 69 |
| ● 미국 대학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인지 문의 | 70 |
| ● 미국에 있는 대학의 대학원 박사 과정 문의 | 70 |
| ● 환경 관련 박사학위 종류 | 71 |
| ● 겸임교원 산정관련 | 71 |
| ● 국내 대학에서 해외에 있는 자에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 | 72 |
| ● 국립교육대학원 전공부 표기 | 72 |
| ● 기초생활수급자도 로스쿨, 의치전원 갈 수 있게 개선 관련 | 73 |
| ● 대학설립운영규정관련(전공 통합관련) | 74 |
| ● 대학에서의 재적생에 대한 범위 해석 | 74 |
| ● 대학원 소속교원 확인에 관련하여 | 75 |
| ● 대학원 정원외 군위탁 자비취학추천자 입학허가 기간 관련 | 75 |
| ● 대학원 졸업을 할 수 없는 불합리성 | 76 |
| ● 대학원 졸업장 등록 관련 | 76 |
| ● 대학원 증명서 발급비용 관련 | 77 |
| ● 대학원 편입 | 77 |
| ● 로스쿨 입학시에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부정입학 관련 | 78 |
| ● 로스쿨과 법학과 관련 | 79 |
| ● 박사학위자의 논문심사중 영문사용명칭 관련 | 79 |
|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기준 수정 요청 | 80 |
| ● 비정규 신학대학원 관련 | 81 |
| ● 사립대학의 학석사 연계과정 관련 | 81 |
| ● 석박사 통합과정 관련 질의입니다. | 82 |
| ● 외국대학 졸업생 국내대학원 입학관련 | 82 |
| ● 외국인 학생의 교육대학원 입학관련 | 83 |
| ● 외국학교 졸업후 대학원 입학관련 | 83 |

| | |
|---|----|
| ● 의,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분에 대한 타 모집단위 증원이 가능한 시기 | 84 |
| ● 의, 치전원 체제 유지 지원에 관하여 | 84 |
| ● 의전원 정원축소에 따른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불이익 | 85 |
| ●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출제기관 변경 | 86 |
| ●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입학정원 감축분에 대한 타모집단위 증원 가능 시기 | 87 |
|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관련 | 87 |
| ● 의학전문대학으로 전환 경의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는지 | 88 |
| ● 이중학적 관련 | 89 |
| ● 이중학적의 범위와 기준 관련 | 89 |
|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설립 관련 질의 | 90 |
| ● 장학금 지급 약속 지키지 않는 로스쿨 제재 | 90 |
| ● 재입학과 관련 문의 | 91 |
| ● 전임교원 당해소속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관련 | 91 |
| ●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제도 개선 | 92 |
| ●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시 복수지원 허용 여부 | 92 |
| ● 특수대학원 지원 문의 | 93 |
| ● 편입으로 인한 이중학적 관련 | 93 |
| ● 편입학에 대한 질문 | 94 |
| ● 학교 인가후 재학생들의 학위에 대해 | 94 |
| ● 학생선발 시 입학자격 제한 관련 문의 | 95 |
| ● 학위위조와 관련한 박사학위 인정 여부 | 96 |
| ● 학점 인정에 대해 | 96 |
| ● MEET 시험 응시료 관련 | 96 |
| ●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 관련 | 97 |
| ● 글로벌박사펠로우십과정 | 98 |
| ● BK21사업관련 | 98 |
| ● 부실대학 구조조정 진행과정 | 99 |
| ● 총장의 자격기준 | 99 |

| | |
|--|-----|
| ● 3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시 신설여부 문의 | 99 |
| ● 각종학교 및 재단법인의 학교운영 | 100 |
| ● 건물 기부 채납 관련 질의 | 100 |
| ● 교육연구시설 임대사업 운영 가능여부 | 101 |
| ● 교육용기본재산 매입가능 여부 문의 | 101 |
| ● 교육용기본재산 사용관련 문의 | 102 |
| ● 규칙 해석 문의 | 102 |
| ● 기증재산취득 문의 | 103 |
|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해석 관련 질의 | 103 |
| ● 사립대 재정지원 관련 | 104 |
| ● 사립대학 감사에 대하여 | 104 |
| ● 사립대학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선임 관련 질의 | 105 |
| ● 사립대학 교비회계 예결산서 공개 당사자 | 106 |
| ● 사립대학 운영경비 문의 | 106 |
| ● 사립대학 통합 관련 | 107 |
| ● 사립대학 회계 문의 | 108 |
| ● 사립대학 이사회 관련 | 109 |
| ● 사립대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면적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에 관해 | 109 |
| ● 사립대학교 직제개편 절차 관련 | 110 |
| ● 사립대학의 국고집행 | 110 |
| ●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 이양 | 111 |
|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관련 | 111 |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관련 | 112 |
| ● 수익용 교육시설을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별도과정 개설 가능 여부 질의 | 112 |
| ● 외국대학 설립 요건 관련 | 113 |
| ● 외국의 대학분교 국내설치 관련 | 113 |
| ● 용역입찰시 다년계약입찰 공고 | 114 |
| ● 육아휴직 급여 관련 | 115 |

| | |
|--------------------------------------|-----|
| ● 적립금 사용의 문의 | 115 |
| ● 전임 이사에 의한 이사 선임 | 116 |
| ● 학교법인 및 대학설립에 대하여 | 116 |
| ● 학교법인의 신용장거래시 관할청의 허가여부 | 117 |
| ● 학교의 설립 관련 질의 | 118 |
| ● 해외 연구소 설치 관련 | 118 |
| ● 해외분교설립관련 | 118 |
| ● BTL에서 재정사업 전환 관련 | 119 |
| ● 총장의 산학협력단장 겸임 | 120 |
| ●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보호 등에 관한 문의 | 120 |
| ● 산업체 도산으로 인한 계약학과 유지 여부 | 121 |
| ● 계약학과 - 공동계약의 경우 현물부담 관련 | 121 |
| ● 계약학과 설치 등에 관한 문의 | 122 |
| ● 계약학과 - 제적 및 재입학 관련 문의 | 123 |
| ● 계약학과 - 개설가능한 유사학과 범위 | 123 |
| ●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가기관 해당여부 | 124 |
| ● 내부자 거래 관련 문의 | 124 |
| ● 대학 산학협력단장의 겸직범위와 중복 사업 참여 | 125 |
| ● 계약학과 - 신입생 모집절차 및 운영현황 보고 일정 | 126 |
| ● 사립대 산학협력단 관련 | 126 |
| ● 산학협력단 관련 | 127 |
| ● 산학협력단 대출가능한지 | 128 |
| ● 산학협력단 임용관련 | 128 |
| ● 영어학원 형태의 학교기업 설립 가능한지 | 129 |
| ● 일반학생과 산업체 위탁교육생 차이 | 129 |
| ● 전국대학 계약학과 현황 자료집 요청 | 130 |
| ● 정책연구 자료 요청 | 130 |
| ● 학교기업의 학교회계전출금 수입 문의 | 131 |

| | |
|---|-----|
| ■ 원격교육 및 평생교육과정 | 133 |
| ● 교과부 인정 학점은행기관과 교과목 확인 방법 | 135 |
| ●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 불가 | 135 |
| ● 구법당시 입학한 경우 평생교육사 취득 | 136 |
| ● 국외박사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문의 | 137 |
| ● 기취득한 학점으로 학위 받을 수 있는지 | 138 |
|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명칭 | 138 |
|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타지역에 설치 가능한지 | 139 |
|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원격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시 절차 | 139 |
|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 140 |
| ● 독학사 시험 동일전공 판단 방법 및 절차 | 140 |
| ●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의 학점은행제 통한 학위 연계 시 면허증 소지해야하는지 | 141 |
| ● 사이버 학점은행제 수업 운영 규정 | 142 |
| ● 사회교육전문요원 실습을 안한 경우 추가 실습으로 평생교육사 취득 가능한지, 실습면제 등 | 142 |
|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의 평생교육사로의 자격증 갱신 발급 | 143 |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 144 |
| ● 시간제 등록인원 기준이 총입학 정원의 100분의 10인지 | 144 |
| ● 시간제 학생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145 |
| ● 온라인 영어 교육 기업의 평생교육사 채용은 의무인가요? | 146 |
| ● 외국교육기간 졸업자의 학점은행제 등록시 졸업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 146 |
| ● 외국박사학위자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문의 | 147 |
| ● 재학생이 시간제 등록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지 | 147 |
| ● 직업전문학교에서 전문대학 명칭 사용 가능한지 | 148 |
| ● 평생교육 실습할 수 있는 시설 문의 | 149 |
| ● 평생교육 학점인정 신청의 불편함 | 149 |
| ● 평생교육관련업무에 농촌지도사의 교육인력 업무 내지 기타 농촌지도업무가 포함되는지 | 150 |

-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실습의 면제 조건 151
-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152
- 평생교육사 1급 152
- 평생교육사 1급 자격 취득 자격 및 자격증 신청방법 153
- 평생교육사 관련 평생교육법 개정내용에 관한 문의 153
- 평생교육사 배치 및 자격증 대여 벌칙 규정 154
- 평생교육사 역할 및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156
-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대체과목 가능한지 156
-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과 향후 진로 157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안내 자료 158
- 평생교육사 자격증 결격사유 발견에 따른 조치 158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취득자격 159
- 평생교육실습과목 이수 못한 경우 자격증 취득방법 160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소요기간 단축 요청 160
-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위수여시 계절학기 학점을 인정할 수 없는지 161
- 평생교육진흥원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161
- 학위 취득전 이수한 시간제 등록 타전공 과목 불인정 이유 162
-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요구 163
- 학점신청에 관하여 163
- 학점은행 해양학부 항해학전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 164
- 학점은행제 학위 명의 및 의미 165
- 학점은행제의 인증기관 확인 방법 166
- 학점인정 미신청으로 인한 추가 이수 개선 요청 166
- 학점인정 자격증에 해당되는지 167
- 해외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가능한지 168

■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169

- 1급 정교사 자격취득 관련 171

| | |
|--|-----|
| ● 1급상담교사 자격증 문의 | 171 |
| ●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질문 | 171 |
| ● 2급정교사 자격증 재교부 | 172 |
| ● 2급정교사자격취득시 교육실습 면제 관련 | 172 |
| ● 개명으로 인한 교사자격증 재발급 | 173 |
| ● 개인 의사에 의한 대학원진학 후 부전공 자격취득시 교육실습 면제 여부 | 173 |
| ● 교사자격 무시협검정 관련 | 174 |
| ● 교사자격증 취득 인정이 되는지 | 174 |
| ● 교생실습 면제관련 | 174 |
| ● 교생실습 가능한 학교 | 175 |
| ● 타교과목의 교원자격 취득시 교생실습 | 175 |
| ● 교원 자격증취득시 전적대학 이수 학점의 인정 | 176 |
| ● 교원자격 취득 중 교생실습에 관한 문의 | 176 |
| ● 교원자격 취득시 표시과목과 다른 교육실습이수 | 178 |
| ●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 178 |
| ● 분실시 교원자격증 재발급 관련 | 179 |
| ● 교원자격증의 취득 요건중 최소전공점수 | 179 |
|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정정에 대해 | 179 |
| ● 무자격검정에서 성적의 기준이 없는지 | 180 |
| ● 교육대학원 부전공 자격관련 | 181 |
| ● 현직교사 교육대학원 부전공 자격취득시 교생실습 | 181 |
| ● 교육대학원 입학시 관련 학과 학점인정 문의 | 182 |
| ● 교육대학원 입학에 관한 건 | 182 |
| ● 교육대학원 중등2급 정교사 무시협검정 관련 | 183 |
| ● 교육대학원 중등특수교육 이수 문의 | 183 |
| ● 교육대학원 관련 | 184 |
| ●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이수 관련 | 184 |
| ● 현직교사의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 자격증 취득 | 185 |

| | |
|---|-----|
| ● 기간제교사의 교육실습에 관해 | 185 |
| ● 교직과목 면제와 이수 | 186 |
| ● 교직과정 이수자의 요건 | 186 |
| ● 교직이수 관련 | 187 |
| ● 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원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 187 |
| ● 무시험 검정 합격 기준 년도 등 질의 | 188 |
| ● 무시험검정(보건자격증에대한예외적용) | 188 |
| ● 복수전공 무시험 가능한지 | 189 |
| ● 부전공이수에 대하여 | 189 |
| ● 비현직교사의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 취득 가능한지 | 190 |
| ● 산학점입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실습 면제 여부 | 190 |
| ● 영양교사2급 자격증 발급관련 | 191 |
| ● 영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어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 192 |
| ● 예전에 못받은 준교사 자격증 받을 수 있는지 | 192 |
| ● 외국 교사자격증 인정 | 192 |
|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기준 | 193 |
|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관련 | 193 |
| ● 전국 사범대학평가의 기준 | 194 |
| ● 전기, 전자, 통신 중등교사 자격 | 194 |
|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요건 | 195 |
| ● 전문상담교사 경력 인정여부 | 195 |
|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 195 |
|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 196 |
| ● 전문상담교사2급 신청시 교대 입학전 이수한 학점인정 | 196 |
| ● 전문상담교사2급 취득 관련 | 197 |
| ● 정교사 1급 자격기준 관련 | 197 |
| ● 정교사2급자격증 관련 | 198 |
|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문의 | 198 |

| | | |
|----------|---|------------|
| ●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 200 |
| ● |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 | 200 |
| ●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관련 | 200 |
| ● | 초등학교 교사의 자격 요건 | 201 |
| ● | 치료교사 자격 관련 | 201 |
| ● | 특수 재활복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관련 | 202 |
| ● | 특수교사(중등) 정교사 (2급)재활복지과목에 대한 1정연수 관련 | 203 |
| ● | 편입 후 교생실습 관련 | 203 |
| ● | 편입시 무시험검정 가능한지? | 204 |
| ● | 편입시 학령계산 방법 | 204 |
| ● | 편입전의 학점 인정여부 | 205 |
| ● | 평생교육원 학점으로 교사자격증 발급 가능한지 | 205 |
| ● | 현직교사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관련 | 205 |
| ● | 현직교원 교육대학원을 통해 표시과목이 다른 부전공자격 취득시 교육실습 면제 여부 | 206 |
| ● | 현직교원 아닌경우 대학원 진학후 교원자격 취득 | 206 |
| ● | 교육봉사 활동 관련 | 207 |
| ■ |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 209 |
| ● | 1학년 일반학자금대출제한 | 211 |
| ● | 2010년 희망 드림 장학의 신입생 수혜여부 문의 | 211 |
| ● | 개강일로 인한 등록금 반환 금액에 관한 질의 | 212 |
| ● | 경영부실대학과 대출제한제도 관련 | 213 |
| ● | 계약학과 입학금 관련 | 214 |
| ● | 국가 장학제도 확대에 관하여 | 214 |
| ● |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축소로 인한 피해 | 216 |
| ● | 국가무상장학금 취지 | 216 |
| ●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시기 관련 | 217 |

| | |
|----------------------------------|-----|
| ● 근로장학생 정책에 대한 질의 | 217 |
| ● 기초생활수급 자녀 장학금 최대 수혜 학기수 | 218 |
|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대학 진학시 보조혜택 | 218 |
| ●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문의 | 219 |
| ●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 220 |
| ● 대학교내 학생회비를 강제로 걷는 행위 관련 | 221 |
|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관련 | 221 |
| ● 대학등록금의 학점에 운영요청민원 | 222 |
| ● 대학생 학자금대출 관련 | 223 |
| ● 대학생이 휴학시 등록금 반환문제 | 224 |
| ● 신입생 학자금대출 관련 | 224 |
| ● 대학학비 지원 관련 | 225 |
| ● 든든학자금 대출 관련 | 225 |
| ● 등록금 인상을 학생대표 찬반없이 가능한지 | 226 |
| ● 장학금 이중수혜 관한 질의 | 227 |
| ● 미래드림장학금에 대해 | 227 |
| ● 신용불량자인부모의 자녀 학자금대출가능여부 | 228 |
| ● 신입생 생활비 대출 관련 | 228 |
| ● 이공계 장학금 기준의 문제점 | 229 |
| ● 이공계장학금의 성적기준 | 229 |
| ● 장학금 상환 관련 | 230 |
| ●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 정책 | 230 |
| ● 정부 차상위계층 장학금 개선 방안 관련 | 231 |
| ● 정부학자금 대출 제도 관련 | 232 |
| ● 제적의 경우 등록금 반환 불가 | 234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 234 |
|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격기준 | 235 |
| ●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 235 |

-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관련 236
- 학자금 중도 상환 237
- 학자금대출과 일반대출 별도 관리 문의 237
- 대학원 학자금대출 관련 238
- 한국장학재단에서 전문학교 학자금대출 관련 238
- 해외 유학생의 장학금 지급 238
- 해외유학 대학생 학비 대부 239

■ 기 타 241

- 국비유학생 제도 합격자 국가변경 가능한지 243
- 국제학교 편입학에 대해 243
- 외국대학 유치에 대한 문의 사항 244
- 외국으로 현직, 예비교사 파견 관련 245
- 외국인유학생 관련 245
- 우수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 246
- 우수교원해외진출지원5개년계획 지원자격 246
- 전문대 외국인입시 관련 문의사항 247
- 제주국제학교 전형료 관련 247
- 제주영어교육도시 등록금 248
- 해외분교 설립 할 수 있는 지역 249
- 해외유학생 지원제도 관련 249
- 현직·예비교사 1만명 외국파견 250
- 한국내 국제학교 입학 및 학력인정 251
- 한국내 외국인학교 다니는 한국인의 학력인정 251
- WEST프로그램 상세 정보 252
-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자료 보는 방법 252
-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범위 253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에 대해서 253

| | |
|--|-----|
|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왜 하는지 | 254 |
|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우려 | 254 |
|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세부 운영 방법 | 255 |
| ● 교육과학기술부 허가 자격증인지 문의 | 255 |
| ●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 우려 | 256 |
| ● 민간자격 공인절차 관련 | 257 |
| ● 국가공인 민간자격 정보 및 신설 절차 | 258 |
| ● 미등록 민간자격증 | 258 |
| ● 등록되지 않은 협회가 민간자격증발급시 효력 | 259 |
| ●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증 발급해도 되는지 | 259 |
| ● 공인되지 않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등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피해대책 | 260 |
| ● 의료법상 금지된 자격 점검 | 261 |
| ● 등록되지 않은 치료사 자격증 제재 방법 | 261 |
| ● 민간 치료사 자격 발급 관련 | 262 |
| ● (사)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검정시험관련 | 262 |
| ● 대학교 취업률 산정 기준 중 건강보험 부분 | 263 |
| ● 대학의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고 하는지 | 263 |
| ● 취업률 산정 기준 | 264 |
| ● 취업률 산정 질의 | 264 |
| ● 건강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한 취업률 산정 관련 | 265 |
| ● 특성화고 실습에 보수를 주는지 | 265 |
| ●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근거 | 266 |
| ● 교수업적심사 관련 규정 | 266 |
| ● 대학도서관 개방 요청 | 267 |
| ● 대학도서관 평가 시 지역사회 연계 반영 | 267 |
| ● 연구윤리 규정이 없는 경우 처리방법 | 268 |



Ⅱ.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과 학 기 술

과학탐구대회 종목 문의

질의

- 과학탐구대회에서 로봇과학분야 라인트레이서 종목이 폐지 후 그 대체종목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3. 21. [과기인재기반과(과학문화팀)]

-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의 종목평가제도에 따라 로봇종목의 라인트레이서 과제는 최하위 평가를 2회 받아 폐지 예정이며, 로봇 종목의 대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과학탐구대회의 일부 종목에 대해 준비물이 고가여서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가 배제되고 사교육비가 증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의 기능성 위주가 아닌 탐구성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신규(대체) 과제 발굴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11년 로봇과학 종목의 신규 과제를 4월 중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YSC 청소년 온라인 과학탐구 대회 탐구성 질의

질의

- 지도교사를 정할 때 같은 학교에 있는 교사분을 지도교사로 정하고 같은 학교 내에서 팀을 대부분 짜는데 어떤 팀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친한 아이들과 팀을 짜서 나온 경우도 봤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팀을 짜서 지도교사를 맡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1. [과기인재기반과(과학문화팀)]

- YSC 온라인과학탐구대회에 참가하는 과학탐구반 구성은 '청소년과학탐구반 과학탐구활동 과제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유과학반으로 현직교사면 누구나 학교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생들과 과학탐구반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다양한 소속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학탐구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탐구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같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과학탐구반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과학탐구대회의 심사방법은 국제대회(ISEF)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 시 결과보고서(논문)와 포스터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예선은 각 시도 과학교육원 또는 YSC 분원이 주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포스터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합니다. 본선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해당분야 6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1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1 면담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됩니다.
- 심사 시에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실험·탐구한 것인지, 모든 탐구과정과 결과를 직접 도출한 것인지를 심사하며, 3명이 팀으로 구성된 경우 3인 모두에게 질문하여 학생들이 직접 탐구한 것인지, 팀원 중에서 한 사람만 참여한 것인지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과학탐구반 지도교사가 실험·탐구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학생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매년 심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YSC 온라인과학탐구대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회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 영재교육 전문적인 실시 요청

질의

- 각 시, 도 교육청별, 학교별로 일관된 기준도 없이 재량껏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을 두어 국가적인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 있는 아이들의 재능이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9. [과기인재양성과]

-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본질에 따라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가장 많이 관찰하고 알 수 있는 교사들이 추천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토록 관찰·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 동안은 1~2회의 시험만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들이 선정되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사교육을 유발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잠재력과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

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교육청에서 교사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중에 있습니다. 도입 첫해로서 아직은 현장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 발생 우려, 교사의 이해 부족 등으로 지적하신 대로 성적 위주로 선발이 이뤄지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속하여 연수와 교육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들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중에 있으나 교원 확보, 예산 지원 등에 따라 운영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초등학교 3~4학년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 외에 교사, 전문가들로부터 특별히 추천을 받아 영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6조 참조)

● 개정 교육 과정 과학내용 문의

질의

-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개정된 과학내용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7. 26. [과기인재양성과(수학교육정책팀)]

- 우리부는 분과적 과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주제중심의 융합형 '과학' 과목을 2009 개정 교육과정('09.12.23)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11학년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동 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교육과정,교과서 공식사이트(<http://cutis.mest.go.kr>) 교육과정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수학교과 난이도 관련

질의

- 학부모가 수학책을 보고 아이의 이해력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원리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문제의 난이도가 원리 설명에 비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의 눈에 맞추어서 설명할 수 있는 교과내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과기인재양성과(수학교육정책팀)]

-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교과 내용이 어렵다는 지적 및 민원 등을 검토하여, 저희부에서는 학생발달 단계를 감안,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입식 단순암기식 내용을 감축하기 위해 초중고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새로운 수학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학습량 20% 감축 및 복잡한 계산보다는 문제해결력, 추론, 의사소통 등 수학적 과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교과서의 설명, 문제 등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cutis.mest.go.kr(교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묻고 답하기)에 등록하시면 교과서 집필진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술사 계속교육 필요성 및 소관부처

질의

- 기술사 계속교육을 매3년마다 90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 건설 관련 기술사들은 해당 관련 협회, 건설기술교육원 등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는데 다시 기본교육 전문교육 24 학점을 의무로 유료교육을 받아야하고 자율학습교육을 6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자율학습이라고 하지만 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유료로 이수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 기술사는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자격자인데 학생처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니와 왜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건설기술사들의 교육을 관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4.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 계속교육은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사의 능력과 자질향상, 기술사의 전문성 및 국제적 동등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사제도상의 대등성이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의 필수요건으로 지적되어, 2007년 기술사법 개정 시 국제 기준에 맞춰 기술사 교육훈련이 도입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술사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자격자(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교육훈련은 총 90학점 중 타법령에 의한 교육훈련도 60학점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1년에 8시간(1일), 3년간 최소 24시간 정도만 기술사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 기술사의 체계적인 육성·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 기술사의 배출(검정)은 고용노동부, 활용은 13개 주무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기관점검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질적 제고, 온라인교육의 확대, 최신기술동향 등에 대한 교육과정개발 등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과 교육비 지급 의무

질의

- 기술사법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받아야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기술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에 국한된 사항인지 기술사 유자격자 필요유무와 무관하게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 근무하며 기술사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예산이 없다고 자격수당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3.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는 공공 부문의 시설안전 등을 책임지는 국내 최고기술 자격자로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스스로 대처하기 위한 계속교육훈련의 실시는 본 교육훈련의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교육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에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범위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로서 「기술사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사와 관계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교육훈련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만약 교육대상으로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기술사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술사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기술사법의 기술사 교육훈련제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육훈련제도의 취지가 개인의 능력향상에 있고 그 결과(성과)가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있음을 상호 공유하여 경비를 부담하는데 협조를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기술사 공동직무능력표준의 의미

질의

- 2차 기술사 제도 발전기본계획에 “기술사공통직무능력표준”이 뭔가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취득자는 공학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3.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공통직무능력표준이란 기술사가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표준화한 것으로, 여기서 능력이라 함은 기술, 지식, 태도를 말하며 앞으로 이러한 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검정기준, 출제기준, 시험방법 및 내용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과 교육-시험-자격'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 제도를 검토하는 단계로 앞으로 관계부처 업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공학교육인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재 (2011. 11월말 기준) 국내 178개 공과대학 중 79개 대학의 570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연구 요원 선발 시험관련

질의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이 가능한 업체, 지원 자격과 선발 과정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3. [과기인재정책과]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가능한 병역지정업체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79개 대학원과 대학 학칙으로 설립하거나, 교과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부설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600명('11년 기준)을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대학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 입학예정인 자 및 박사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단, '11년도에 대학 연구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자도 지원 가능), 또는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재학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2년)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영어 TEPS성적 990점을 300점만점으로 환산 점수, 대학교성적 100점, 대학원성적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항목을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600명을 선발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국사시험의 경우 점수 합산은 되지 않으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합격해야 합니다.
- 그리고, 대학부설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2010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나, 2011년도 부터는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대학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각 기관별 배정인원만큼 대학부설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관련 질의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1] 비고2의 단서에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대학교(본교)를 의미하는 것인지 산학협력단을 의미하는지, 산학협력단 연구비 집행 기준내의 예비산정기준이 대학교(본교)와 상이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4. 25. [기초과학정책과(연구관리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연구기관이라 함은 기관이 대학교일 경우 대학교(본교)를 의미합니다. 대학교(본교)에 예비규정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별도의 예비규정이 있더라도 대학교(본교) 예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기준관련



질의

- 과제참여계약 4대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8. [기초과학정책과(연구관리팀)]

- ‘과제참여계약’은 연구자가 연구기관(연구책임자)으로부터 과업을 부여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종속적인 근로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소속기관이 없는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계약’시 과제의 참여기간, 참여율 등에 따라 고용보험법 등에서 규정하는 4대 보험 가입 등 제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2항 관련
- R&D참여 업체임을 내세워 너무나 많은 가격을 요구할 경우 R&D 참여업체와의 계약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12. 16. [기초과학정책과(연구관리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참여기업이 아닌 일반업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특허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이 아닌 일반업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특허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사유로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만약 약 위에 명시한 각호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참여기업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11.3.28)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운영·개선에 관한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제도과)로 이관되었으니, 보다 자세한 해석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신고요건 기간제한 폐지 관련

질의

- 저희 회사는 cctv 및 기타 연구와 개발을 기반으로 제조 및 수출을 하는 꿈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고졸자나 인원이 작은 회사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조차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력과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졸자라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제품의 개발을 못하는 것 인지요?. 뿐만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구 개발 또한 우리가 보유한 장비가 없다하더라도 개발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회사의 장비를 빌려 쓰고 외주처리 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4. [기초과학정책과(연구관리팀)]

- 기업연구소 설립 신고·인정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통한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연구소를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고·인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부설(연)에 대한 연구전담요원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5인→3인)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전담요원



신고요건(2인 이상) 기간제한(창업일로부터 5년간) 폐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학과가 이공계와 예체능계에 따른 자격불합리 관련

질의

- 중소기업에는 전문연구 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컴퓨터 그래픽학과는 자연계”로 “등록”이 되어 전문연구 요원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어느학교의 컴퓨터 그래픽학과는 “예체능계”로 등록이 되어 전문연구 요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의 등록 내용에 따라 같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체능계”로 등록된 학교를 다닌 사람은 시간과 돈의 낭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컴퓨터 그래픽학과가 다 같은것을 배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학과라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계 이공계 예체능계로 나눌것이 아니라 정확한 학과의 명칭과 배우는 내용에 따라 나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8. [기초과학정책과(연구관리팀)]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중소기업 부설(연)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연구전담요원 대상자의 자연계 분야 전공여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9항에 따라 각 대학의 장이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학과의 계열별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내 연구소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질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도의 안전관리규정을 만들고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등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규정만으로도 연구소 안전

관리 부분이 커버가 될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3. [연구환경안전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별표1의 3에서 예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장 내 연구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라 보이며, 만약 동 연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내지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준수하고 계신다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도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동 사업장에 현재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이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미흡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자 보호를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준수하는 것 또한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표준자오선

질의

- 한국과 일본의 표준자오선이 같습니다. 변경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2. [우주기술과]

- 표준자오선의 변경은 독자적인 표준시를 회복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실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부처가 표준자오선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시간 차이의 시간대역을 선택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국제 교역, 국민 편의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 1시간 차이의 시간대역을 선택한다면, 동경 120도 보다는 동경 135도가 더 낫다. 동경 135



도를 선택하면, 약 30분 시간의 태양시와 차이가 나는 동쪽의 자오선이 표준자오선이 되므로 별도의 일광절약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365일 내내 30분의 일광절약이 된다. 일광절약에 따라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효과가 생기므로 국익에 유리하다.

- 참고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간센터(042-868-5141)로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 대 학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3년제 전문대로의 편입이 가능한지

질의

- 전문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한 학과가 폐과가 되고, 이름을 바꿔 3년제 학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대학에서는 2년제 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2년제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졸업시까지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서도, 이름을 바꿔 신설한 3년제 학과로의 변경은 교과부 고시에 따라 불가하다고 합니다. 유사한 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왜 변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변경이 불가하다면 2년제 과정을 마친 후 3년제 과정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전문대학과]

-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변경된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단 대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졸업후 3년제학과로의 편입학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호학과 4년제에 관하여

질의

- 내년부터 전국의 간호전문대가 4년제로 바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년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31. [전문대학과]

-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운영은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갖춘 대학의 경우에만 교과부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11학년도 현재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3년제 간호과 학생이므로 3학년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 다만, 개정법상 지정된 학교의 재학생이 신청할 경우 학사학위(4년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재학생이 4학년 과정에 진급하기 위하여는
 - 첫째, 재학중인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둘째, 지정받은 대학의 간호과 4학년 진급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지정여부 및 간호과 4학년 진급계획은 재학중이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장학금 지급 기준

질의

-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1,2학년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7. [전문대학과]

-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체적인 사업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학금 지급은 이러한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대학의 교원확보율 보고시 강의시수에 따른 인원산출

질의

- 대학에서 교원확보율 보고시 교원의 명단을 보고 하지 않고 전임 및 겸임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으로 산출하여 보고 한다면 9시간, 12시간을 강의 한 저의 경우 대학에서 교원 확보율 보고시 1인으로 산출하여 보고 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7. [전문대학과]

- 전임교원의 경우는 강의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1명으로 산출하며,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 강의시간 9시간을 1인으로 산출하되, 1인이 9시간 이상을 강의하더라도 1명으로만 인정됩니다.

● 대학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가능 여부

질의

- 시에서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바, 우리시에 어린이집과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15년 운영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협약 체결시 교과부의 허가를 득한 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을 진행하려 하다보니 대학에서 재산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교과부에서 절대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이니 협약을 변경하고자 신청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기부채납이 허가가 된 사례가 있는지,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8. [전문대학과]

-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 교비로 구입하거나 공사하여 취득한 기본재산(교비로 구매한 경우 대부분 교육용 기본재산임)의 소유권을 이전(기부채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대학학과 명칭 관련

질의

- 대학 학과 개설에 따른 학과 명칭 사용에 관한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3. 4. [전문대학과]

- 학과명칭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입니다. 다만, 보건, 의료, 치료, 한약, 한의, 교육 등의 명칭사용으로 자격(면허)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 오인될 수 있는 학과명칭을 사용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면허)취득 유사명칭 사용으로 민원 등의 문제 발생시 이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학과 폐지관련

질의

- 대학의 학과폐지가 폐지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4. [전문대학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학의장은 모집단위(학과)를 폐지, 변경, 신설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해당학과의 발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폐과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대학은 학생들을 위하여 학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폐과된 모집단위의 1학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모집단위(학생)를 운영하거나, 유사한 타 모집단위(학과)로 전과를 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폐과조치로 원하는 학과에서 수학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은 유사한 타모집단위(학과)로 전과하고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에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진로와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대학과 충분한 협의로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위탁교육생의 교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질의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을 보면 산업체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가항을 보면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산하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보육교사 자격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체 위탁생이 자신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이수하여 보육교육교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대학에서 해당교과목을 인정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5. [전문대학과]

- 전문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9조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칙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및 학과차원의 평가인증 기준 마련, 대학 본부 및 학과(계열) 차원의 평가인증조직 운영체계 구축, 대학 및 학과차원의 학점인정 기준 및 대상범위 등 설정, 학습경험의 평가인정에 따른 질 관리 방안 및 관리지침 마련, 학습경험의 평가인증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신청자에 대한 상담 지원 체제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2009.11.27) “9”번-“가”? “바”항에 의하면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 과목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방법은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평가인증 기준 등은 타당한 근거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 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사립 전문대학에서 교직원이 징계에 의한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법인 이사장을 피신청인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요? 법인에서 패소 당했을 때 해당 교직원에게 임금상당액 또는 손해배상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30. [전문대학과]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의 업무에서 비롯된 비용은,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에 대한 권한(임면권, 징계권 포함) 갖는 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면권(징계권 포함)이 학교에 위임된 교원의 경우에 한해 학교에서 그 비용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어학연수 학점인정 관련

질의



- 외국대학의 부설 어학원에서의 어학연수의 학점인정에 관하여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6. 21. [전문대 학과]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학교는 학생이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고 있는 기관은 어학연수원으로써 이법에서 정하는 학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본전문학교졸업에 대한 전문대학자격 인정여부

질의

- 92년도 일본에서 전문학교(건축과2년)를 졸업하고 올해 한국에서 건축사 자격시험을 보았으나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치른 시험자격이(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포함 되어야하여
- 외국공관발행(일본영사관), 국외교육기관확인서(별지제51호서식)에 의해 ‘위 국외교육기관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중 전문대학교와 유사한 기관임을 확인 합니다’는 확인을 받아 첨부시켰는데도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전문대 학과]

- 국내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교과부에서는 외국전문학력에 대하여 학력인정을 별도로 검증하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정식 설립 인가된 학교일 경우 수요기관(건축사협회 및 대학(원))에서 학위증 등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담당자도 공관 및 기타 기관에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수료하신 대학은 전문대학과 유사한 기관일 뿐 정규학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수료하신 학교는 국내의 평생교육법에 해당하는 전문학교와 유사한 기관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임시이사 지위 소멸에 따른 이사장 직인 날인 공문서 효력

질의

- 임시이사(가)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시이사들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위가 소멸된다면 새로운 임시이사 또는 정이사 선임이전에 임기만료일 이후의 날짜에 지위가 소멸된 임시이사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7. [전문대학과]

-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임기만료되고 재적이사가 없는 경우, 법인의 운영을 위한 상무적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판례에 따르면,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못하고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공심화과정에서 조기졸업 가능 여부

질의

- 전문대 졸업후 의료기사로 근무중인데 전공심화 과정의 경우 20학점만 더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학기 합산 20학점이 아니라 1학기만에 20학점 이수를 하여 조기졸업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8. [전문대학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3에서는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에 대해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이상으로,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학기에 20학점 이상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조기졸업은 불가능합니다.

전문대학 처장의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

질의



- 전문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 처장들은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에 제1호 다에 속하
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28. [전문대학과]

- 대학의 교직원의 보수는 정관 및 대학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귀 대학의 여비
지급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학의 처장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별표1의 제1호 다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준용이라 함은
유사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되며, 대학의
형편에 맞게 달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대에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전문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4년대를 나와야 학사를 얻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문대와 4년대가 같아지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2. [전문대학과]

- 전문대학 졸업생들도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
한 경우와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지정된 “4년제 간호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설치여부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의 교직과목 이수

질의

- 유아교육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중 미술교육학과(4년제)를
졸업하고 현재 시설장자격소유자로 어린이집을 운영중이나, 추후 유치원을 운영하고자하여
우리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우리대학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직과목인 ‘교육실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대학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들에 한해서 교직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 본 학생에게 교직과목을 열어주어도 무관한 것인지(학점취득은 가능하지만 졸업학점으로는 인정안함)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6. [전문대학과]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교직과목의 이수와는 무관하여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다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대학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능 여부

질의

- 전문대학에서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 [전문대학과]

- 복수전공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학생의 전공이수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전공이수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수업 연한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의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력 인정여부 확인

질의

- 졸업증명서에는 전문학사학위번호, 졸업증서 미기재시 전문학력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3. 30. [전문대학과]

- 1965년 이후 종전의 전문학교 졸업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문학교가 동 법에 해당하는 전문학교라면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준예산에 대한 문의

질의

- 2011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이 법인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7조(준예산)에 따라 교직원의 보수,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직원의 보수에서 자연승급분은 지급이 가능한지요? 만약 지출이 잘못되었다면 최종적인 집행에 대한 책임은 학교의 장이 지는 것인지 이사회에서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31. [전문대학과]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준예산)에서는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사회에는 확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학교회계 집행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취업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질의

- 전문대 3년 학생이 2년수료후 취업이 되어 직장을 다니는데 3학년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에 나가지도 않고, 수업도 듣지 않고, 졸업장을 받기위해 적을 두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수업료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1. [전문대학과]

- 취업을 이유로 학칙이 정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을 경우전문학사학위가 수여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사시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 제적

질의

- 회사에 재직하며 사이버대학에 위탁생전형으로 학교를 다니다 퇴사 후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재직을 하지 않으면 제적이 된다고 하더군요. 입학당시 알지도 못했고 돈 들여 약 2년간 공부했는데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적을 당해야 한다면 시작도 안했겠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5. [전문대학과]

-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대학,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에서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자격으로는 고등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자격이 있는자)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학 후 재학 중에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에는 입학취소 및 제적처리로 계속 학업이 가능하지 않음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기 중에 퇴직한 학생에 대한 학적처리 여부는 해당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대학 한국분교 설립 문의

질의

- 호주소재의 대학이 한국에 호텔경영학/간호학과 분교를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설립자격 및 설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8. [전문대학과]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설립과 관련하여, 외국대학이라 하여도 국내에 분교를 설치하는 과정은



국내 사립대학 설립 또는 분교를 설립하는 과정과 동일하므로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인가 후 대학설립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우리 부 홈페이지-정보마당-실국마당-학술연구정책실-정보자료실-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요령(2009)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국립대 법인화 관련

질의

- 국립대 법인화 관련하여 서울대 관련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향후 등록금 상한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8. 16. [국립대학제도과]

- 지난해 12월 2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대 법인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되더라도 법에 따라 정부는 서울대의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해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바, 재정지원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시행중에 있습니다.
- 2010.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각 대학에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등록금 산정 시에는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ICL학자금 대출규모 제한,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률' 지표 반영 등의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법인화에 관련

질의

-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된다면 일단 전국의 국립대들도 법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경쟁력있는 학과는 존속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폐지된다는 것인가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하니 그 기준을 신입생 지원률이 떨어지는 학과가 될지, 아니면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과가 될지 아니면 그 기준자체를 각 학교에 맡기는 건지 궁금하네요.



회신

회신일 : 2011. 1. 28. [국립대학제도과]

- 국립대 법인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쟁력 강화”는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조직으로 경직된 대학 운영체제(예산, 인사, 조직)에 자율성을 확대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낮추어 자율성을 높이고, 해외 석학 등 우수 교원을 초빙하고, 우수한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즉, 대학 운영체제 및 대학의 지배구조(이사회 체제)의 변화에서 오는 경쟁력으로 이해하시는게 옳습니다.
- 법인화는 말씀하신 학과간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그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대학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학과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더 나아가 폐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집정원 내에서 모집정원 조정, 학과 신설 및 폐지 등은 현 국립대학 체제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인화를 통해 가능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경쟁력의 기준 및 경쟁에서 떨어지는 학과에 대한 처리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사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대학이 대학 경쟁력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4년제 대학 간호학과 신설기준 문의

질의

- 일반 4년제 대학교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 대학교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30. [대학선진화과]

-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학의 정원조정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 학생 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간호학과, 의예과 등과 같은 보건의료학과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관계 부처(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우리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간호학과를 포함한 정원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법령 및 정원 책정기준, 보건의료분야 정원 배정 기준, 정원신청요건 등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매년도 각 대학에 안내하고 있는바, 금년도에 안내된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매년도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제 사립대학 교수 임용 자격에 대한 문의

질의

- 별금형을 받은(300만원 이상, 2년 이내) 분을 4년제 지방사립대학 교수 임용이 가능한지와 석좌교수 형태나 연구활동(국가프로젝트 연구책임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9. [대학선진화과]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전임교원뿐 아니라 석좌교수도 학생의 교육 및 지도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 인 바, 교원으로서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대학부설연구소 직원의 임용은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각종학교관련

질의

- 고등교육법 제2조의 7호의 각종학교의 대상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4.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각종학교는 대학과정의 “순복음총회신학교”, “한민학교”가 있으며, 전문대학과정의 “구세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설치령에 의한 각종학교는 대학과정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있으며, 전문대학과정의 “한국농수산대학”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학과의 일반편입 지원자격

질의

- 4년제 간호학과의 일반편입 지원자격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간호학과 일반편입 지원자격을 보면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이 지원자격을 가지고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고등교육법 제51조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야 편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지난 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합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가 아닌 2년(4학기) 수료를 가지고 일반편입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4. [대학선진화과]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년제 전문대학의 2학년 수료자는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고등교육법 제51조(편입학) 규정에도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 시행한 2011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도 일반편입학의 지원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제 졸업생은 4학년으로의 입학 허용도 가능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대학 2년제의 졸업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2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학교에서 기타 졸업요건을 요구할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전문대학 3년제의 2년 교육과정 수료자는 졸업요건을 취득하거나 학교로부터 졸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 3년제의 2년 과정 수료자와 전문대학 2년제의 졸업자 사이에 편입학 자격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능력 또는 자격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직관련(벤처기업)

질의

- 교육공무원으로서 겸직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벤처기업이 유지되면 계속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다시 겸직 처리를 해야 하는지와 통상적인 겸직기간처

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 [대학선진화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나,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서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로 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허가의 필요성, 기간의 적절성,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그 밖의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도 동일한 사례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계절학기 운영관련

질의

- 계절학기 운영관련
 1. 계절학기를 통한 휴학중 학점취득가능여부
 2. 여름계절학기의 1학기 포함여부
 3. 계절학기 최소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3. 10. [대학선진화과]

- 계절학기를 통한 휴학중 학점취득 가능 여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의 학점인정, 휴복학, 졸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여름계절학기의 1학기 포함 여부는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계절학기 최소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업일수와 관련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기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정의에 관한 질의

질의

- 일반 사립대학교 학과 조교(행정조교-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9. [대학선진화과]

-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 의거 교직원 중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로 구분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외 달리 정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대학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조교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상기 법령에 의거 조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학교 운영상 필요하여 조교의 지위로 임용한 경우를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 명시한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하는 것으로 질병 휴직 중인데 명예퇴직 가능 여부

질의

- 공무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하는 것으로 질병 휴직 중인데 명예퇴직 가능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1. 13.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따라서, 이상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예퇴직이(수당지급 포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 인증 학교 관련

질의

- 필리핀으로 대학(학사과정)을 유학하려는 학생인데, 한국 교육부에서 따로 인정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뒤 대학원 과정을 한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에서 인증된 학교는 어느 학교에서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원 입학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인증되는 학교의 조건은 무엇이고 또 그런 학교들의 리스트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7. [대학선진화과]

-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학위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말하며, 외국 대학을 인정하는 제도나 지침은 별도로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 다시 말해 필리핀 대학 및 해외대학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에서 별도로 학력인정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식 설립인가 받아 대학의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대학은 우리나라에서도 동등 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식 설립인가 여부 확인 요망) 또한 대학원 진학시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및 전체 수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입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요기관인 대학원과 취업하는 직장에서 판단·결정함)



☎ 교수의 겸직 관련

질의

- 현직교수가 재건축정비사업 위원장으로 겸직이 가능한지요? 「교육공무원법 19조의2 1항」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로 정의되어 있어 현직교수는 실제 겸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일반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위원장은 한구역정비사업의 최고 수장의 자리이며 정비사업에 관련한 중요결정 및 진행하는 위치로 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7.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영리업무 금지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26조에서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시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겸직허가의 기준은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해당기관이나 단체로 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하나 실비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무관합니다.
- 그러나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겸직허가를 받기에 앞서 해당 대학의 인사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공무원영리업무 금지 관련 문의

질의

- 국립대학 조교(계약직7급공무원)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주말 파트타임으로 의료행위(4시간 정도의 의료기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9.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항은 학교의 장이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그 보수 또는 겸직행위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라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득한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의료행위와 관련한 신고사항은 우리부 소관사항이 아닌바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및 기피에 관한 질의

질의

-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갑론) 징계위원회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므로 징계요구자의 요구에 불구하고 징계협의를 내용을 판단하여 징계양정에 감봉, 견책 등과 함께 “불문” 또는 “불문경고”를 포함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
 2. (을론) 징계위원회는 징계협약자의 비위내용을 판단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불문”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
 3. (병론) 징계위원회는 징계협약자의 비위내용을 판단하여 징계양정을 “견책”을 정하고, 징계협약자의 경감사항을 판단하여 경감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
- 징계협약자의 기피권 보장을 위하여 징계위원 명단을 징계협약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이전에 징계협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3조 2항 및 제3항에서는 징계협약자가 징계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령에서는 징계협약자의 징계위원 기피권을 인정하면서 징계위원회가 징계협약자에게 징계위

원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 가. (갑론) 징계관련 법령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체 통보할 의무가 없다.
- 나. (을론) 징계혐의자의 기피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위해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할 때에 징계위원의 명단을 징계의결 요구서사본 등과 함께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3. [대학선진화과]

-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건축」에 해당되나, 「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이 있거나,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될 경우 감경한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의 경우에만 감경하여 불문(경고)할 수 있으며, 파면, 해임 등은 불문(경고)할 수 없습니다.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서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3을 준용하도록 규정 징계혐의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징계혐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와 제3조에 의거하여, “국립대 총장이 소속 부교수나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총장이 대학 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인가?”
-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되면, “해당 부교수나 교수에 대한 징계의 처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는 것인가?”

회신 회신일 : 2010. 12. 29. [대학선진화과]

- 국립대 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학의 총장 및 단과대학장을 제외한 대학 교원은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부교수 및 교수는 대학의 장이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공무원명퇴-국립대조교수임용 후 명예퇴직금수급여부

질의

- 일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후 명예퇴직을 하고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될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국가공무원으로 24년 10개월을 근무한 후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상호봉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4.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조교수는 교육공무원이고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봉획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받아 판단할 사항이므로 확정된 호봉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 관련 문의

질의

- 국립대 교원 인사에서, 조교수직에 있던 자가 개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1년 휴직하고 학교로 복직한 경우, 당해 휴직기간 1년을 부교수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가능여부와 근거법령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2. 29.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4항에 따라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계약된 직급 즉, 조교수의 임용기간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용기간에 도달할 경우 다른 직급으로의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립대 기성회수당 개선요청

질의

- 국립대 직원들의 보수표는 일반 공무원들의 보수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국립대 직원들의 불필요한 수당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일하는데 국립대 직원들이라고 수당을 더 받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30. [대학선진화과]

- 대학 기성회(기성회비)는 1963년에 도입되어, 사립대학은 1988년까지 교육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던 기성회비를 “기성회비 책정 및 운영자율화(’89)”이후 대학 스스로 책정·운영하다가 2000년부터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에 통합하였으며, 국·공립대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기성회비는 필요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의 운영자금 조달, 학생 복지증진 등을 위해 재학생의 보호자로 구성되는 기성회회원들이 학교에 출연함으로써 학교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성회비 제도는 수십 년간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많은 공헌을 하여왔습니다.
- 그러나, 기성회비 인상이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부는 최근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과다지급·인상한 대학에 대하여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립대교수의 등기이사 자격여부

질의

- 국립대교수의 등기이사 등재 요건 및 허가사항 관련
 1. 국립대교수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최대주주로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2. 법인등기에 등재된 후 사외이사가 아닌 일반이사로 겸직허가를 하였는데 가능한지 여부
3. 대학의 사전허가 없이 이사 등기후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9. 6.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은 금지사항이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대학교원의 경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한해 임직원으로 겸직 또는 겸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외이사를 제외한 회사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나 그 회사의 종류에 따라 일부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대학교수의 등기이사자격여부

질의

1. 국립대학교수로서 본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최대주주로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가능한지요? 대학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일반이사로 겸직허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립대학교수가 사외이사가 아닌 일반 등기이사로 겸임이 가능한지요?
 -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한해 임직원으로 겸직 또는 겸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외이사를 제외한 회사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나 그 회사의 종류에 따라 일부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회사의 종류인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학측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는 것이 원칙에 위배가 된다면 위배한 교수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26. [대학선진화과]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은 금지사항이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교원의 경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한해 임직원으로 겸직 또는 겸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외이사를 제외한 회사 등 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나 그 회사의 종류에 따라 일부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1. 회사의 종류는 위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각각의 법령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의미입니다.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법령에 정의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많아 동 답변에 서술하기는 다소 곤란하여 관련법령의 조항을 알려드리오니 법제처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참조바랍니다. 또한, 각각 법령의 소관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제1항(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23)
 -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2)
2. 일반적으로 복무 등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안별로 해당대학에서 그 경중을 가려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지도감독차원에서 주의경고 할 것인지 등은 해당 대학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한 문의

질의

- 교과부에서는 최근 대학의 운영체제 효율화를 통해 국립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공표했습니다. 그 중에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단과대학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5.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단과대학의 학장 선출에 관하여 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에 의한 직접 임명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선출과정에서 총장의 의향이 반영된 학장이 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 및

대학 경쟁력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수신분에 대한 문의

질의

-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교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도 무방한지와 (강의, 학위논문 지도 등)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동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그에 따른 제 수당을 받아도 무방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4.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서는 겸직허가시,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장의 임무, 학교의 여건, 허가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국립대학의 겸임교원 관련

질의

- 국립대학 겸임교원 임용관련 질의
 1. 겸임교원 임용대상자가 「고등교육법」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현재 본직이 없더라도 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2. 국립대학의 겸임교원 임용 근거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1. 18. [대학선진화과]

- 겸임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바 외에 달리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시 겸임교원에 대하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한자,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담당과목이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



여 임용된 자료 칭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포함), 교육공무원법(임용령 포함) 모두 겸임교원의 임용 근거 법령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겸임교원”에 대한 취지는 대학에서 들 수 있는 교원의 유형, 자격 기준등을 정하여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겸임에 대한 취지는 “공무원”이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할 경우 겸임 가능한 대상, 사유 등을 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경비(학생회비 등) 통합고지에 대한 질의

질의

- 대학교 등록금 수납담당자입니다. 학생회비를 등록금납입통지서에서 분리 조치 시행 하였으나, 총학생회에서 학생회비 수납률 저하 및 학생회비 별도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2학기부터 학생회비를 등록금납입통지서에 통합고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통합고지를 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1. [대학선진화과]

- 학생회비 수납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규정이 되어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하여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등)에 대하여는 통합고지 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학 교수 확보율에 관한 질문

질의

- 대학의 교수확보율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 비례해서 교수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4. [대학선진화과]

- 「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교원)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①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교육대학은 2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원 4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2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 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이중등록관련

질의

○ 대학교 및 대학원 이중등록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대학교를 등록하고 학사과정 수학 중인 자가 다른 대학교 학사과정에 지원이 가능한지
2.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중인 자가 같은 학교 다른 학과 박사과정에 지원이 가능한지
3.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중인 자가 같은 학교 학사과정 지원이 가능한지 등록 후 동시에 수학이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10. 9. 29. [대학선진화과]

- 우리부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학문의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재입학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학교에 제적 상태에 있는 한 학생입니다. 휴학 후 미등록하여 제적처리를 받았습니다. 재입학을 해야 하는 3학년에는 제적생이 없어 여석이 없고 2학년에는 5명이 자퇴하여 여석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해서 재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학교에서는 2학년의 제적생 5명은 정원 외 인원이기 재입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의 판단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7. [대학선진화과]

- 재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할 수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하고 있는 형태로서, 현재 “정원외” 결손 인원만 있다면, 허용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정원내”의 결손인원이 생겼을 경우, 재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교 학생수 비례 교수의 수

질의

- 대학에 정교수는 거의 없고 전부 강사들입니다. 박사과정까지 있는 학과에서 지도 교수도 없이 강사들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들의 실태를 조사해 주세요. 예체능과는 더욱 더 심하더라구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대학선진화과]

- 우리부는 대학의 교원의 충원율이 법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재정사업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사업에 배제하는 등 일부 제한적이나 행·재정 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원 과정 개설시에도 법적인 교원의 충원기준을 지금 현재보다 강화하는 (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물론, 현재의 대학별 문제를 특히 국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 충원의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학교수의 휴가 여부

질의

- 대학교수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학기 중에 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질병도 아닌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는데 직원이 아닌 대학교수에게도 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8.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는데,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항을 보면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4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당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 대학교원 겸직관련

질의

- 대학교 교원 겸직 질의드립니다.
 1. 법인수익사업체 대학교원에 대한 관리자 겸직근무 가능여부
 2. 대학교원이 해당대학에서 무보수 법인수익사업체총괄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겸직발령의 가능여부와 법인수익사업체에서 일부 수당 지급 가능여부 질의

회신

회신일 : 2010. 10. 25. [대학선진화과]

- 교원은 국사립대 구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재직중 영리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업무중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인지, 근무시간내 영리행위를 하는지, 상기 직무가 교원으로서 국가 및 대학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다만, 관리자의 의미가 수익업체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필하여 스스로 경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상기 나열된 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관장의 판단 하에 겸직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참고로 해당기관에서 정기적인 보수는 받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 교육부의 학습장 변경 혹은 신설 허가 없이정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가 서울에서 몰래 수업 후 학위를 수여시 불법이 아닌지와 어떤 법규에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1. [대학선진화과]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부에서 인가된 지역에서만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이외의 장소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비위사항이 확인되었을 시,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사유로 관련자를 해당 학교에서 징계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대학의 홈페이지 및 학과 정보

질의

- 인가대학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각대학의 홈페이지와 학과를 알고 싶습니다. 명단이 있으면 제공해주세요.
 2. 교과부 인가대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8. 17. [대학선진화과]

- 우리부에서 인가하고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의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대학명의 정보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대학별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 후 학교명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자격증 취득관련 실습비 부담 문의

질의

- 대학교에서 자격증 취득시 현장실습을 하는데 실습비는 학생부담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3.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실습비 징수와 관련하여는 해당 학교의 학칙에 규정된 내용을 우선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습비가 수업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도의 기타 비용징수라면 학칙(기타 내부 규정)의 어느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학교측에 우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총장 임기만료후 처리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학교총장의 임기만료후 정교수 원래직분으로의 임명의 가능한지 이에 따른 급여 등 처리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0.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총장의 직위는 교수가 겸직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며, 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의 직위는 총장직 임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 따라서 사립대 총장 임기 만료후 복귀 여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교수 재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대학교 학과 폐지 반대

질의

- 무용학과에 자녀를 부모입니다. 학교측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용학과를 폐과처리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지금 아이들이 폐과를 철회해 달라고 농성중에 있습니다. 무용학과 폐과되는 것 좀 막아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7. [대학선진화과]

-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제4항에 의거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2항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조정내역을 학칙에 반영하여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학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보건계열의 전과, 복수전공 관련 문의

질의

- 우리학교에는 의료과학대학에 임상병리학과와 작업치료학과가 있습니다. 이 두개의 학과는 보건계열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학과로 TO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 두개의 학과는 타 학과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교과부에서 인가받은 입학정원만큼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1. [대학선진화과]

- 전과, 복수전공 등의 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거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의료기사(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모집단위를 옮길(전과) 수 없다고 규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학교 취득학점 비인정 관련 대학원 진학 할 수 있는지

질의

- “비인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상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학점을 근거로 각



중학교로 편입학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인가학교에서 공부하고 허술하게 운영되는 필리핀 대학에서 단 몇 주간의 수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9. 7. [대학선진화과]

-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는 석·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의거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해당 국가에서의 인가(인증) 여부, 국내대학에 준하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학점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 받은 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외국 학위의 인정여부 등은 대학 및 관계기관이 수요기관이 되어 검증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
- [참고법령] 고등교육법제33조(입학자격)
 - 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③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사립대학 교원 채용에 관한 질의

질의

- 사립대학의 교원 채용 규정과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특별채용이라는 형태의 예외조항을 사립대학 학칙으로 만들 경우)
 1. 특별채용 절차에서 해당분야의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교수 임용을 하여도 교수임용에 관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③항은 심사단계를 기초, 전공, 면접심사 등 세 단계 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세 단계를 통합해도 관찮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 한 두 단계를 생략하는 하는 생략하는 조치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8. [대학선진화과]

- 법령외에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폐지 및 이에 따른 유의사항’(교육인적자원부 대행 81420-130, 2001.1.27)의 지침상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 (나) 공개채용 원칙 교원의 신규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 채용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 따라서, 동 지침에 따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특별채용은 곤란하며,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그 자격 및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단계의 통합이란 심사단계의 생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사립대학교 교원 및 직원 징계 업무 관련 질의

질의

1. 사립대학교 교원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가능성 여부
2. 사립대학교 직원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가능성 여부
3.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를 위해 적용되는 근거 법령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요? 동일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교원에게는 징계사유이나 직원에게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지요? 양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4.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또는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의 통지가 사립학교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통지가 학교로 오지 않은 자는 학교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결과통지가 학교로 온 자는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사립학교 측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회신 회신일 : 2011. 6. 17. [대학선진화과]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품위손상의 유형에는 도박,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등이 해당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다만, 징계의 양정은 당해 대학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2. '직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름
3.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그 처리 절차가 다름
4. 국립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서 감사원과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종료한 때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없어, 우리부는 2010.8.13.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사립대학교 교원의 정년

질의

- 사립대학교 교원의 정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4. [대학선진화과]

- 사립대학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 인사규정 등에서 규정·운영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마찬가지로 사립대학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대학 총장의 정년(연장 포함)은 법인 정관에서 규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교원 겸직관련(25조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의)

질의

- 사립대학 교원 겸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보면 사기업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럼, 25조 각 호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업체에 속하는 주식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주식회사의 등기감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교원이 기관장의 허가가 있

으면 겸직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5.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영리업무 금지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 26조에서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시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겸직허가의 기준은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해당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은 허가를 할 해당 기관장이 개별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임면권자 문의

질의

- 사립학교에서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임면권자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임면권자인 해당 학교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을 임면권자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만약, 학교의 장이 겸임교원 등의 임면권자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겸임교원 등의 임면 절차를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면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9.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겸임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 또는 위촉하는 자입니다. 다만, 임용 또는 위촉의 절차는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입니다.

산학협력기관 사용료 관련

질의



- 우리 센터는 산학협력대학 강의실을 수년째 유료로 대관하고 있었습니다. 적법한 내용인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7.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 규정에 의거 산업대학은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교육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는 매년 ‘산업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산업대학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대학으로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위탁교육을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외부 위탁교육장을 산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해당 대학은 우리부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외부 위탁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강사 해결을 위한 방안

질의

- 시간강사 해결을 위한 방안 최근 사통위에서 발표한 시간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문제 해결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서,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9. [대학선진화과]

- 현재, 우리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하고 동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종류에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명칭은 강사로 전환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11년 6만원→'12년 7만원→'13년 8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역량있는 시간강사들에게 연구비 지원을 할 수있도록 '11년부터 예산(173억원)을 확보하여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입생의 휴학 가능여부

질의

- 신입생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한 학기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학교에서는 1학기를 마쳐야만 휴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대학선진화과]

- 학생의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및 학생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한 사유 이외의 휴학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제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대 입시 특별전형 관련

질의

- 약학대학이 2+4년제로 학제가 개편됨에 따라 PEET라는 약학입학시험과 공인영어점수, 전적대학 학점 등으로 별도의 전형을 거쳐 모집하고 있습니다.
-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법적근거가 대통령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상 특별전형에 대한 규정을 꼭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약사와 같은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꼭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4. [대학선진화과]

- 약대 입학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대학 입학(정원의 특별전형 등 포함)에 관한 규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이 적용됨 - 따라서, 약대 입학에 있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여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특정한 전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 약대 전형에서 소정의 학점의 의미

질의

- 각 대학으로 보낸 약대 전형 안내문 중, 2011학년도 약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있는데 소정의 학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0.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제적, 수료 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학칙으로 졸업 및 학년, 학과별 수료 학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약대 편입학 이전 대학에서 수료를 인정하는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의미합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약대 6년제 대학교의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문제점

질의

- 농어촌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입학한 대학교에는 농어촌특별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약대 6년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의 농어촌 학생모집에서는 신입학시 농어촌 전형으로 입학한자라는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 농어촌 전형은 농어촌지역에서 살며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덜 받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생긴 것 아닌가요?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이중특혜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3. [대학선진화과]

- 우리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신입학 당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의 자격(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전형으로 신입학한 자로만 한정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다만, 농어촌 특별전형의 세부적인 자격기준(출신학교의 소재지, 재학기간 등)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학대학 입학시 같은 군 내 1개이상 대학지원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질의

- 이번에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본 사람입니다. 가군과 나군으로 대학이 나뉘어져 있고 12월에 원서접수하고 1월에 면접을 실시하는데 1월 면접 날짜가 같은 군 내에서도 겹치지 않는 대학도 있더라구요. 학교간에 면접 날짜만 겹치지 않으면 같은 군 내에서도 1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1. [대학선진화과]

- 우리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군별 모집(가/나)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군에서는 1개교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 교육학 이수자의 학위인정 여부

질의

- 스페인 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수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취업(교수 또는 교직)시 그곳 학점 또는 학위가 인정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대학선진화과]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해당 국가에서의 대학원과정의 인가(인증) 여부, 국내대학원에 준하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학점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 받은 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에서 학위의 인정여부 등은 대학 및 관계기관이 수요기관이 되어 검증하여 판단하며, 외국 교육제도의 다양성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외국 학위를 검증하는 제도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인정여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대학의 정식인가문의

질의

- 외국대학의 정식인가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대학선진화과]

- 외국학교의 정식 인가여부는 해당 국가법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확인 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 대사관 등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해당 국가에서의 대학원과정의 인가(인증) 여부, 국내 대학원에 준하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학점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 받은 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여부 등은 대학 및 관계기관이 수요기관이 되어 검증하여 판단하며, 외국 교육제도의 다양성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외국 학위를 검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무 학점 관련

질의

-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과는 아동보육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학과인데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학점(24학점)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학교 최저 신청은 18학점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일단 18학점은 신청하지 못할 뿐더러 18학점 역시 다른 학교의 최저 학점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의무적으로 학생 학점을 관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4. [대학선진화과]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교육과정 및 학기, 수업일수 등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수가능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정

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동법 제14조에 의거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수학점의 범위는 동 법령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명시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일반편입 모집인원 제한 관련

질의

- 2012년부터 일반편입 모집인원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교수확보율 60% 미만인 대학교들의 편입 모집인원이 줄었습니다. 본래 일반편입은 각 대학들의 결원(자퇴, 제적인원)을 정원 내에서 충당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교수확보율에 따라 모집인원을 줄인다고 하여 줄었던 인원에서 또 줄어든 것입니다. 교수확보율에 따른 일반편입 인원축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3. [대학선진화과]

- 교수확보율에 따른 일반편입 인원 축소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셨습니다. 많은 대학이 법정 교수비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해 편입생을 선발함으로써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재학생이나 편입학생 모두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부의 본 정책을 통하여 편입생을 교수 확보율만큼만 선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교수확보율이 높지 않은 대학은 학생을 그만큼 적게 선발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적정한 대학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및 계약학과로 재입학 관련

질의

- 군청과 협약하여 계약학과(야간 행정학과)를 설치하였습니다. 협약에 의거하여 퇴직, 전출 시 본교에서 제적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교 계약학과 재학생 중 3학년에 편입학하여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 학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전보 발령 예정상황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교에서는 협약에 의거 제적처리를 합니다. 문의 사항은

1. 추후에 이 학생이 본교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입학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재입학이 가능할 경우, 계약학과 소속으로 재입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학과가 아닌 현재 일반 행정학과 야간 학생으로 재입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1. [대학선진화과]

-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 다만, 동법 제3항 규정에 의거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약학과로 정원의 입학한 학생이 제적 후 재입학할 경우, 계약학과 소속으로 재입학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입학관련

질의

- 야간(졸업논문 미이수자)입학생의 주간 동일 동일학과 재입학 가능여부 질의(야간 동일학과의 폐과로 인한)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0.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입학 여석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야간학과에서 발생한 제적자수를 주간학과의 여석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과제도(대학교)

질의

- 4학년인 학생이 동일 학부내 타 전공으로의 전과를 신청한 경우 학교장 승인인 할 경우 전과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8.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와 관련하여는 대학이 자율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에 대학별로 정하여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사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현황 요청

질의

- 전국의 사회복지전공학과가 운영되고 학교에 관한 자료 문의
 1.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리스트 및 학생 수
 2. 교수 수 * 사회복지전공학과 관련

회신

회신일 : 2010. 12. 2. [대학선진화과]

- 대학교 정보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입학정보(<http://univ.kcue.or.kr>) 또한 우리 부 홈페이지(www.mest.go.kr) 통합검색란에 '대학원 석, 박사과정'으로 검색하시면 알림마당란의 "2009학년도 전국 대학원 석, 박사과정 운영 기본통계" 자료가 탑재되어 있사오니 동 자료를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매년 전국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수, 학생, 교원, 재정, 시설 등에 대한 교육통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0년의 통계자료는 연말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통계센터(02-3460-03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업 및 비전업 시간강사 구분과 그에 따른 강의료 산정에 관한 의문

질의

-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의 연구교수, 기금교수, 객원교수로 계약직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나온다면, 이 분들에 대한 구분을 전업과 비전업중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25. [대학선진화과]

- 우리부 별도 지침등을 통해 시간강사를 전업/비전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학교별로 강의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달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부/대학원과정, 주간/야간과정, 또는 별도의 직업 유무에 따른 전업/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의료를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즉, 시간강사에 대한 별도의 강의료 기준은 대학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부에서 그 기준에 대해 달리 관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전임강사관련

질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제 2장 교직원 제 5조, 6조, 7조에 의하면 교원 등의 자격기준, 교원의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경력증명서상 경력은 초빙전임강사(주당 12시간 강의, 방학중 학기중과 동일한 급여를 받음)로 되어있습니다.
- 특히 저의 초빙전임강사 경력의 경우 IMF 당시 교과부 업무지침(97년 또는 98년)에 의해 처음으로 채용된 경우로 동 시행령 제2장의 교직원의 모든 경우를 충족 하고 있는데 초빙전임강사가 전임강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9. [대학선진화과]

- 현행법령상 초빙전임강사라는 직의 구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직명에 대한 교원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인지 여부는 우리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질의하신 직명으로 임용한 해당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 등의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인지, 초빙교원 등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임강사와 일반강사의 비교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전임강사의 자격 조건 및 일반 강사와 구분하여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9.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통상 전임교원을 의미하며 그 자격은 각 대학마다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자격기준을 최소로 하여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일반강사라 함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비전임교원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하여 말씀드리자면,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등도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최소로 하여 대학의 장이 그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강사는 법령상 그 자격기준에 대해 달리 정한 바 없습니다.

전임교수 신분관련

질의

- 전임교수가 같은 대학 같은 과 학생의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와 전임교수임용 시 재임용기준에 대해 학교에서는 공지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6. [대학선진화과]

- 학사운영의 공정성 저해,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학교원은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으로써 계약내용은 당연히 양자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한편, 동법 동조 제7항에 따라 재임용을 위한 평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임용을 위한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교원들에게 공지하여 사전에 재임용 기준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로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재임용 거부 포함)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직급보조비에 관해서

질의

- 2009년 개정된 직급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어야하는데 재직중인 대학에서는 ‘보직 수행경비’라는 명목으로 학장에게는 105만원, 학과장에게는 18만원에서 27만원까지 학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직급보조비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31. [대학선진화과]

- 우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에 의하면 직급보조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의 편성 시 사용된 예산안편성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는 반드시 직제상 총정원에 근거한 계급별 직급별 정원인 ‘기준정원’을 기준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에 단가를 계산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때 직급별 정원의 의미는 관련 학교에서 운영되는 보직의 숫자가 아닌 직제에 근거한 기준정원을 의미하고, 대학 관련 직급별 정원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장/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조교”로 구분되어 있을 뿐 기타 직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예산편성 시 학과장 등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직급보조비의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대해서만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과/전공 개설 관련

질의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A라는 학과/전공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일반대학원 A학과/전공 소속 교원이, 특수대학원 B학과/전공 소속교원에도 소속되어 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31. [대학선진화과]

- 교원이 동일한 대학내의 신설 대학원의 교원이 되고자 라는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대학

의 교원은 동일한 대학내의 한 학부에만 소속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만약 A학과 전공 소속 교원이 타 대학 B학과에 출강을 가는 경우라면, 임용권자 (이사장 또는 위임할 경우 학장)의 사전허가를 득하면 가능합니다.

● 학점교류시대학원과정 개설 교과목에 대한 계절학기 문의

질의

- 4년제 대학과 대학원 과정만 있는 타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할 때 대학원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4년제 대학 학생이 계절학기로 수학을 하고자 할 때 수강신청을 하고 이수하고 나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3.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포함)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원 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에도 귀 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전공선택으로의 인정 또한 귀 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제대학원 및 영어전용학위 리스트 요청

질의

- 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국제대학원 리스트와 영어전용학위과정이 설치된 대학원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5. [대학원제도과]

- 외국대학 분교 확인여부는 www.isi.go.kr에서 학교설립 - 제도·비교 - 외국교육기관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 개교된 학교와 개교예정인 학교에서 광양



STC-korea, 부산FAV : 석, 박사과정 대구국제학교, 채드워 송도국제학교 : 초, 중, 고 과정
입니다. 또한 국제대학원 리스트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한 대학원 현황은 대학알리
미(www.academyinfo.go.kr) 및 교육통계서비스(std.kedi.re.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알리미 : 대학원 유형별/설립/지역별 검색 가능 - 교육통계서비스 : 고등교육통계 전
체 자료 및 추가로 자료 요청

미국 대학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인지 문의

질의

- 미국대학과 연계된 교육기관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한국에서 하고, 졸업장을 석사자격을 미국대학에서 준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5. [대학원제도과]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해당 국가에서의 대학원과정의 인가(인증) 여부, 국내대학원
에 준하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학점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 받은 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에서 학위의 인정여부 등은 대학 및 관계기관이 수요기관이 되어 검증하여 판
단하며, 외국 교육제도의 다양성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외국 학위를 검증하는 제도는 없음
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인정여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의 대학원 박사 과정 문의

질의

- 미국에 있는 대학원/박사과정을 입학하려고 하는데요. 입학하려는 학교의 수업방식이 원
격수업, 통신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싼 달러를 써가면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한국에
서 동영상과 이메일을 통해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박사과정을 입학하려고 합니다.
- 제가 입학하려는 대학은 미국의 지방정부로 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이며, 연방정부 인증협
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인증까지 받은 대학이므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가짜대학, 학위

를 남발해주는 대학과는 거리가 먼 대학원입니다.

- 제가 고등교육법을 읽어봐도 그러한 조항은 없던데 해당국가에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원격수업을 받아 학위를 받으면 한국의 교육당국으로 부터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7. [대학원제도과]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해당 국가에서의 대학원과정의 인가(인증) 여부, 국내대학원에 준하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학점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 받은 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에서 학위의 인정여부 등은 대학 및 관계기관이 수요기관이 되어 검증하여 판단하며, 외국 교육제도의 다양성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외국 학위를 검증하는 제도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입학(취업)하고자 하는 대학(기업)에 인정여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관련 박사학위 종류

질의

- 환경 관련 박사학위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 자세히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시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1.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합니다. 또한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박사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전공의 종류에 관한 질문이시면 각 대학마다 전공, 학과명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원 산정관련

질의

- 대학원대학은 학생이 200명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기준을 200명으로 계산하여 인문계



열 교원확보를 학생25명당 1명을 기준으로 교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제6조 4항에 전문대학원으로서 대학원대학의 경우 1/3을 겸임 및 초빙교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전임교원1명과 겸임이나 초빙교원 1명을 같이 보아도 되는지요?

- 현재 최소기준 200명으로 보면 인문계열인경우 최소교원이 8명인데, 전임6명과 겸임교원 2명도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3. [대학원제도과]

- 전임교원1명과 겸임이나 초빙교원 1명은 확일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이 1명으로 환산되기 위하여는 주당 수업시수 9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겸임 및 초빙교원 3명을 합산하여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이 된다면, 이 3명을 전임교원 1명과 같은 1명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해외에 있는 자에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질의

- 대학원(국내 인가대학)에서 외국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 가서 intensive로 1-2주간 강의를 하고 학점을 준다고 안내문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6.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및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호에 의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해당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에 한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 단독의 학위수여는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intensive로 1~2주간 강의를 하고 학점을 준다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판단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교육대학원 전공부 표기

질의

- 국립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 전공 “한국근대사(○○지역사)”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 하였다면,
- 1) 특수대학원인 국립교육대학원(전공:역사교육)에서 학위 논문을 한국근대사(○○지역사)로 학술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학위증명서에는 ‘역사교육전공’이라 표기가 되는데 논문이 ‘한국근대사’이면 이를 “한국근대사 전공자”로 볼 수 있는지? (학칙은 역사교육 전공이라고 표기됨)
- 2) 위의 내용과 같을 경우 “대학원에서 한국근대사(○○지역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속 학과장(단과대학장) 명의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5. 25.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전문학위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며, 전문학위 표기는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를 표기합니다.
- 따라서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해당대학이 정한 학칙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로스쿨, 의치전원 갈 수 있게 개선 관련**질의**

- 기초생활수급자가 로스쿨 의, 치 전원 못 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가려면 수급권과 맞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의치전원이 대학원이라는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자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일반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주간에 뽁뽁하게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 활동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로스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전형을 만들어 냈지만, 실제로 로스쿨에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편입니다. 로스쿨과 의치전원은 근로 예외 기간으로 인정해줘야만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4. [대학원제도과]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중 일부를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조인이 될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관련(전공 통합관련)

질의

- 2010년부터 박사과정을 설립할 때,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의4항 내용대로 교원의 2분에 1이상이 해당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전공을 통합하여 아예 새로운 전공을 신설하는 경우와, 전공을 통합하여 기존의 한 전공에 나머지 전공을 흡수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의4항의 내용을 꼭 맞추어야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2. [대학원제도과]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4항의 내용은 학과 및 전공신설에 있어 교수/연구여건을 확보토록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 귀 대학에서 동일한 전공을 통합하여 새로운 전공을 신설하는 경우, 그 전공의 성격이 기존 전공과 유사한지 여부,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될 수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그 전공이 기존 전공과 이질적인 성격이거나, 보다 영역이 확대된 전공이라고 본다면 이는 전공신설로 보아, 우선적으로 동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리라 봅니다만, 이 부분은 정량적 법적 요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학문의 연관성, 유사성, 전공 신설의 이유 등을 학문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대학에서의 재적생에 대한 범위 해석

질의

- 일반적으로 재적생이란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본부의 입장은 재적생에 수료생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하여 재적생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 [대학원제도과]

- 재적생의 범위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의 학칙, 학사규정에 의해 해당대학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학원 소속교원 확인에 관련하여

질의

- 2011학년도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에 따라 학과/전공 신설 기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소속교수 5인이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소속교수 3인이상]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와 [특수대학원 언론학과]에 동일한 교수가 각각 소속 되어있습니다.
-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는지 관련규정과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31. [대학원제도과]

- 규정에 한한 답변만 드립니다. 대학원에 따라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와 [특수대학원 언론학과]에 동일한 교수가 강의를 할 수는 있으나, 각 대학원의 교수 카운팅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속은 둘 중 한곳에만 적을 둘 수 있습니다.

대학원 정원외 군위탁 자비취학추천자 입학허가 기간 관련

질의

- 2011년 1학기 정원외 입학 허가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군위탁생 취학추천 공문이 없어 도 가능한지요?
- 공문이 없이 입학할 수 없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느 기간까지 군위탁생을 접수 받아 해당학교에 취학추천 공문을 발송하는지요?
- 추천기간이 지나 취학추천 통지를 받지 않은 학생(군위탁생)을 정원외 입학을 취소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1. [대학원제도과]



- 먼저 2011학년도 1학기 입학생들에 대해 우리부로 국방부에서 추천의뢰한 명단은 모두 해당대학으로 추천자 알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학원의 여건과 응시자의 능력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격 여부는 해당대학에서 결정합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규정된 별도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으로 한하고 있어, 우리부에서 해당대학으로 군위탁생 취학추천을 하지 않으면 입학허가 절차가 불가합니다.
-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만 취학추천이 가능합니다.
- 우리부에서는 입학을 희망하는 국방부 위탁생을 대상으로 추천 의뢰하므로 대학의 모집일정이 끝나면 우리부의 추천의뢰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우리부로부터 추천의뢰가 되지 않은 군위탁생은 정원의 학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할 수 없는 불합리성

질의

- 저는 영어 전공자로 91년도 2학기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고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다 휴학을 한 두 번 하다 주어진 교과를 다 이수하고 졸업시험도 통과했습니다.
-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논문 제출 시기가 미뤄졌는데 학교로부터 논문 제출 기한이 지나 학위는 수료로 끝났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논문 제출 시기를 놓쳤다고 수료로 끝내버리고 관리를 끝내는 건 분명 학교 행정 편의주의인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4.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사정은 안타깝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학교로 다시 한 번 문의를 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졸업장 등록 관련

질의

- 요즘 대학원 졸업장에는 장관님의 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6.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부에서는 교과부장관 명의로 대학의 정규과정(석·박사) 학위기를 발급하지 않으며, 해당대학에서 졸업사실을 우리부로 등록 및 보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학원 증명서 발급비용 관련**질의**

- 대학원 증명서 발급비용이 2,000원이며 인터넷을 통해서 증명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발급신청을 하면 7~10일 정도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 [대학원제도과]

- 대학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칙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며, 귀하가 몸담았던 대학원이 사립으로 교과부에서 권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제 역시 학교의 재정 및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의 학점이수 및 기타 교육과정에서 법적인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검토 및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편입**질의**

- 학과 신설로 신입생 모집시 편입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1학년도 신설된 일반대학원 00학과 박사과정 3학기 편입)



회신

회신일 : 2010. 11. 19.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수 있으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편입학 여부는 고등교육 관계 법령내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해당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문의 연속성 및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신설 예정학과에 재적 학생이 없는 학기에 편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측의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로스쿨 입학시에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부정입학 관련

질의

- 로스쿨 입시요강에 보면 저소득층 차상위 특별전형이라는게 있습니다. 3년간의 세대의 건강보험료 일정 수준 이하의 세대 구성원에게 지원자격을 주는 것인데 허위로 이혼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낮추거나 각종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대학에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이 로스쿨 입시에서도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적으로 15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8. [대학원제도과]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특별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3항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를 근거로 특별전형 차상위계층 선발시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최소 3년)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 및 소득 증빙자료(최소 3년), 자기확인서 등을 통해 지원자의 자격여부를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로스쿨과 법학과 관련

질의

-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법학과를 운영하지 않는데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등의 '법조인 양성'이 목적이고 법학과는 '학문'이 목적이지 않나요? 어째서 한 학교에 두개는 존속할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5. [대학원제도과]

- 대부분의 대학 법학과에서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입학 단계에서 법대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수한 법학 인재들이 사법시험 준비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부 학문전공 지식 토대 위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초이론 교육 및 실무 교육을 더하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을 양성해 가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입니다.
- 그런데, 한 학교에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병존할 경우, 법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당해 대학의 법전원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 다양한 학부 전공으로부터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학부와 법전원이 교수 및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어 양쪽의 교육이 모두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전국에 법학전문대학원은 25개교로 그 외의 우수한 법학부가 설치된 대학에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충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자의 논문심사중 영문사용명칭 관련

질의

- 국내 박사학위 명칭사용에 대한 정확한 영문표기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학술박사과정 수



료와 졸업이 있는데 학술박사 졸업에 따른 명칭은 Ph.D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료의 명칭과 박사논문 심사 중의 명칭은 다른가요?

- 보통 수료하면 모두 Ph.d.can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영문명칭 표기를 알고 싶습니다. 학술박사 수료의 표기와 학술박사 수료후 학위 논문심사중의 표기의 정확한 영문 명칭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 [대학원제도과]

- 대학원의 학위과정과 관련한 영문 표기 방법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위과정의 영문 표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기준 수정 요청

질의

- 특별전형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차상위계층’이라는 항목이 있어 가족구성원 대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액을 기준으로 특별전형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 등과 같은 일을 했더니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적 곤란자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제외가 되게 생겼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대학원제도과]

- 특별전형 중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법에는 광범위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이거나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 이런 연고로 각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선발하는 근거로,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만을 고려하거나, 건강보험료 및 여타 납세 현황을 광범위하게 고려하기도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차상위 급여수급자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번째의 경우만을 둘 경우, 대상자가 지나치게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만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동 기준을 유지하는 학교에서도,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만을 고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부당하게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기준

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정규 신학대학원 관련

질의

- 몇몇 신학대학교 등에서는 정규과정 학생이 아닌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8. [대학원제도과]

- 대학원의 연구과정은 고등교육법 29조에 의거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대학원의 학위과정과 별도로 일부 교과목 또는 과정을 일정기간동안 수업에 출석하여 이수하게 하는 것으로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학석사 연계과정 관련

질의

- 사립대학의 국제대학원 및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이 고등교육법시행령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7. [대학원제도과]

- 학·석사 연계과정은 우수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대학원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전공 교육의 연속성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의거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및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동과정 취지를 고려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석사 연계과정의 동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석박사 통합과정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

-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1. 일반적으로 시험관련 법(건축사법) 등에는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몇 년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일부 시험의 경우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를 빠르게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박사만 3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옳은 해석인지요?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논문이 없기 때문에 석사학위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님 석사시험이 논문으로 대체되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증 받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6.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정한 석·박사통합과정은 학문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을 연계·운영하는 제도로서 동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입학자는 박사학위과정까지 4년 이상을 수학하여야 하며, 계속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하면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여기준인 수연연한 경과 및 학점이수를 충족할때는 석사학위 수여기준의 일부(논문제출 및 학위수여 등)를 생략하고 석사학위 자격을 인정하여 박사학위 해당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의 석사학위 과정의 인정 여부는 학칙에 따라 당해 대학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외국대학 졸업생 국내대학원 입학관련

질의

- 인도 뭄바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곳 교육 시스템은 영국과 같이(식민지 영향) 3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뭄바이대학교 산하 각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제 3학년 마지막 학년을 진행 중인데 졸업 후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습니다.
- 며칠전 한국 대학은 인도에서의 학사 학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대학원 진학이 불 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3년제고 걸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국에서 공부한(영국도 역시 3년제 걸리지 시스템입니다.) 학생도 한국에서의 대학원 진학이 불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9.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해당 대학이 학사학위 및 전체 수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입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학생의 교육대학원 입학관련

질의

- 외국인 학생이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만을 취득하고자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입학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4. [대학원제도과]

- 대학원마다 전형(모집인원 및 구비서류)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으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이이라면, 국내 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 또한, 야간제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경우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은 불법 취업이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간대학 및 대학원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8.7.1부터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 요령’을 제정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도 국내 야간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대학의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학교 졸업후 대학원 입학관련

질의



-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로 가서 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한국 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음악원에 대한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음악원 졸업 후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30.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라고 입학자격에 명시하고 있으나,
- 학력인정은 해당대학의 수업연한, 교육내용, 해당국의 교육관계법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학력인정 절차 및 확인기관은 없습니다.
- 다시 말해 대학을 졸업한 자의 경우 해당 대학이 학사학위 및 전제 수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걸쳐 입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요강 및 준비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대학원 입학처에 문의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요기관은 대학원인 이유로 교과부에서는 법적인 회신만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 바랍니다.

의,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분에 대한 타 모집단위 증원이 가능한 시기

질의

- 2010년 8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별표 1의7]에 의하여 감축되는 의,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1/2범위 내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다른 모집단위의 입학정원 증원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6. [대학원제도과]

- 의,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분에 대한 타 모집단위 증원이 가능한 시점은 의, 치과대학이 의, 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의, 치전원 체제 유지 지원에 관하여

질의

- 교과부가 의치전원 유지를 하는 학교에 각종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 치전원도 정원의 20-30% 정도 고교생을 선발하여 학석사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앞으로 의치전원을 계속 유지하는 학교에서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일정 인원의 고교생을 선발하게 되면 그 만큼의 의전원 입학 정원 수가 줄어들게 되니 교과부의 발표(의대체제로 회귀 여부를 떠나 의전원의 경우 2016학년도까지는 총 입학정원의 변화가 없음)와도 맞지 않아 의치전 준비 수험생들의 반감이 클 것입니다.
- 혹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의치전에서 고교생 모집을 허용할 계획을 교과부가 가지고 있다면 의치전이 의대로 회귀하는 시점(2017학년도 이후) 이후가 되어야 기존에 교과부가 제도 개선안에 대해 발표한 내용과 맞을 것입니다.
- 의전원 1-2학년 학생 결원이 있을 경우 그 규모만큼 차년도에 추가로 선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대학원제도과]

- 학석사통합과정의 정원은 별도 정원이 아닌, 총입학정원내 선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학석사통합과정의 설치는 지난 '11.6.23,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2.1.21 시행을 앞두고 현재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결원 보충은 입학정원의 5% 범위내에서 1~2학년 재학생의 자퇴 등의 결원에 한정하여 전문대학원으로 학제를 선택한 8개 대학에 대해서 '13학년도 입학부터 허용할 예정입니다.

의전원 정원축소에 따른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불이익

질의

- 몇 학교들이 의전원을 2015년부터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때 입학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의사가 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불공평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9. [대학원제도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03년도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09년도에 '의



치의학교육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10년도에 의사양성 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동 위원회의 정책 제언에 따라 각 학교가 전문대학원과 의치과대 중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괄적인 학제전환은 특정 학번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도 있어, 이를 분산하기 위해 대학들의 학제 변경시기를 차등하여 경과 기간을 두었습니다.
- 전문대학원과 의치대 체제를 함께 운영하던 학교(병행대학)는 2014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5학년도에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며, 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했던 학교는 2016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7학년도에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게 하므로써 한 학번에게 과도한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 전환 이후 4년간(병행 '15~'18년, 완전 '17~'20년) 전체정원의 30%를 학사편입학(본과 1학년)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전환초기 4년간은 정원내 학사편입학 비율 30% 유지, 이후 대학 자율 결정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출제기관 변경

질의

-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인 MEET시험의 출제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한의사협회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유형 및 개수 등 시험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그런데 현재 8월말 MEET시험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시험 자체가 1년 이상의 공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 상황에 시험을 치르기 체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험에 변화를 주겠다고 하면 급하게 다시 공부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험에 변화를 줘야 한다면 몇 년 전에 미리 그 사실을 공지하고 예비평가 등을 통해 수험생이 충분히 그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9. [대학원제도과]

- 2012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의 출제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로 변경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로 출제기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의치의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를 시행하기 위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M/DEET의 시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M/DEET시험이 처음 실시된 2004년 당시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의 출제와 감독, 채점 등의 전 과정을 담당하였으나, 이후 M/DEET를 운영할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가 조직됨에 따라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협의회 측으로 이관하여 2012학년도부터 출제를 포함한 전 과정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시험출제기관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M/DEET 검사영역 및 출제방향 등은 전년도에 준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입학정원 감축분에 대한 타모집단위 증원 가능 시기

질의

-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시점은 의예과 폐지(모집중지) 시점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분에 대한 타모집단위 증원 가능시기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 [대학원제도과]

-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할 경우 의예과 입학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타 모집단위의 증원이 가능하며, 증원 가능 시기는 의전원 전환시점인 의예과 폐지(모집중지) 시점부터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관련

질의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2. [대학원제도과]

- 2002년에 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2009년까지 의전원을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2010년에 최종 정책방향을 확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추진 기본원칙, 02.1, '06.1)
- 이에 따라, 그 동안 의, 치의학계, 이공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의, 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09.6~'10.4)해서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고 의학교육학제 관련 논의도 진행해 왔습니다.
- 또 공청회를 개최('10.4.7)해서 의, 치의학계 및 이공계 교수,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의견수렴 결과 학제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양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학자율로 학제를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의, 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은 당초 제도 도입시부터 계획되었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안내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전문대학으로 전환 경의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 4조 2항에 의하여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위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해당되는 대상이고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 [대학원제도과]

-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 의대설립(의대정원 배정)시 부대조건으로 병원설치를 의무화하였기에 의전원으로 전환하더라도 병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중학적 관련

질의

- 대학을 재학중에 있습니다. (산업대학원)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1년을 다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학교를 같이 다니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0. [대학원제도과]

- 대학원간 이중학적에 관하여 현행 고등교육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대학이 학문 전념의 필요성 및 학위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을 학칙이나 관련 규정으로 제한한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학적의 범위와 기준 관련

질의

- 2개의 학부를 동시에 다니는 것은 명백한 이중학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학원 박사과정 인 사람이 학부를 편입해서 동시에 박사과정과 학부에 재학 중이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0. [대학원제도과]

- 현행 교육관계 법령에는 대학(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석·박사학위과정)을 동시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대학생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전일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학원 역시 일반대학원은 전일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충실한 수학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다만, 야간에 수학하는 특수대학원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개설되었으므로 동시에 이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학교로 문의하시어 학교의 규정에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설립 관련 질의

질의

-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박사과정을 신설할 경우 7명의 관련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명의 사회복지학과 교원과 2명의 타학과(관련분야) 교원을 확보해도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31. [대학원제도과]

-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기 위하여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및 동 규정 [별표 1-2]에 의거,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구’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교원(전임교원)의 1/2 이상은 박사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은 3편 이상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교원 연구실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약속 지키지 않는 로스쿨 제재

질의

- 로스쿨 장학금 약속을 조건으로 인가가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 있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8. 4. [대학원제도과]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교과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입학과 관련 문의

질의

- 특수대학원생으로 2010.3.2일자 2기 편입학후 2010.3.2일자로 일반휴학을 했습니다. 그 후 2010.7.9일자로 자퇴를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재입학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 이 학생의 경우 취득성적은 편입학 당시 인정받은 6학점이 전부이고 편입학한 후 이수한 성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입학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3. [대학원제도과]

- 대학원의 재입학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는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법령에 부합할 경우 재입학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대학이 학칙으로 별도의 재입학기준(소정 학점 이수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상의 관계법령과 더불어, 당해 대학의 학칙상 재입학 요건의 부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전임교원 당해소속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관련

질의

- 저희 대학원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해당 소속 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한 입학 제한한다는 내용이 학칙엔 없는데 혹시 고등교육법상이나 그런 상위법령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혹시 그런 사항이 없다면 저희 대학원 학칙엔 없으면 석사학위 소지한 전임교원도 해당 소속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 [대학원제도과]

- 대학원의 박사과정 입학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 3항에 의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입학자격 인정의 결정 주체는 당해 대학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제도 개선

질의

- 저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다시 두 곳에 원서를 넣을 수 있고 각 대학의 면접일이 달라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의전원, 약전원에 지원하는 학생과 같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9. [대학원제도과]

- 대학과 달리 대학원의 입시 관련 사항은 학칙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6년제 약학대학은 대학원과정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시 복수지원 허용 여부는 대학이 결정할 사항으로 해당대학(들)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시 복수지원 허용 여부

질의

-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시 복수지원 허용 관해 민원 신청합니다.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시 복수지원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각 학교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하지만이 제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4. [대학원제도과]

- 치의학전문대학원은 05학년도에 5개 학교가 최초로 신입생을 모집한 이후, 현재는 전국 8개 대학에서치의학 전문석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의치의학교육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의치의학 교육학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8개 치의학 전문대학원 중 5개교는 2016년까지, 1개교는 2014년까지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09학년도까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학교 간 협의에 의한 통합적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일부 학생이 동시에 여러 학교에 원서 접수가 가능

했습니다.

- 그러나 각 대학이 면접전형일을 동일한 날로 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1개 학교에만 응시 및 최종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에 입학전형 계획의 개선을 권고하여, 협의회는 2차례에 걸쳐 입학전형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2011학년도 이후에는 수시전형 1개교, 정시전형 1개교에만 원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선발 및 입학에 관한 사항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내린 결정 사항으로써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 학부모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더 발전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회에 제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대학원 지원 문의

질의

- 특수대학원 입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타 전공으로 방송통신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특수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학사 일정상 수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3.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에 학기에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대학 및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문의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방통대와 대학원의 양쪽 학칙을 모두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학은 인정하나 대학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학원은 인정하나 대학에서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 입학코자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으로 인한 이중학적 관련



질의

- 현재 대학원(야간)에 재학 중인데 학사편입으로 대학교 학사과정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5. [대학원제도과]

- 법적으로 대학원과 학부대학의 이중진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재학중인 대학원의 학칙과 편입하시려는 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대학의 학칙 확인) 두 곳 중 한곳이라도 학칙에 금지되는 사항이라면, 입학이 무효가 되거나 한 곳을 자퇴하셔야 합니다.

편입학에 대한 질문

질의

-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신학교에서 M.Div 석사(당시에는 교육부학위과정이 아님)를 하고 독일에서 이 학력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논문을 쓰다가 마치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 한국에서 다시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하는데,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면 (교육부) “석사학위 소지자나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을 가진자”로 교육부 법령이나 학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사학위는 없고, 독일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한 학력으로 박사과정 입학이나 편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2.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33조에는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이 아니라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인가후 재학생들의 학위에 대해

질의

- 교단 인정 신학대학원인데 학교가 2013년에 대학원 인가(교과부 인가)가 난다고 하면 2012년에 입학한 한 1학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서 학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1. [대학원제도과]

- 입학할 당시에 귀하는 미인가된 학교를 입학한 것이므로 소급 적용해서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부의 인가가 난 이후의 학생부터 학위수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선발 시 입학자격 제한 관련 문의**질의**

- 대학원대학의 학생모집 및 선발시 일정한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모집시 원자력산업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소속 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할 경우 일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요?
-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교과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4.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박사학위과정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내에서 학칙 등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다만, 대학원 설립취지와 목적을 구현할 수 있고, 공정사회 구현 등 사회통념상 교육기회 균등 취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위조와 관련한 박사학위 인정 여부

질의

- 외국의 석사학위를 위조하여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석사가 허위학력이므로 당연히 박사학위는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취득을 오래 전에 했을 경우 일반 범죄처럼 시효가 지나 박사학위가 인정될 수도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0. [대학원제도과]

- 민원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고등교육법 제33조에 의하면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석사학위가 위조 등으로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박사학위 또한 인정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점 인정에 대해

질의

- 교육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대학원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공관련과목 학점을 38학점이상 취득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도 시간제등록생으로 학점을 더 취득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4.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학점인정 및 입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에서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모집요강을 자세히 살펴 보시고 입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학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MEET 시험 응시료 관련

질의

-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위해 수험생들은 MEET, DEET라는 입문검사를 치러야 합니다. 응시료 결제를 꼭 계좌이체로만 해야 되더라고요. 국가에서 치르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응시료가 몇 천원이더라도 다 카드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2. [대학원제도과]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수수료는 27만원이며, 문제 출제 및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여 협의회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 관련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고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에서 신청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을 넣습니다. 00대학교의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은 최소 석사 2학기 이상의 수업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석사로 2학기를 다녔으므로 신청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4. [대학지원과]

-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이 석사 입학 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전국 대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학교에만 별도의 지원자격을 추가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해당자와 같은 기 재학생을 입학자로 인정한다면, 4학기 이하의 재학생 전체가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학문 전 분야에서 30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수만명의 학생을 심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수천명의 심사위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문제는 필요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면접평가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선발 인원 규모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엄정한 평가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한 심사를 이루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원자격에 제한을 둔 점 양해 바랍니다.



글로벌박사펠로우십과정

질의

-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박사펠로우십 과정의 자격기준과 시행연도 및 취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6. [대학지원과]

-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글로벌 수준의 박사 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역량이 탁월하고 잠재력이 높은 학생을 선발·집중 지원하여 창의적 지식, 리더쉽,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방법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입학예정자로서, 학부 성적이 일정 수준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선발합니다. 아울러,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12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BK21사업관련

질의

- Brain Korea21(BK21)사업의 신진연구인력의 타 국가과제 연구사업 참여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30. [대학지원과]

- 2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신진연구인력) 제8항에 근거하여, BK21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는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타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실대학 구조조정 진행과정

질의

- 현재 부실대학 구조조정 계획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일단 대출제한 대학이라고 30개 학교를 발표하고, 지금 몇몇 컨설턴트를 요구한 학교에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부실대학으로 인해 퇴출조치 된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대학의 학생이었거나 학생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4. [대학지원과]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매년 교육여건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도에 제외된 대학들도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부에서는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학과개편 등 구조조정 유도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이 통·폐합 및 퇴출 될 경우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총장의 자격기준

질의

- 총장임용에 있어서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6. [사립대학제도과]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총장의 자격을 명시한 사항은 없으며,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거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3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시 신설여부 문의



질의

- 3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시 신설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먼저 장소의 구분이 없이 현재의 장소에서 3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시 신설에 해당하는지요?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3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시에도 신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4. [사립대학제도과]

-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전환'은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을 폐지하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전문대학이 현재 위치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위치를 변경하여 전환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각종학교 및 재단법인의 학교운영

질의

-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 [사립대학제도과]

-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범위에 전통술의 제조 및 연구개발을 교육하는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 등 세부 학교 운영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포함된다면 재단법인 설립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며, 학교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화재단의 교육강좌 등이 별도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지, 평생교육법에 의거 별도 학교법인 설립없이 운영하는지는 해당 강좌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부터 우선 파악하여야 할 문제이며,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평생교육법에 의거 인가만 받은 후 '000학교'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건물 기부 채납 관련 질의

질의

-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건물 사용권을 학교가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1항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에 해당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축관련 비용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다가 건물 완공시 사용 수익기부자산(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3. [사립대학제도과]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시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로 건축한 건물은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육연구시설 임대사업 운영 가능여부

질의

- 교비회계로 신축한 교육연구시설에 임대사업으로 운영되는 영화관, 공연장(컨벤션홀) 시설을 학생 및 교직원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로 설치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30.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필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둘 수 있음.
- 편의시설은 직영 또는 임대 형태로 운영 가능함. 다만,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예 ; 주이용 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이며, 사용료 등은 동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임)

● 교육용기본재산 매입가능 여부 문의

질의

- 지방 4년제 사립대학에서 학습장이 아닌 학생유치와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에 교비로 오피스텔을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7. [사립대학제도과]

- 교비회계로 취득이 가능한 재산은 동 재산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인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1.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지도비
 4.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교육용기본재산 사용관련 문의

질의

- 현재 대학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빌딩(캠퍼스외부) 일부를 학교법인에 수익용으로 임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시 임대료 및 제세금은 주변시세에 준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가 가능하다면 임대면적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6. [사립대학제도과]

-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지, 교사 및 실습지, 지원·연구·부속시설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입니다. 이러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는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후생시설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잉여 재산일 경우, 대외 임대가 당해 대학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입 전액을 교비회계로 세입하여 학생 등록금 경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득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하여야 합니다.

규칙 해석 문의

질의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서 건축적립금은 노후교실의 개축이나 증축을 위해 적립한다고 하는데, 이는 노후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더 넓게 또는 더 높게 건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존 캠퍼스가 좁아서 제2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해도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7. 29. [사립대학제도과]

- 해당 규칙의 ‘개축’은 교사동을 새로 짓는 것을 말하며, ‘증축’은 기존 건물에 덧붙여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또는 건축관계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캠퍼스 건립은 우리 부로부터 위치이전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증재산취득 문의

질의

- 사립대학에서 개인으로부터 대학발전과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해 임야를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증받는 임야가 대학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재산일 뿐만 아니라 대학에는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지와 교사가 이미 100% 이상 확보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해도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8. [사립대학제도과]

- 기증자의 의사가 대학발전과 학생 장학 등 교육목적활용에 제한되어 있다면 법인사회의 결정만으로 대상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의 특성상 교육목적 활용이 어렵다면 기증자의 동의를 얻고 법인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해석 관련 질의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2조 7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7항의 내용 중 “ 교



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은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중략>...운동시설, 업무시설...<중략>.... 건축물은 그러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대학설립주체가 직접 설치하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일반적으로 대학내의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규모인데, 판매시설은 가능하고 근린생활은 안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7. 28.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설립주체가 직접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립대 재정지원 관련

질의

- 사립대학에 지방자치단체가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직접 지원 보조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9. [사립대학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지원을 하는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립대학 감사에 대하여

질의

- 초·중·고 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대학 감사에서 개방(추천)감사와 일반감사가 각 각 초·중고와 대학을 분리하여 감사를 하고 나중에 의견을 교환한 후 대학평의위원회에 자문하고 이

사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두 감사가 모두 초중고대학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에서 처럼 개방감사는 초중고를 일반감사는 대학을 감사해도 무방한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두 감사는 예전 회계법인에서는 대표와 직원으로 현재 회계법인에서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7.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에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개방감사와 일반감사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 구성을 위한 선임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분되는 명칭에 불과합니다.
- * 개방감사 :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
- * 일반감사 : 이사회에서 선임

사립대학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선임 관련

질의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및 제21조 제5항에 의거 이사회 임원 중 일정 비율을 개방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대학평의위원회에 두도록 한 조항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주장하며 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임원 결원시 공석으로 두어야 하는지?
- 상기의 사유로 인해 공석으로 계속 둘 경우 이사회 운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결원 임원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여도 되는지?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대학평의위원회에 두도록 한 조항은 있으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거부함에 따라 법인에서 나머지 추천위원회 위원(대학평의위원회 추천 1인, 법인 추천 2인)만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도 되는지? (각 구성단위별 위원 추천 요청 및 구성의 절차를 법인에서 진행하여도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2. 16. [사립대학제도과]

- 현 상황에서는 공석으로 둘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립대학 교비회계 예결산서 공개 당사자

질의

- 사립대학교의 예결산서 정보공개 청구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그 대학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학교법인인가 아니면 소속 대학 총장인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2. [사립대학제도과]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사립학교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상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사법기관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률관계와 당사자적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대학 운영경비 문의

질의

- 사립대학에서 잉여재산인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매각 과정을 거쳐 현재 법인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을 당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액은 대학 운영경비로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까?
- 이 재산에서 과거에는 별 소득이 없었으나 최근 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에서 대학으로 전출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학 운영경비는 경상비전출금으로 한정되어야 합니까? 또는 법정부담금전출금도 운영경비로 간주하여 경상비전출금과 절반씩 나누어 전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9.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

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학교운영경비 전출 시, 경상비 전출과 법정부담금 전출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대학 통합 관련

질의

- 통합과정에 동문들 10인의 동의 서면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인지요? 통합 대학 교명 교체 시 한 개인의 호나 이름을 써서 바뀌도 사회 통념 및 가치상 무리가 없는 지요?
- 통합은 허가 사항입니까, 인가 사항입니까? 심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심의를 하시는 심의관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지요? 심의관들의 심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것들 인지요?
- 대학평의회 심의 확정 후 이사회에 상정 통과 후 신청서를 접수한다 하는데 대학 평의회에서 확정이 되지 못하면 이사회에 상정 하지 못하는지요?
- 4월 29일까지 접수를 통지받았다 합니다. 그날까지 접수가 안되면 통합 대학으로 2012년 신입생을 선발 하지 못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9. [사립대학제도과]

- 통합시 동문 10인의 동의서면 필요 여부
 - 동문 10인의 동의서면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통폐합 승인 심의시 통폐합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참고하고 있는데 이 때 학교법인은 구성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통합 대학 교명으로 한 개인의 호나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여부
 - 사립대학의 교명은 사회 통념상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인의 호나 이름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개인의 호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 통합이 허가 사항인지 인가 사항인지 여부
 - 통합은 승인사항입니다.



- 통합 신청 접수 후 심의 기간
 - 통상 심의에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심사위원의 자격
 -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됩니다.
- 심사위원의 심의사항
 -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통폐합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대학평의회에서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대학평의회는 심의기구입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기구). 따라서, 대학평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2012년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4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2012년도 수시모집 일정을 고려한다면 통합 승인 여부는 6월~7월에 결정되어야 하며 서류 심의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립대학 회계 문의

질의

- 사립대학 회계자료를 보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자금계산서 지출항목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은 2010회계연도 자금예산서 수입항목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과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예산서의 경우 당초 예산서와 1차 추가경정예산서 및 2차 추가경정예산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계산서의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은 반드시 당초 예산서의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과 일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차 또는 2차 추가경정예산서의 이월자금과 일치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9. [사립대학제도과]

- 2009년 결산서 자금계산서의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산출시점(결산일)은 2010.2월 말일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예산서는 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

게 송부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당초 예산서의 전기미사용이월자금은 결산시점 이전에 추정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2009년 결산서의 미사용차기이월자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전년도 결산시점 이후에 작성되어 확정된다면 그 추경의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전년도 결산서상의 미사용차기이월자금과 일치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학 이사회 관련

질의

- 사립대학 이사회 소집통지일 의미 및 회의 7일전 계산 관련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4. 18. [사립대학제도과]

- 소집통지일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일자입니다. 예를들어 2011.11.1일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7일전에 발송한 것으로 봅니다.

사립대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면적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에 관해

질의

- 사립대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면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견에 따른 대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면적 보다 증감한 일정 면적 기준이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면적에 비해 차이가 발생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인정하는 증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협의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2. [사립대학제도과]

- 도시계획시설결정 가능한지에 관한 여부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에 대한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교 직제개편 절차 관련

질의

- 사립대학교에서 직제를 개편할 때, 학교의 학칙과 학칙에 부속된 직제규정의 개정 절차없이,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개편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고등교육법에 학교의 조직 사항은 학칙과 정관에 포함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과 사학법에는 학칙개정은 학내의 절차를 밟아서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대학의 학칙과 정관에는 학칙의 개정은 교수회의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대학의 직제개편을 하려면,
 1. 학칙 개정안과 학칙에 부속된 직제규정 개정안을 발의
 2. 학내의견수렴
 3. 교수회의 심의
 4. 평의원회 심의
 5. 이사회 의결 및 정관개정 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요? 1)부터4)의 절차 없이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직제개편을 시행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 27. [사립대학제도과]

- 학칙 제46조에 귀 대학교의 직제는 직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 제27조제2항 제2호에 직제 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칙 개정 절차가 아닌 직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교수회와 평의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대학의 국고집행

질의

- 사립대학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의 수정의 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를 받아 집행하는 사업인 경우(국고가 일부, 혹은 전체) 국가계약법에 반드시 따라서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조달청에 입찰공

고를 의뢰해야 한다든지, 회계예규나 국가계약법상의 세부절차까지 모두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30. [사립대학제도과]

-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계약에 관한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내지 제38조에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60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고보조부처 또는 기관에서 적용 법규 또는 지침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처 또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 이양

질의

-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다른 이사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이사는 자신이 선임한 다른 이사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2. 7.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므로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이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관련

질의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이사선임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와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2. [사립대학제도과]

- 개방이사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4조제4항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



20조에 따라 선임합니다. 그러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5조의3제1항은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제20조에 따라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서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설립 시에 준하여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관련

질의

- 사립대학에서 제2캠퍼스 건축비로 건축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적립목적에 일치하지 않지만 당해 학교(법인)에서 규정을 만들어 권한이 있는 결정기구(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적립금을 사용해도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9. 17. [사립대학제도과]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 2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등교육기관 회계를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다섯가지 종류(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의 적립금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건축적립금’ 내에서 ‘세부 적립 목적’이 약간 상이한 내용으로 적립금 지출이 되었다면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구성원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기구 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산 절차를 거쳐 적립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용 교육시설을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별도과정 개설 가능 여부 질의

질의

- 수익용재산을 다시 교육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 4년제 우리대학에서 일반인을 모집하여 2년 정규과정을 개설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예) 4년제 과정(현재)에 2년제 전문과정을 설치한다면 교원과 수익용기본재산은 현재 기준(100억)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조건을 확보 해야 하는지요?
-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을 별도 설치 할시 필요한 조건도 2번 답과 같은지요?
- 2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검토해야 할 법률적 사안이 나 조건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2. [사립대학제도과]

-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법인 이사회 의 심의 의결과 관할청의 허가사항으로 용도변경시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이하로 감소할 경우 이에 대한 재산보전이 필요합니다.
- 인가된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 과정 개설이 불가합니다.
- 대학의 위치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이나,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수도권 대학 규제에 해당하 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이전하는 곳이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면 검토하여야 합니다.

외국대학 설립 요건 관련

질의

-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교지를 임차한 후 자신들의 비용으로 교사를 짓고 그 외 설립기준 을 충족하여 외국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되는지와 가능하다면 국내대학의 교지 와 교사확보는 임대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6.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지 및 교사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하므 로 교지를 임차하여 대학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대학분교 국내설치 관련

질의

- 미국의 유명대학의 단과대학 분교를 국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모교 측의 지원내용은 확인하였으나 국내에서의 인허가 관련내용이 궁금하여 민원드립니다.

- 한개의 과를 국내에서 교육하여 2년정도 교육받은 후 미국의 대학으로 연계하여 졸업하는 4년제 대학과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나 주 1회정도 강의를 수강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의 하드웨어는 필요한 상황이나 국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만약 정식 인허가 과정을 득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30. [사립대학제도과]

- 외국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외국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국내대학과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시 다년계약입찰 공고

질의

- 사립대학입니다. 매년 청소·경비용역/ 버스용역/ 전산장비관리운영 / 대학홍보 등에 대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매년 되풀이 되다보니 행정적 손실과 업무인수인계, 등에 노하우로 인한 많은 문제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일반회사는 그냥 수의용역으로 계속적으로 진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사립대학준용)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입찰시 1년계약 입찰이 아닌 다년계약용역 입찰(2년~3년)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 관련 조항이 궁금합니다. 또 된다면 몇년까지 가능한지요? (청소경비용역, 버스용역, 전산장비관리)
2. 용역의 1년 계약시 용역금액이 5천만원이 넘을시 금액상 입찰을 하여야 하지만 1년계약서 작성 내용에 “계약만료 1개월전 상호 이의 제기가 없을시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다음년도에 이 조항을 근거로 입찰을 하지 않고 1년 더 수의계약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8. [사립대학제도과]

- 입찰대상 계약건이 그 성격상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일 경우 해당사업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가액 및 예정가액을 결정하여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그 갱신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의

- 사립대학교 행정직원(정규직)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저희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니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사학연금 관리공단도 지급의무가 없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아직 관련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해야하고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2. [사립대학제도과]

- 육아휴직급여(수당)은 해당 법령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안으로 「국민연금법」 적용대상자는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자인 사립대학 직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적립금 사용의 문의

질의

- 사립대학에서 제2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 교과부로부터 대학의 위치이전 승인을 받아 건물



을 지을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에서 정한 건축적립금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5. [사립대학제도과]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3항은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계획이 적립금 목적에 일치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은 당해 학교(법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결정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전임 이사에 의한 이사 선임

질의

- 대학법인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후임이사 선출을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선임이 가능한지, 임기만료된 후임이사 선임을 못하여 결원일 경우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되는지와 파견한다면 결원수에 대한 파견인지 또한 이를 결정하는 직권자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1. 1. [사립대학제도과]

-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 한 채 이사정수 *명중 0명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상 일반적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0명의 이사들만으로도 후임이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이사회 내부 갈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임기 만료된 이사들을 포함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관할청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법인 및 대학설립에 대하여

질의

- 과거에 지방소재로 학교법인만 설립되었고, 대학설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 기존 법인은 지방소재, 법인인가신청시 같이 제출한 대학설립 지역을 지방소재로 신청했을 경우, 이번에 대학설립신청시 대학설립지역을 수도권으로 위치변경을 해도 가능한지요?
- 기존의 법인은 지방소재, 법인인가신청시 같이 제출한 대학설립 지역이 수도권 소재로 신청했을 경우, 대학설립이 수도권에서 가능한지요?
- 과거에 설립된 법인이므로, 각종대학설립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을 안 맞추어도 되는지? 아니면, 맞추어야 되는지?
- 2001년도 이전에 설립(준칙주의전) / 대학(100억), 전문대학(70억), 대학원대학 (40억)

회신 회신일 : 2010. 10. 1. [사립대학제도과]

- 법인설립허가시 대학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법인설립허가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학교법인의 신용장거래시 관할청의 허가여부

질의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의무의 부담에는 대출, 지급보증,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장비 및 소모품을 수입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신용장 거래시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2.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 학교법인의 의무부담 행위는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장 개설 등은 관할청의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용장 개설은 국내은행과 해외은행간에 발생하는 신용행위로 학교법인과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의 설립 관련 질의

질의

- 학교가 생기는 과정에서 1.개편 2.승격승인과 3.설립승인의 다른 점은 각각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6. 29. [사립대학제도과]

- 학교의 설립(개편, 승격)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 제3조, 대학설립운영규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법적 설립요건이나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학교의 종류가 바뀐다는 의미로 개편,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변경을 승격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법적으로는 모두 설립 인가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해외 연구소 설치 관련

질의

- 국내 사립대학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와 처리절차를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3. [사립대학제도과]

- 현재 학교법인이 해외 연구소를 설치 운영에 대한 '금지 또는 허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해외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관할청의 인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연구시설은 대학의 교사시설(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의 일부로 이를 포함한 교사 시설 보유 현황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을 금지(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하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현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분교설립관련

질의

○ 해외분교 설립관련 문의

1. 현지 기업과 교육협력교류 MOU체결을 하고 해외분교 설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 및 준비서류
2. 해외분교 설립과는 별도로 사이버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수출을 할 경우 교과부의 승인이 필요여부와 행정절차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2. 1. [사립대학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중이고(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1. 법제처 심사 중, 우리 부 입법예고 참고), 국내대학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행정절차는 교과부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임

○ 법령 개정내용 : 해외분교 설립시 국내규정(대학설립 4대 기준) 적용 배제 및 현지국가 규정 적용, 분교설립시에는 교과부장관 인가(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대학시설 일부이 전시에는 교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또한, 무분별한 해외진출 억제 및 해외진출 대학의 질 관리 등을 위해 우선 연구소형태의 진출을 허용하고 현지 정착 여부에 따라 캠퍼스형, 분교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BTL에서 재정사업 전환 관련**질의**

○ 사립대학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관련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8. [사립대학제도과]

○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학교재정사업으로 변경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와 관련 학교 재정사업인 공사에 대한 별도의 입찰공고가 필요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민투법을, 학교재정사업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민간투자시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총장의 산학협력단장 겸임

질의

-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1. 27. [산학협력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4항 및 4항에 의거 임면 및 지도·감독의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겸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보호 등에 관한 문의

질의

- 계약학과 관련 문의
 1. 수업운영을 교내가 아닌 산업체 및 국가기관(군부대 등)의 내부에 강의실을 설치하여 수업을 100% 진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와 절차문의
 2. 계약학과에 재학중 중도 포기하여 자퇴(제적 등)하였다가 학과 폐과나 학교운영기간 종료 후 본과로 재입학 가능여부
 3. 2개 이상의 산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학과 운영 중 한 산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 그 소속 학생의 처리절차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4. 7. [산학협력과]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계약학과의 수업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체 및 국가기관(군부대 등)의 내부에 강의실이 설치되어 모든 수업이 진행되어도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은 협약이나 계약 내용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학칙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장소는 임대자 아닌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이어야 합니다.
- 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 11조 제1항은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의 폐지는 경우 재학 중인 학생에 대

한 보호규정으로 자의로 중도 포기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모체학과로의 재입학은 절대 불가합니다.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는 학생의 의사에 관계 없이 퇴직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입학의 취소나 제적 처리의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학과 설치에 따른 학칙 기재사항(운영요령 제4조 제2항 5호)으로 구체적인 보호 내용은 학칙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며 됩니다.

산업체 도산으로 인한 계약학과 유지 여부

질의

- A업체와 경영학과 10명, B업체와 경영학과 10명, C업체와 경영학과 10명 등 총 30명을 경영학과로 계약 운영하는 경우
 1. 정원 30명인 경영학과, 즉 단일학과로 운영 가능여부
 2. 만일 단일학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운영 중 A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A업체 소속 직원 10명을 경영학과 학생으로 유지하여
- 잔여기간의 교육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를 적용하여 대학 정규학과로 설치된 학과로 편입하여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1. 17. [산학협력과]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같고, 산업체 상호간 합반구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학교에서도 설치운영 가능하다는 여러 상호역학 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합반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사항은 1차적으로 대학, 산업체간 등의 합의가 전제적으로 필요합니다.
-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제7조1항 9호에 따라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산업체 도산 및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경우 학적을 유지할 수 있고 교육경비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학과 - 공동계약의 경우 현물부담 관련

질의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와 제 19조에 의하면 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이 가능하고, 산업체 부담금의 경우 산업체에서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제공할 경우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납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A와 B가 서로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시설사용료를 A가 B에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협정을 맺었을 경우 B의 산업체부담금을 현물부담으로 인정하여 납부금액으로 상계시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7. [산학협력과]

- 계약학과의 교육비용부담 주체는 산업체입니다. 만약 A업체와 B업체가 컨소시엄으로 A업체의 교육장소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B업체가 투자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A업체 소속직원과 동일한 학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학과 설치 등에 관한 문의

질의

- 대학원대학교(모집정원 30명, 특수대학원)에서는 산업진흥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2호에 의거, 계약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대학원대학교에서 계약학과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관은 동일학교법인인 대학부속병원이고 모집정원은 석사학위과정 정원의 20명이며, 납부금 총액은 등록금의 50%납부(대학에서 50% 감면 지원시)
- 2. 계약학과 운영시 정원 외 모집임에도 모집인원에 해당하는 학과신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와 현 정원 외 20명 모집시 그 20명에 대한 교원을 별도 충족해야하는지의 여부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0. 25. [산학협력과]

-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1. 학칙변경 → 2. 산업체 계약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학원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모체학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관계법령상 정원관리 등 임의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적으로 학과신설기준에 대해 교원에 대한 별도기준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산업체와

계약사항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와 산업체의 수요가 일치한다 할 지라도 교육경비를 50%이상 산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장학금 및 학비감면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총경비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학과 - 제적 및 재입학 관련 문의

질의

-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 및 재입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8. [산학협력과]

- 계약학과 재입학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적용하여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의2)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실한 입학요건의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 다만, 동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 총정원을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재입학이 구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계약학과의 입법 취지와 일반학과로의 전과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의하신 일반 행정학과 야간 학생으로의 재입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학과 - 개설가능한 유사학과 범위

질의

- 저희 대학에는 학부에는 경상학부(경영학, 회계학, E-비즈니스, 국제통상)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전문대학원내 C-MBA(크리스찬 경영학 석사)과정과, 경영학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부에 기독교 경영학 전공이 개설 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학과 형태의 기독교 경영학 석·박사 과정 또는 경영관련 유사 전공을 개설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1. [산학협력과]

- 계약학과의 전공 개설은 학부/석사/박사 과정별로 기존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부에 기독교경영학 전공의 설치 유무과 관계없이 이미 설치되어 운



영 중인 전문대학원 C-MBA(크리스찬 경영학 석사과정)과 경영학 박사과정을 모체학과로 하여 기독교경영학 석·박사 과정 또는 경영관련 유사 전공의 개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가기관 해당여부

질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도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3.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법인이지만, 대학의 하부기구입니다.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부자 거래 관련 문의

질의

- 정부지원과제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청 과제 등의 사업비(시제품 제작비)로 같은 대학 부설 기관의 산학협력단 공용장비센터를 사용하여 장비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같은 사업의 현물로 잡혀 있는 기자재나 동 사업의 기자재 사용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내부자 거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제나 타 사업의 연구비로 공용장비센터 장비사용료를 처리하는 것도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공용장비센터의 자체 규정으로는 같은 대학 내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어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타 기관에 없는 장비가 본 대학에 있을 경우 장비를 꼭 활용해야하는 상황이나 과제비로는 활용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본 대학의 장비를 활용할 경우 비용부분에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면에서

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장비센터를 이용할 경우 비용 처리할 때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발행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같은 기관인 산학협력단으로 발행이 되며, 같은 예금주인 산학협력단 간의 계좌로 이체가 되는 상황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1. [산학협력과]

- 내부자 거래관련 문의는 동일 산학협력단 내 장비사용거래에 대한 이용료 지불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비용인정여부, 적정이용료산정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업주관 기관의 사업비 집행지침 및 공용장비센터 자체규정 등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동 질의와 같은 거래의 경우 사업장별 내부거래에 해당하며, 산학협력단 전체의 예·결산시에는 당 내부거래가 제거된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장의 겸직범위와 중복 사업 참여

질의

- 타 정부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장의 추가 겸직가능한지요? 본인이 알고 있는 산학협력단장은 2개 대학기관을 겸직하고 있는 보직교수이며, 지식경제부사업의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업단장을 추가로 겸직하기로 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대학의 외부사업 회계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업무의 부정비리와 해태발생이 매우 용이할 수 있는 “1) 산학협력단장(보직교수)이 창업보육센터장, 지식경제부 사업단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2) 다른 부(예: 문화관광부 사업, 농림수산물식품부 사업 등) 사업도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6.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단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대학의 장이 임면합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의 장의 허가로 타사업단장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타사업단의 사업관리지침 등에 단장의 겸직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 계약학과 - 신입생 모집절차 및 운영현황 보고 일정

질의

- 대학에서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참조하여 2011년 1학기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계약학과 학사일정은 일반 신입생과 동일하게 진행하는지? 예 : 2월까지 모집 및 등록, 3월 초 개강 등
- 2. 대학에서 계약학과 운영 현황은 언제 교과부에 보고하는 지? 예 : 일반 신입입생과 함께 3월에 교과부에 보고하는지 등입니다. 또한, 1월 6일자 공문관련 2월 11일(금)까지 대학의 현재 계약학과 설치 운영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셨는데, 2011년 1학기 새롭게 계약학과를 시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등에 대하여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7. [산학협력과]

-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간 계약에 의하여 학과개설 운영 및 기타 몇몇(정원의 운영 등) 되는 특징 외에는 타학과와 동일한 학사일정을 갖게 됩니다. 다만, 계약학과는 불특정 다수학생을 모집하는 게 아닌 계약산업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학과를 운영하므로 기간단축 및 약간의 기간 조정 등은 가능합니다.
- 계약학과 운영현황은 현재 정보공시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교과부에 보고 일자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부에서 공문발송 운영현황을 제출하면 됩니다.

☉ 사립대 산학협력단 관련

질의

-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직업훈련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2. 21.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란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산학협력 연구활동을 체계적

인 지원업무를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 따라서 산업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직업훈련원 설치는 산업협력단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 관련

질의

- 본교에 산학협력단이 있을경우 학교의 일부이전으로 인한 타 지역에 산학설립단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9. 13.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단 추가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분교를 가지는 대학의 경우 「대학설립 운영규정」상 독립된 학교로 인가받은 분교에는 산학협력단을 별도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단 독립된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캠퍼스에는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자료] 「산학협력촉진법」 제25조,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산학협력단 대출가능한지

질의

- 본교(사립대)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을 1년만기 CD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산단에서 급히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여 CD로 예치해 놓은 적립금을 중도 해지해 사용코자 합니다.
- 하지만, 이럴 경우 이자손해가 많아서 예치된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은행측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담보 대출 후 CD 만기 해지 시 상황을 하고자 하나 산학협력단 회계에는 '차입금계정'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8. [산학협력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수입) 및 산학협력단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출은 가능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 임용관련

질의

- 산학협력단장명의 임용을 대학교 총장명의 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용인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2. 22.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임용관련증명서의 대학교 총장명 발행 불가), 대학교총장명으로 임용한 대학직원에 대한 급여는 산학협력단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으나, 대학

에서 근무할 경우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어학원 형태의 학교기업 설립 가능한지

질의

- 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교기업을 설립, 운영하려고 있습니다. 학교기업의 업종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도서관 운영, 영어교재개발 및 판매,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대학교가 학교기업을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영어학원형태의 기업도 설립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2. [산학협력과]

-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업교육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설치하여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을 제공하는 부서로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교육, 기술사업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기업의 설립·운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배 될 시에는 학교기업으로 설립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영어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기업으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일반학생과 산업체 위탁교육생 차이

질의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하려면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반학생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 [산학협력과]

- 일반학생과 산업체 위탁교육생 차이에 관련하여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산업체에 필요한 기



술인력 육성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체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대학과 위탁교육 계약에 의거 별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체와 대학 간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장, 교육과정 및 수업료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체 위탁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계속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국대학 계약학과 현황 자료집 요청

질의

- 현재 전국대학(전문대학 포함)에 개설 되어 있는 “계약학과 현황”에 관하여 자료 또는 자료집이 있으시면 받기를 원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4. [산학협력과]

- 전국대학 계약학과 현황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자료실(또는 이전게시판)에서 ‘전문대학 학생정원 자료’ 또는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 자료 요청

질의

- 자료를 검색하던 중 2009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된 “계약학과 운영 실태분석 및 기업대상 수요조사 연구”를 찾고 있습니다. 게시된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파일 등을 구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3. [산학협력과]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상에는 없으며, 정책연구 관련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프리즘” ‘www.prism.go.kr’에 올려져 있으며, 개인 가입하신 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기업의 학교회계전출금 수입 문의

질의

-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의 학교회계전출금이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3. [산학협력과]

- 학교회계전출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수익금이 아닌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으로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은 산단의 부서이기 때문에 학교기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단의 수입으로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격교육 및 평생교육과정

☎ 교과부 인정 학점은행기관과 교과목 확인 방법

질의

- 학점은행제 때문에 기관을 알아보던 중 00사회원격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한 기관이라고 적어놨는데 확실한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0.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를 총괄하는 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교과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 내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교과부가 인정한 학점은행 기관과 교과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하단 교육훈련기관검색에서 확인가능)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는 www.cb.or.kr 이며, 학습자 콜센터1600-0400으로 문의하시면 학점은행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 불가

질의

- 00전산직업학교라는 곳을 94년 입학해 96년 3월에 수료했습니다. 입학당시 학점인정이 되며 정보처리기사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해서 2년간 오프라인 수강을 수료했고 또한 정보처리기사2급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 지금 와서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에서는 연계된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오프라인 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9.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평가인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기관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기독발명전산직업학교의 1994년~1996년까지의 수료과정은 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학습자께서 이수한 과목은 직업전문학교 자체 교육과정이며, 학점은행제 인정과목이 아닙니다.
- 현재에도 모든 직업전문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해야만 학점인정이 가



능하므로,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때 평가인정기관 및 과목인지를 확인하고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법당시 입학한 경우 평생교육사 취득

질의

- 2005년 대학입학 후 평생교육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인간자원개발론, 기업교육론, 교육사회학을 수강했습니다. 2008년 대학원 석사과정을 시작하여 '평생교육의 이해'를 수강하고 2010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예정입니다. 전공은 모두 교육학입니다.
- 질문1.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구법과 개정법 중 어느 것을 적용받는지요? 박사과정 입학년도기준으로 개정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2. 부족한 과목을 대학원과 학점은행제에서 나누어 수강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대학원 과목 중에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이 없습니다.)
- 질문3. 1997년 백화점 문화센터 담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제출로 평생교육실습 면제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9. [평생학습정책과]

- 답변 1. 구법 당시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에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구법과 개정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학원의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에 개설된 평생교육 관련과목으로만 15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귀하는 15학점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구법 적용 선택 시> 구법의 자격요건에 따라 구법 관련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평생교육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인간자원개발론은 필수과목으로 인정되며, 기업교육론은 선택과목으로 인정되고, 교육사회학은 구법 관련과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당시 이수한 '평생교육의 이해'는 법령교과목과 과목 명칭이 동일한 과목이 없으므로 인정 가능여부는 해당대학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법 적용 선택 시> 개정법의 자격요건에 따라 개정법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과목으로 이수하되, 기존 이수한 구법 관련과목의 학점이 인정됩니다. (각 2학점). 따라서 2급 자격증의 경우 총30학점 중 종전 이수한 구법 관련과목 4과목(8학점)을 인정받고, 나머지 부족한 22학점을 개정법 관련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8과목(각3학점)을 개정법 관련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답변 2. 귀하가 개정법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대학 재학중에 취득한 과목, 대학원 취득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법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구법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하셔야 하며, 구법 적용을 선택할 경우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진입은 불가하며, (구법 적용자의 학점은행제 진입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등록 혹은 대학원 내에서 개설된 구법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법 적용으로 각 2학점으로 산정하여 인정됨).
- 답변 3. 구법 적용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평생교육 관련업무를 전담했을 경우 관련 서류 제출로써 실습면제가 가능합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중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기관이 평생교육시설로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1. 경력증명서 2.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했다는 기관장의 확인서

🌐 국외박사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문의

질의

- 국외박사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외대학 박사는 전공박사로 인정을 할 수 없는데, 단순히 국내박사가 아니라는 것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8.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등급별 현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동법 시행령 별표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종전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분야를 전공한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되었던 부분은 2007학년도 대학원 입학자까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칙 제 4조).
- 종전의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사 1급1호 자격요건은 국내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외국의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관련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 국외에서 평생교육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평생교육사 취득이 가능하도록 법령



을 개정과 소급 개정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와 타 자격제도의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기취득한 학점으로 학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전문대학 졸업 이후 대학에 입학하여 학습을 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취득학점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4.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입니다.
- 이에, 학위취득과정을 극단적으로 속성화하는 문제나 지속적인 학습 없이 학점인정대상학교와 자격증학점으로 바로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학점은행제의 본래 도입취지에 어긋나며, 학위취득에 있어서 질(質)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거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점을 교양/전공 구분 없이 18학점이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명칭

질의

- 현재 대학교에서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교육과정 중 음악관련된 교육을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같은 법인 사업자로 “부설 **예술종합원”이라는 이름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5. [평생 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학교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고 열린 교육사회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이 입법취지입니다.

- 이와 별도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시설 역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므로 학습자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위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타지역에 설치 가능한지

질의

- 저희 대학은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타 지역에 위치한 본교 건물에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여쭙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3.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열린 교육사회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입니다.
-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 또는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충북 내의 공공시설 및 임차시설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원격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시 절차

질의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원격평생교육 인가를 위한 절차 및 설립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1. [평생학습정책과]

- 2011년 2월 21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원격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인가 절차나 설립 방법 및 교육설비 기준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하므로 주소지 소재의 시도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시행령에 절차 및 구비서류가 나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질의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비수익사업으로 보고 있고,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학의 입장에서는 재학생들의 학업에 유용한 강좌를 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법 통칙에 의거하여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외에는 모두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평생 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학교의 부속기구로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질 높은 교육을 개방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이 그 입법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습비는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인세 부과대상 여부는 관할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독학사 시험 동일전공 판단 방법 및 절차

질의

- 전자정보통신과를 다녔는데 독학사 컴퓨터과학과 동일전공에 정보통신전자공학과가 있어 동일전공일거라 생각하고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 하지만 전자정보통신과와 정보통신전자공학과는 동일전공이 성립하지 않아 시험응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동일전공이 안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2. [평생 학습정책과]

- 독학사 시험은 4단계(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로 구성 되어 있으며, 4단계의 시험 중에 동일전공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3단계와 4단계이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응시자격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동일전공인정여부는 동 운영규정(제8조 분과위원회 등)에서 4년제 대학 동일전공교수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인정된 전공에 대하여 '홈페이지-학사정보-동일전공인정 및 학과현황-전공별 동일전공인정학과표'와 응시요강 에서 전공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일전공인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수하신 전공의 과목(교육내용)이 기인정된 전공의 과목과 유사한지 정도가 아니라, 응시하시고자 하는 독학사시험의 시험과목을 60%이상 충족할 때에 동일전공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민원인의 경우 이수한 전공에 대한 성적증명서와 교수내용으로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컴퓨터과학 전공 3단계 시험에 대한 동일인정심의 결과 불인정 된 것으로, 독학사 시험으로 컴퓨터과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시고자 한다면 동일 전공 제한이 없는 2단계부터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의 학점은행제 통한 학위 연계 시 면허증 소지해야하는지

질의

-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보건계열이기에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1. [평생 학습정책과]

- 2006년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연간 약2천3백명) 하거나 또는 일반 4년제 대학에 편입학(연간 2천명)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편입학의 기회가 연간 졸업자의 약 23%에 머무는 등으로 저조하였는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문대학 졸업 후 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물론, 매년 배출되는 1만9천여명의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도 이를 학사학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보건·의료분야의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학점은행제 수업 운영 규정

질의

- 사이버 학점은행제 수업 운영에 대한 교과부 지침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9.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도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434호)」에 의거한 학위 제도이며,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의 학사관리 지침 중 출석관리와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인정기간, 출석인정 방법 및 결석처리에 관하여 학칙 등 학사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하며, 재학생의 출석관련 학점이수기준은 매학기 과목당 출석산정기준의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격교육기관의 시험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험은 동시시험을 원칙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본인 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IP,공인인증 등)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로 정해진 학위요건을 충족하면 학점은행제의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 실습을 인한 경우 추가 실습으로 평생교육사 취득 가능한지, 실습면제 등

질의

- 재학당시 ‘사회교육전문요원’ 과정을 이수하던 중 현장실습을 하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자격증취득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과거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과거 재학당시 이수한 관련 학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규칙에 따르면 저는 10개 과목 28학점을 이수(3학점 8과목, 2학점 2과목)(필수과목으로 인정)한 것으로 되는데, 추가로 더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현재도 과거 이수학점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실습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12. [평생학습정책과]

- 종전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목Ⅱ)에 해당되는 과목은 평생교육사 취득과 관련된 필수과목(과목Ⅰ)으로 인정이 됩니다. 10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구)평생교육법 상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법의 자격요건에 따라 실습을 완료해야 하며 졸업 이후에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 구법 적용자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자는 실습이 면제가 되는데, 대학 내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권한은 각 대학 측에 있으므로, 실습면제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재직)증명서와 평생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했다는 기관장의 확인서를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학 측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면제 여부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대학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구)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정 2000.3.31)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의 평생교육사로의 자격증 갱신 발급**질의**

-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제 4891호)를 당시 교육부장관명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명칭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격증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의 전면개정(1999.8.31)에 따라 사회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환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전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은 각 양성대학에서 문교부(現 교육과학기술부)에 자격발급을 신청하여, 문교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나, 현재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각



대학에 그 권한이 위임이 되어 해당 대학 총장 명의 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관련 기록을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했던 대학 측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발급을 해야 하므로, 자격증 전환발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질의

- 2008년도 ‘사회복지사양성과정 12주과정교육’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이 무엇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3.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사, 분석, 기획, 설계, 운영, 지원, 교수, 평가, 다양한 학습주체에 대한 변화촉진,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수행,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킹을 촉진시키고, 평생학습 성과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에 따라 주어지는 사회복지사와는 자격제도 운영 목적과 취지, 교육과정 등이 크게 다르므로,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분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등급별 자격요건(별표)에 따라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별표1)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시간제 등록인원 기준이 총입학 정원의 100분의 10인지

질의

-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는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100분의 10의 범위가 개별학과별 모집정원의 100분의 10인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이라면 시간제등록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의 경우 모집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만 초과하지만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29. [평생학습정책과]

-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시간제등록제 선발)의 총입학정원은 당해 대학교의 전체 입학정원이며, 학과별 모집정원은 비례율제 등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과별로 선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총입학정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 이에, 시간제등록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의 경우도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학칙에 따라 선발하여야 합니다.

시간제 학생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

- 시간제 학생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1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로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간제를 통해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다수의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에 자격증 발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정하여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운영토록 대학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은 과목을 수강했던 모든 대학에서 가능하며 또한 모든 대학에서 거부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우선순위 1. 수강과목이 많은 대학 2. 수강과목이 동수일 경우 졸업한 대학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시간제를 통해 5과목을 기 이수였으며, 동 대학에서 나머지 일부과목을 이수하고, 타 대학에서 일부과목을 이수할 계획인 경우이므로 현재 재학하시는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영어 교육 기업의 평생교육사 채용은 의무인가요?

질의

- 온라인으로 일반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만 하나요? 평생교육사가 없는 상황에서 채용시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지, 나중에 채용해도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2. 2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26조에는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의무조항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록, 인가 등의 전제조건으로 동 조건의 미비시에 신고, 등록, 인가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 이행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교육기간 졸업자의 학점은행제 등록시 졸업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 한국국적을 가진 중국여성인데 시간제 수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학사를 준비하려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졸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증 등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졸업한지가 오래 되어서 학교가 없어서 서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 안할 방법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9. 3. [평생학습정책과]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 제9항에 의거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점은행제 등록이 가능하므로, 12년 학제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성적증명서 1통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박사학위자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문의

질의

- 외국(독일)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외국학위로 불가능하다면 제가 92-97년에 학부이수과목에서 두-세과목이 부족하여 자격증을 따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7. 9. [평생학습정책과]

1. (구)평생교육법의 자격요건 중 1급 1호에 관한 규정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대학원에서의 박사학위는 인정이 가능하나, 외국 대학(원)에서의 학위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평생교육법에 그와 관련된 근거가 없으므로 외국에서의 학위취득으로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합니다.
2. 귀하께서 '92년~'97년 당시 이수하신 과목은 평생교육사 이전 자격증인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간에 이수한 과목 중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신 후, 나머지 부족한 과목은 대학(원) 내 개설된 구법 관련과목으로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할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등록제 가능). 학점은행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는 개정법 적용자에 해당되므로, 구법 적용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과목 이수 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평생교육진흥원 내 평생교육정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정책본부 홈페이지(평생교육정보망, www.lll.or.kr) 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너 내 탑재자료 '[FAQ]평생교육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이 시간제 등록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 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에 근거하고 있는 '시간제 등록제'를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여 모집요강에 적시하여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 시간제등록제는 자격취득, 시험응시 등의 목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편입생)이 졸업학점인정이 아닌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만을 목적으로 일부 과목을 재학 중인 학교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시간제 등록생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이중학적과 시간제등록 학생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2.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 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제53조제9항에 의거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격응시를 위한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에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 또한, 학위를 취득한 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타전공학위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므로, 대학 재적(재학, 휴학)중에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시간제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추후 타전공 학위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불가능함을 학습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의하신 이중학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학 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전문대학 명칭 사용 가능한지

질의

- 일반 직업전문학교나,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학점은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학교 등에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0. [평생학습정책과]

-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하여 설립·설치되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시설이며,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학교설립 및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생교육 실습할 수 있는 시설 문의

질의

-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실습 3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평생교육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설기관의 평생교육 센터에서 해도 되나요? 농협안의 문화센터의 평생교육원이나, 홈플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습을 해도 인정을 해주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3. [평생학습정책과]

- 농협의 문화센터나, 홈플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보여지며, 평생교육시설로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수행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안내를 위해 “평생교육 현장실습 매뉴얼”을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기관(대학, 학점은행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으며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귀하에게 가장 적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학과) 지도교수님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배포된 “평생교육 현장실습 매뉴얼”은 평생교육정보망(www.lll.or.kr)의 우측하단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학점인정 신청의 불편함

질의

- 학점 등록을 위하여 본인이 성적증명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가까운 교육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비를 내거나 본원(아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가서 하거나 인터넷에서 본인신청하기를 하는데, 성적은 본인이 사전에 발급받아 진흥원으로 우송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꼭 이렇게 복잡



한 절차를 요구해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7. 30. [평생학습정책과]

-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본원 및 16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기 힘든 학점은행제 원거리 학습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9년 7월부터 온라인학점인정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하였으며, 2010년 2분기부터는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학점원으로 확대하여 접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의 미비사항 개선 및 안정화 노력을 하여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평생교육관련업무에 농촌지도사의 교육인력 업무 내지 기타 농촌지도업무가 포함되는지

질의

1. 평생교육기관에 농촌진흥청이나 지방농업기술센터가 속하는지요?
2.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농촌지도사의 교육인력 업무, 기타 농촌지도업무가 포함되는지
3. 평생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을 지방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교육인력업무로 대체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11. 2. 8. [평생학습정책과]

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제 2조 제2항]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협의적으로는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광의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을 모두 포괄합니다.
 - 일반시민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위 법령 상 근거하여 다 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농촌진

홍청의 경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 관련업무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업무 및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업무와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별도로 제시해주신 평생교육 관련 근거규정 중 농업기술센터는 1)과 2)에 근거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농촌진흥기구에 해당되며, 농촌지도사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 농촌지도 업무, 교육훈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사가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 중에서도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경우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 필요)

※ 근거 자료 중 3)과 4)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점 등의 내용은 농촌지도사 이외에도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이 농촌지도사에만 한정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의 면제 또는 근무지 실습은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습 면제 또는 근무지 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으로 실습과목 담당교수의 확인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기관측으로의 경력증명서 및 전담경력확인서 제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교육관련 업무 수행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단,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의 본인의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평생학습 실습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실습의 면제 조건

질의

-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과목을 이수하였고(30학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모두 만족) 실습은 하지 않고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중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 제가 이대로 계속 근무하면 2012년에 학교교원 3년 근무가 되는데 구법령에 의해 다른 조건 없이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별도의 실습을 받아야만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2. [평생 학습정책과]

- 기재하신 자격요건은 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1항 관련의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별 자격요건 2급 7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을 3주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이 면제 됩니다. 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실습면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학교의 평생교육 사업 (방과후 학교 사업, 지참교 사업, 교복투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3개월 이상(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실습면제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질의

- '09학번으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평생교육실습이 실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실습이라는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2. [평생 학습정책과]

- 2009년 대학원 입학자의 경우 개정(2007.12월)된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에 적용을 받아,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필수과목 중 하나인 '평생교육실습' 과목으로 이수하여 3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2009년도 이후 대학(원)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며, 귀하께서는 평생교육실습을 반드시 과목으로 이수하셔야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1급

질의

- 학부 졸업시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하였고, 2010년 8월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학위취득시 2급에서 1급으로 승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30.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 제도로 평생교육법 제24조 내지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동 자격제도 안내를 위해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www.lll.or.kr)의 우측 하단부분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사에 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 취득 자격 및 자격증 신청방법

질의

1. 평생교육사 1급 대상자 해당 여부 (2006년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0년 8월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
2. 1급 자격증 신청은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서류 등)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10. 4. [평생학습정책과]

- 답변 1 : 2007년 이전 대학원(박사과정) 입학자가 평생교육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평생교육법 개정 이전인 (구)평생교육법의 자격요건에 따라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때, 평생교육 관련전공은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국제평생교육 전공이 해당되며, 이들 전공과 명칭이 다른 경우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 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입증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답변 2 : 구법 적용자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신청 기관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이며, 박사학위 증명서와 그 밖에 대학(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박사학위 논문 등 평생교육 관련 전공여부를 판단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평생교육 관련 전공 여부를 판단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학 내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시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므로, 자격증 발급기관인 해당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전공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관련 평생교육법 개정내용에 관한 문의

질의

-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 중에서, 평생교육사 관련 조항이 개정된 사례를 알아보고 싶은데 지난 8월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주로 학습계좌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평생교육사에 관한 부분은 없는듯한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언제인지,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1.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사에 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및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에 규정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제17조(직무범위), 제18조(이수과정), 제19조(연수),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2조(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법시행규칙상에는 제5조(평생교육 관련과목),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제7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등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등급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평생교육법의 최근개정은 2008.2.29 및 2009.5.8에 이루어졌으며 평생교육법시행령의 최근개정은 2008.2.29 및 2009.8.11의 제24조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은 2008.3.4, 2008.9.29에 이루어졌습니다.
- 평생교육사 관련 개정사항은 “법률정보시스템”에서 개정일자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평생교육사 관련 상세내용은 “평생교육정보망”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배너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및 자격증 대여 벌칙 규정

질의

- 평생교육원을 허가 받을 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그만둔 후 저의 자격증이 다른 직원의 평생교육사자격증으로 바뀌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리고 매달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9.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동 교육원을 그만 둔 후 다른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나 자격기본법의 아래 조항에 따르면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 ①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0조(벌칙) 규정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 받은 자 따라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와 관련해서 평생교육법 상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관련 법령인 자격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자격 취소 등도 가능한 불법적 행위입니다.



☉ 평생교육사 역할 및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질의

-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은 뭐고 배치가 의무사항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의 업무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및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과 생애능력개발 상담 또는 교수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대체과목 가능한지

질의

-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노인교육개론 대신 노인교육론을 수강하여도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8.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7.12.14)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명칭이 일부 변경된 바 있습니다. '07년도 입학자하여 재학 중일 경우 평생교육법 개정 이전인 (구)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구법 관련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노인교육개론은 구법 관련과목이며,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사과목인정에 대한 판단권한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학 측에 있으며,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는 대학에서 유사과목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자격증 발급을 재학 중인 대학에서 받게 될 경우, 구법 관련과목의 유사과목인정에 대한 판단은 재학 대학 측에서 이루어지므로, 대학 내 자격증 발급 부서(혹은 관련 학과)로 노인교육론 이수 시 노인교육개론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학(자격증 발급 부서) 측에서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과목을 이수한 해당 학과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교과과정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발급받아 자격증 발급 부서 측으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별도양식 없음)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과 향후 진로

질의

- 평생교육사의 자격 취득 방법과 진로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1.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24조 다음 어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여기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평생교육법 제26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채용 배치토록 의무화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은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 1에,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안내 자료

질의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급수별로 자격이 다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1.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1, 2, 3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급수별로 요구하는 자격이 각각 다릅니다. 관련 내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호를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 제도로 평생교육법 제24조 내지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동 자격제도 안내를 위해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www.lll.or.kr)의 우측 하단부분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사에 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게시물중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학습자 콜센터(국번없이 160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결격사유 발견에 따른 조치

질의

- 우리학교에서는 자격증발급대상자로 결정, 해당자에게 자격증 수령을 고지하였으나, 해당자가 아직 자격증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자가 결격사유가 있음을 지금 알았으며 자격증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5. [평생학습정책과]

- (구)평생교육법 등급별 자격요건 2급 1호는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생의 경우 대학원 내에서 개설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 7과목으로 이수했을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학부의 수업과 병행하여 이수했을 경우 동법 등급별 자격요건 2급 3호에 의거하여 자격증 발급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자격증 발급에 대한 권한은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 제77조에 의거 각 대학 측으로 자격증 발급 권한이 위임된 바 자격증

발급 및 취소,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부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취득자격

질의

- 간호조무사 자격과 대학병원 근무 3년 10월 초등학교 1급자격과 19년 근무교육대학원 석사와 중등2급 자격미술심리치료학회의 연수(600시간) 등으로 평생교육사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0. [평생학습정책과]

-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취득자격은 관련과목의 등급별 필요학점 이수(평생교육 실습 포함)이며,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정확치 않으나 관련과목의 필요학점 이수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 제도로 평생교육법 제24조 내지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는 동 자격제도 안내를 위해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www.lll.or.kr)의 우측 하단부분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사에 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중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콜센터(국번 없이 160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등급 :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 나. 지정양성기관
 - 다. 학점은행기관



- 3.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4.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실습과목 이수 못한 경우 자격증 취득방법

질의

- 4학년2학기 평생교육실습이 평생교육사자격필수과목이되는 09학번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실습신청을 못하여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평생교육사자격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버린 겁니다.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1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미이수한 평생교육 현장실습 과목은 실습과목이 개설된 대학에 등록시기, 등록금, 실습기관 등에 관한 상세한 상담 후에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소요기간 단축 요청

질의

- 이번 2월이면 3학년 편입 자격인 70학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이버 대학이 3월초까지 학생을 뽑는 것을 감안한다면 2월에 학점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학점인정을 4월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월에 편입을 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2월에 학점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3. 8.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운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정에 의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각종 접수를 정해진 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학점인정 신청 기간은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이며, 2월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을 위한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 심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 또한 1분기 학점인정신청자의 학점인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점원 마다의 서류 확인과 학점인정 심사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부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자의 편리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점인정에 필요한 서류 접수 등이 온라인화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위수여시 계절학기 학점을 인정할 수 없는지

질의

-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사취득하기 위해 141학점을 이수하였는데 전 필한 과목을 듣지 못해서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절학기까지 수업 들은 것을 인정해준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9. [평생 학습정책과]

-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고시」에 의거 원격교육을 통한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도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 계절학기는 재학생의 본학기 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수업으로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규학기를 통한 시간제수업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질의



- 독학사 학위확인서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한데 전화가 불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발급 받는 경로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 28. [평생학습정책과]

- 독학학위제의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발급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인터넷 증명발급” 배너나 “http://www.nile.certpia.com” 로 이동하셔서 가입 후 학교명(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를 검색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발급신청독학학위검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각종서식→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방문발급신청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 내방하셔서 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위 취득전 이수한 시간제 등록 타전공 과목 불인정 이유

질의

- 현 학점은행제도가 졸업자들의 타 전공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 이수 중 타 전공 학위를 수여받기 전의 이수한 학점들은 불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뭔가요?

회신

2010. 10. 27.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준에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 취득 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학위 취득 전에 이수한 시간제 등록 과목은 타 전공 학위수여 과정 등록을 위한 조건 즉, 학위취득자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수한 과목이므로 타 전공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전공 학위수여라는 제도가 기준에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들이 또 다른 전공의 학위취득

을 위해 이수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학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위 취득 전에 이수한 과목을 타 전공 학위수여 과정에서 인정받게 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요구

질의

- 아동가족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공변경신청 과정에서 아동복지관련 부분 과목만 선택을 하고 사회복지과목을 누락시켜 아동가족학위만 취득했습니다. 인정받지 않은 사회복지관련 과목에 대한 학점을 추가로 인정받고자 학점은행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문의한 결과 학위취득일 기준으로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점이 인정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신

2011. 4. 19.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학위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학위가 자동으로 수여되지는 않습니다. 학습자의 학습계획에 따라 학위요건 충족 이후에도 추가로 학점을 수강하여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학위수여시기 결정권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학위수여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학위신청이라는 추가절차가 있습니다. 민원인 또한 본인이 직접 학위수여 시기를 결정하여 정상적으로 가정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에 학위수여에는 문제가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 취득 제도로, 학위 취득 후 수여 받은 학위를 위한 추가 학점인정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민원인과 같은 사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위 취득자의 성적증명서에 학위취득 시의 학점, 평점 평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 학습경험을 누가 기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관련 규정 개정 및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점신청에 관하여

질의



- 2011년 4.29일 학습자등록마감에 기준하여 학점신청도 함께인데 학습자등록은 4월 29까지 한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학점 등록신청은 공부를 하는 각 학교나 평생교육원의 커리가 2~3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1. 5. 12.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이며, 학점 인정신청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함께 학점원 마다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재 학점인정신청기간동안 접수된 학점처리를 위하여 두 달 동안의 처리 기간을 두고 있으며, 학점원 마다의 서류 확인 및 학점인정 심사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 학점은행제 전문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학점은행제 학점원이 다양한 만큼 교육훈련기관의 성격도 상이하며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도 홈페이지 안내 및 학습설계상담시 학점인정신청기간에 유념하여 학습자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부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자의 편리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점인정에 필요한 서류 접수 등이 온라인화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점은행 해양학부 항해학전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

질의

- 학점은행을 이용하여 항해학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하는데 해양학부 항해학전공에서는 전공 필수 과목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교육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또한 전공 선택과목도 일부분만 교육이 되고 있었으며 독학사 시험에도 전공과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해양수산계 고교 및 대학이 몇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등록이 안되어 있어 저와 같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2011. 4. 25. [평생학습정책과]

- 평가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이에,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학전공과 관련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평가인정을 신청하면 학점은행제 전문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을 통한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이수 가능하게 됩니다.
- 또한, 학점은행제의 학위가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교)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며,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에서 발급받은 교육 증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항해학전공과 관련된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점은행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명의 및 의미

질의

- 야간 전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 후 편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00대학에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시 학위수여를 교과부 장관명의로 하는 대학도 있고 총장 명의로 하는 대학도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총장 명의로 학위 수여를 발급한다면 그것은 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 수수료종의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7. 1.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 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는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1. 학사학위 : 84학점 이상
2. 전문학사학위 : 48학점(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
3. 타전공 학습자의 경우도 가능해짐 - 학사학위 :48학점이상 - 전문학사학위 : 36학점(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42학점) 이상 더 자세한 사항은 학점 인정 등에 대한 법률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콜센터(1600-0400)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인증기관 확인 방법

질의

-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원할 때 여러 업체 중 어느 업체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업체인지 학생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평생교육시설에서 받으면 되나요?

회신

2011. 1. 11.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에 의거 교육청에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모든 평생교육시설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검색은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지역별, 전공별, 기관별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미신청으로 인한 추가 이수 개선 요청

질의

- 2009년 9월 이전에 학습자 등록 후 27학점을 이수하였으나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다시

20여 학점을 더 이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미리 공지가 된 부분이라고 하나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었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회신 2010. 10. 22. [평생 학습정책과]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른 전공 이수제도의 학위수여 요건(『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개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 활성화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2008년 9월 18일 공포되었으며, 학습자들의 혼란을 막고자 1년 가까이 유예 기간을 두고 2009년 9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또한 2009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8월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학습자에게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별 학점인정신청을 시행 하였습니다.
- 이는 2009년 8월에 학점은행제 전문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습자 상담 시 안내가 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 31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최소 1학점 이상)을 해야만, 2011년 8월 31일까지 35학점으로 학위수여가 가능하며, 2009년 8월 31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타전공학위 요건으로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은 법률 개정에 있어 종전 기준의 무기한 적용을 막고, 구규정과 신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으로부터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과 조치입니다.

학점인정 자격증에 해당되는지

질의

- 학점인정 자격증 중에 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주관) 자격증은 학점인정대상에 없는 거 같아 승인요청 합니다. 세무회계 자격증도 다른 관련 자격증과 같이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무회계학 이론에 중점을 둔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자격증이 승인절차가 이루어져 학점인정대상 자격증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신 2010. 12. 13. [평생 학습정책과]

- 현재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 자격의 경우 노동부 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자격의 수준 및 직



무범위, 검정내용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순수 민간자격의 경우 운영의 질적 수월성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학점은행제에서 도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2010년 9월 현재, 학점인정 가능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367개, 개별법의 국가자격 142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61개로 총 570개의 자격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14차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제14차 자격학점인정기준」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회계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확인하시어, 학점은행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해외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가능한지

질의

1. 외국대학에서 인증하는 경영자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진행할 경우 국내대학과의 공동학위 체결 혹은 외국대학 분교설립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 상기 협약 내용에 따라 경영자 프로그램을 수료 후, 유러피안 대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학위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을 경우에 그 학위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는지요?

회신

2011. 6. 27.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은 학점은행제를 제외하고는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1.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FTA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동 양해각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이라야 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불가합니다.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1급 정교사 자격취득 관련

질의

-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정교사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1. 4. 15. [교원정책과]

-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첨부로 해당 교육청에서 정교사 1급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상담교사 자격증 문의

질의

- 유치원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 근무하기 전 사립유치원 근무경력이 7년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상담교육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상담교사 위탁대학) 학점 이수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 공부중에 있습니다. 이번달로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는데, 졸업시점에 현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의 경력(사립유치원 7년)만으로도 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9. [교원정책과]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질문

질의



-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저희 대학교가 c등급을 받았는데, 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체육교육과는 b등급을 받고 그 4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재평가에서 c 등급을 받으면 입학정원의 20%가 감축된다는데, 이번에 실시된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대학교 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체육교육과도 정원이 감축되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8. [교원정책과]

- 금년도 실시한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사범대학의 경우 내년도에 재평가를 거쳐 재평가 결과에서도 C등급 이하로 판정될 경우에는 사범대학 총정원의 20%를 감축하게 됩니다. 다만, 학과별 정원감축의 규모는 총 20% 감축규모 내에서 대학에서 학과별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양성과정 단위(사범대학 수준)에서 정원감축 조치를 내리고, 대학에서는 그 감축분을 학과별로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2급정교사 자격증 재교부

질의

- 1970년 문리과 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시 받은 '2급 정교사 국어 자격증'의 복사본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20. [교원정책과]

- 2급 정교사 자격증의 재발급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에 의거하여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출신대학 민원실에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재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급정교사자격취득시 교육실습 면제 관련

질의

- 현재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1년 경력이 있는데 2급 정교사 자격취득시 교육실습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교육실습은 현직 전임교원(기간제교사 제외)의 경우도 면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전문성신장 항목입니다. 현행법규상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실습면제대상이 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개명으로 인한 교사자격증 재발급

질의

- 교사가 개명을 한 경우 개명한 이름으로 교사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교원정책과]

- 개명으로 인한 교사자격증 재발급은 성명이 변경된 경우 개명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 초본이나 주민등록증초본을 지참하여 졸업하신 대학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직 교원이라면 교육청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 의사에 의한 대학원진학 후 부전공 자격취득시 교육실습 면제여부

질의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정2급)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교육봉사활동 60시간과 교육현장실습(교생실습)을 꼭 이수해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교사로 재직중인 저는 실습을 나갈 수도 없고 현직교사가 실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6. [교원정책과]

- 현직교사인 경우 부전공 연수의 일환으로 교육청 추천 교육대학원에 입학인 경우,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이 면제되지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입학한 경우는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질의

-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을 보려하는데 무시험검정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졸업 당시 해당학과에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
- 당시 해당학과에서 누구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 확인
- 당시 교사자격증 무시험검정 기준과 합격기준(관련 법령 및 고시 등) 충족 여부 확인
- 충족시 현재 대학의 장이 교사자격증을 부여
- NEIS에 입력

☎ 교사자격증 취득 인정이 되는지

질의

- 전문대 간호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당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했고 졸업후 면허증을 취득했는데 교사자격증 취득이 인정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교원자격검정을 수수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졸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간호사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수과목 및 학점 등의 여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반드시 해당 교원양성기관을 졸업 전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생실습 면제관련

질의

-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거쳐 영양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2007년 9월 1일자로 정규영양교사로 발령아 재직중일경우 교생실습 면제가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8. 11. [교원정책과]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실습 면제 가능합니다.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 선택사항이며, 대학에서 면제 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생실습 가능한 학교

질의

-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생실습을 해야 하는데 교생실습이 가능한 학교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교원정책과]

- 교생실습이 가능한 학교는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학습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타교과목의 교원자격 취득시 교생실습

질의



- 현직교사가 타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때 반드시 교생실습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1. [교원정책과]

- 교대사대에 비해 자격증 배출인원이 과포화된 전국 150여개 교육대학원에 대한 정책기조는 현직교원의 재교육기능으로 점차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론적으로 교육실습의 세부적인 사항은 양성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학칙(모집요강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원 자격증취득시 전적대학 이수 학점의 인정

질의

- 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는데 학사편입을 통해 들어간 학교에서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3. [교원정책과]

- 전적대학 이수 학점의 인정범위는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하며, 교직과목은 전체인정가능하고 필수전공은 별도로 추가 이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 등 반드시 학칙으로 명시하여야 인정가능 합니다.

☉ 교원자격 취득 중 교생실습에 관한 문의

질의

- 현재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05년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8년 8월 졸업(조기 졸업)을 하면서 중등 2정 일반사회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08학번 3학년으로 중등특수교육과에 편입하여 공부하고 있고 2012년 2월에 중등특수(국어) 중등2정을 취득합니다. 교육과정상 예전 교원자격검정령을 적용받아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 대상자입니다. 편입생이고 이미 교직이수를 하여 교직과목 14학점은 편입학점시 인정을 받았는데, 교생실습은 특수교육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생실습은 특정 교과목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데 다시 실습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1. [교원정책과]

-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1) 교육실습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학점(4주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 1.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2008.1.8)의 부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가능함 단,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의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산학겸임교사의 경우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상담기관(상담-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교원 ⇒ 교직생활 ⇒ 교원양성 ⇒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참고 또는 해당 대학으로 문의



☉ 교원자격 취득시 표시과목과 다른 교육실습이수

질의

- 저는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재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교육대학원(유아교육전공)에 입학하여 재학 중입니다.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학부(아동복지)학점으로 학점인정은 받았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관계로 교직과목 수강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격종별이 다를 경우 교육실습을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입학 당시 자격종별이 다르면 2008년 입학생부터 교육실습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 문의하니 현직 교원으로 근무중이기 때문에 교육실습 면제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7. [교원정책과]

- 교육실습은 현직교원이라도 취득하고자하는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가 불가능 합니다. 단, 2008학년 교육실습 대상대상자 부터 적용 여부는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으므로 대학원 행정실에 다시 한번 정확한 문의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질의

- 제가 1991년도에 간호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직이수를 하였으나 교원자격증을 받지 않은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자격증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결격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받지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7. [교원정책과]

- 교직이수를 다 하셨다면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원자격증 재발급은 해당 대학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원의 신분이면 해당 교육청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분 실시 교원자격증 재발급 관련

질의

- 교원자격증을 잊어버려서요.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직 교원은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 등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이 재교부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의 취득 요건중 최소전공점수

질의

- 교원자격증의 취득 요건 중 최소 전공점수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6. [교원정책과]

- 2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유했더라도 전공 관련학과가 아니면 자격종별이 다른 교사(중등에서 유아 및 초등)자격을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과나 학점의 인정여부는 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실무편람 서식15-학점인정증명을 받아 입학가능여부를 해당 대학원에 상담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정정에 대해

질의

- 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해서 주전공 외에 수학교육 그리고 특수교육을 복수전공 하였습니다. (주전공 : 기계금속, 복수전공 : 특수교육, 수학교육) 이렇게 해서 교원자격증 3개 취득하



게 되었습니다. 이중 특수교육 표시과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졸업예정시 특수교육 표시과목을 선택할 때 특수(기계금속)과 특수(수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수(기계금속)을 선택했습니다. 교원자격재교부 및 정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표시과목이 종전과 달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 과학(물리) → 공동과학, 물리) 저 같은 경우는 특수(기계금속)을 발급받은 상황에서 특수(기계금속) 자격증을 특수(수학)으로 정정하고 싶은데요. 졸업당시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고 판단의 실수로 특수(기계금속)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 선택한 것이므로 정정할 수 없는 것인지 정정신청을 통해 표시과목을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5.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소지하신 둘 이상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각각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졸업한 자에 대하여서도 추가로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졸업한 대학의 교원자격 업무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하여 무시험검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자격검정에서 성적의 기준이 없는지

질의

- 무자격검정에서 성적의 기준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7. [교원정책과]

- 7호기준 대상자는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에 의거 양성기관별로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등을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학원 부전공 자격관련

질의

- 저는 중등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금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더 필요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육을 전공하고 모든 관련 학점을 이수한 후, 졸업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등 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를 부전공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0. [교원정책과]

- 교사자격증에 부전공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중등학교 정교사(표시과목)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표시과목)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자격증 중에 표시과목을 표기하는 자격증은 중등정교사와 특수학교 정교사만 해당되며,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인 유치원, 초등학교, 비교과교사(보건, 사서, 상담, 영양)의 경우는 부전공을 표시할 수 있는 자격증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사서교사 자격증은 표시과목이 없는 비교과교사 자격증으로 부전공표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직교사 교육대학원 부전공 자격취득시 교생실습

질의

- 현직 교사입니다. 금년도(2010년)에 부전공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육대학원 1학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 입학한 현직교사도 자기 전공과 다른 전공(부전공)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생실습을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직교사가 본인의 전공이 아닌 경우 교생실습을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1. [교원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자격증 취득시 교육실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대학에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면제여부를 대학에서 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0학년도부터는 현직교원중 시도교육청에서 전과를 위해 부전공연수를 대학에 위탁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생 실습에 따른 행정처리는 대



학 및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아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 입학시 관련 학과 학점인정 문의

질의

-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 입학시 이전까지는 전공이 50학점 이상이라 하여 교육대학원에서 24학점을 이수하고 학부에서 26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학기에 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해 몇몇 교육대학원에 문의를 해보니 학부 관련전공 26학점이상이면 입학조건이 된다는 대학원과 38학점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편람상에는 38학점으로 되어 있으나 공시가 아직 되지 않아 이러한 혼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8학점인지 26학점인지 조속히 가르쳐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0. 10. 18.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취득학점은 전공50, 교직22학점입니다. 학부에서의 전공관련학점의 인정여부는 개별 대학의 장이 최종판단하도록 되어있는 부분과 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대학원이 전공12, 교직12, 논문 6학점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입학에 관한 건

질의

- 현재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종교교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추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윤리과로 교직이수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6.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문의하여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인정학점 등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학원 중등2급 정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질의

- 학점은행제로 체육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중등2급 정교사(체육)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시 전공 6과목 18학점을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로 이수하였고 그 중에 3과목 9학점은 기본이수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2학점은 전공 관련 자격증으로 경기지도자 2급으로 30학점, 생활체육지도자 3급으로 12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학위 취득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기본이수과목을 추가로 3과목(체육측정평가, 운동역학, 체육교육원리)를 보충과목으로 이수한 상태입니다. 전공주임교수님은 전공 기본이수과목을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시에 전공 관련 자격증에 포함되어 이수하였기 때문에 보충과목으로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본이수과목을 3과목 추가로 수강하였습니다. 교육대학원을 현재 3학기 마친 상태인데 5학기 때 중등2급 정교사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때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전공학점 중에 전공 관련 자격증으로 취득한 42학점을 중등2급 정교사자격증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6. [교원정책과]

- 먼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만 조건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냥 학점만 누적한 경우는 인정불가입니다. 둘째, 인정이 될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점 전체를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한 학점중 대학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일부만(25~30학점 이내)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시험 검정시 학점인정에 관한 것은 해당 대학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해당 대학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학원 중등특수교육 이수 문의

질의

- 저는 초등특수교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등특수교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영어과에서 18학점인가를 듣고 학점을 이수 한후 중등특수교육 교육대학원에 지원하면 중등특수교사자격증이 나온다는 이



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4. [교원정책과]

- 우리부 홈페이지 교원-교직생활-교원양성-2011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편람을 보시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중등특수교육 교육대학원을 지원하였을 경우의 자격증 취득 가능여부는 가시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대학원 관련

질의

-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직 실무라는 교직 소양 과목은윤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철학 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윤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철학 전공자만 반드시 들으면 되는 건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9. 16. [교원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2009-37(09.9.23)에 의하여 교직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직 소양 4학점 이상(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교직실무 2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현장실습 2학점 이상, 봉사활동 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철학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윤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의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이수 관련

질의

- 저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음악) 자격증을 갖고 있고 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되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거쳐 현재 정식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에 관심을 갖고 <부전공 이수>에 대해 알아보니 현직 중등교사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중등학교 2급 정교사도 소지하고 있어서 혹시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이수 후 음악 정교사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1. [교원정책과]

- 부전공 표시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표시과목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서교사는 비교과교사 자격증으로 표시과목이 없어 부전공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직교사의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 자격증 취득

질의

- 정보·컴퓨터 1정 현직 교사입니다.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수학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측에서 올해 법이 개정되어 선수과목이 38단위 이상이 되지 않아 입학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과부 담당자께서 현직교사에 대해서는 선수과목 이수 시간이 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이 14단위 이상 이수하면 되고, 현직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36~38단위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직교원이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현재 표시교과가 아닌 수학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선수과목 이수 시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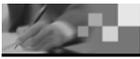
회신 회신일 : 2010. 8. 20. [교원정책과]

- 현직교사가 부전공의 일환으로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30학점만 이수하면 되고, 현직교사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2급정교사 자격취득과정으로 38학점의 관련학과 전공 이수 실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간제교사의 교육실습에 관해

질의

- 사범대학 기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기간제를 하면서 현재 계절제 교육대학원 1학기에 재학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교육대학원은 표시과목이 기술. 가정입니다. 대학원에서 2010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교육실습을 이미 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다시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을 또 나가야 한다고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표시과목으



로 실습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7. 23. [교원정책과]

- '10학년도 부터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시 현직교원이 부전공자격연수의 일환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만 교육실습을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분이 기간제 교사이고 부전공자격연수가 아니므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합니다. 다만, 기술과 기술/가정은 유사도가 50%로 높기 때문에 면제여부는 대학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직과목 면제와 이수

질의

- 교직과목 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6. [교원정책과]

- 교직과목의 면제는 -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가 가능 - 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교원자격증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경우 반드시 이수)교직학점 인정에 있어서 입학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해당영역의 어느 교직과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판단하며,
- 교직과목 이수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실습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 선택사항 이므로, 해당 대학에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정 이수자의 요건

질의

- 초중등교육법에서의 교사 자격 요건 중 교직과정이수자란 무엇이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교원정책과]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재학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한 자를 의미합니다.
- 자격요건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이수 관련

질의

- 저는 현재 대학편입으로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졸업 후 보건교사에 관심이 있는데 전에 다니던 대학에서 사범대 지리교육과를 졸업하여 교직이수도 하였고 교원자격증도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교사가 되려면 교직이수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미 사범대 다닐때 교직이수를 마친 상태인데 보건교사가 되려면 현재 간호학과에서 다시 교직이수를 해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7. [교원정책과]

-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직+전공 및 관련 국가자격 취득 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도 소지하고 계신 상태지만 그것만으론 비교과인 보건교사로의 자격취득은 가능하지 않으나, 교직이수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원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질의

- 경제학과 학생으로 역사학을 부전공으로 취득하여 현재 부전공 취득학점이 29학점입니다. 부족한 나머지 학점을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여 학부에서 취득할까 하는데 대학원 진학 중 학부에서 학점을 취득을 해서 38학점이 넘으면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6. [교원정책과]



- 전공50학점과 교직22학점이 충족되면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관련 학과인지 학부 학점의 인정을 몇학점 하는지를 해당 대학원 전공학과 의견수렴 후 대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해당 대학원의 선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과 교직과목 학점가능 점수 및 개설과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대학원에서 실무편람 서식 15-학점인정 증명을 받도록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무시험 검정 합격 기준 년도 등 질의

질의

- '08년이전 입학, '09년 이후에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공통과학)을 신청한 학생들의 무시험 검정 승인 관련하여 입학년도의 무시험검정령을 따라 수강지도를 해야 할 지 아니면, 승인 년도의 무시험검정을 따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저희 학교 연계전공(공통과학)의 교과교육과목의 경우 과학교육론(3학점) 과학과 교재연구 I, II, III, IV(각2학점) 4개과목 과학과 논리 및 논술(3학점)의 3영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과학과교재 연구영역의 과학과 교재연구 I, II, III, IV(각2학점)를 각각의 독립된 과목으로 봐야 할지, 한 과목으로 봐야할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6. [교원정책과]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입학년도를 기준(교과교육 8학점 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50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으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교육영역의 과학과 교재연구 1,2,3,4를 별도의 과목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무시험검정(보건자격증에대한예외적용)

질의

-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적이수가 개설된 학교에 다른 전공을 할 경우 무시험 검정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보건자격증만 특별한 예외조항을 두어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1. 3.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검정에 대한 전공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무시험검정은 지적하신바대로 양성기관의 장이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학사편입학관련학칙 규정은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편입학에 따른 교사자격취득 관련하여 자격종별이 다르고 전공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이수과목 등 무시험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해당 대학에 문의하셔야 하며, 교원자격이 수요에 비해 과도한 현실에서 법령개정을 통한 교원자격취득을 개방하는 방식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수전공 무시험 가능한지

질의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무시험검정을 보려합니다. 복수전공 설치와 운영 대상학과, 그리고 전공분야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의 교육과, 또는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중교육과에서의 복수전공은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라 사범대학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부전공이수에 대하여

질의

-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수학을 부전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직과목과 부전공을 다 하다보니 한학기를 더 다녀야 할 형편이라 결국 수학부전공은 다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 때 다 못들은 과목만 추가로 이수하여 수학부전공 자격을 딸 수는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7. 4. [교원정책과]

- 현재 부전공이수는 현직교원만 가능합니다. 대학에서의 부전공제도는 폐지된 상태로 수학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편입하여 정상적인 학부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려대학에서 이수한 수학 전공과목은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편입, 입학할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현직교사의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 취득 가능한지

질의

- 현직교사가 아닌 2급정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으로 입학한 후 졸업후에 현직교사가 되서 3년 교육경력을 갖추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8. 26.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위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없으므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이 불가 합니다.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실습 면제 여부

질의

-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작년에 산학전문교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학전문교사로 1년이상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정규교육시설에서 근무하면 교육실습 면제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전일제 강사로 주당 22시수의 수업시수를 담당하며 원어민 업무 관리 및 공문처리 등을 정규교원과 동등한 입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교생실습을 가야 한다면 한달간 대체 시간강사를 쓰던가, 아예 사직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도 법에 의거하여 산학전문교사로 정의되

었고, 정교사와 동등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면제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4. [교원정책과]

-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필수적인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를 산학겸임교사로 되어있는 규정을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산학겸임교사 등'의 규정의 취지는 학교에 정규교사가 아니어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열거한 것이며, 동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구별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서 별개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일부 현직교사도 실습을 이수해야만 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산학겸임교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근거로 실습면제대상으로 확대할 때에는 명예교사, 강사 등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자격증취득에 비해 임용률이 낮은 실정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결론지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양교사2급 자격증 발급관련

질의

- 2009학년도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에 입학한 학생이 2011년 2월 17일 졸업 후, 2011년 3월 14일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영양교사 2급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 * 2009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하면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정가능하나, 2011년 실무편람에 의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입학불가함에 따름.

회신 회신일 : 2011. 4. 4. [교원정책과]

- 영양교사 2급 자격의 요건은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자(신설2003.7.25),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신설2003.7.25)입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에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해당대학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어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질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교직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 국문학과에 편입학하여 국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4학점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못받은 준교사 자격증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예전 무선 설비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실기교사 자격증인 준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하여서 교육학을 이수 하였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격증을 지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1. 29. [교원정책과]

- 준교사자격은 1982년부터 폐지되었고, 졸업증명서,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대학교에 실기교사자격취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 교사자격증 인정

질의

-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의 교사자격증은 국내에서 인정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6. [교원정책과]

-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의 교사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의 대학(대학원 포함)을 졸업하고 국내의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기준

질의

- 야간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직장인이자 학생입니다. 지금은 3학년이고 한학기만 남겨둔 상태 있고, 교육관련 이수 과목은 대부분 이수한 상태이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을 다니다보니 4주 연속을 휴가를 내고 갈 수 없는 상태인데 연속 4주 교육실습(유치원)을 해야만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8. [교원정책과]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과에서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하여 50학점 이상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수과목에 유아관찰 및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치원교사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과목 등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관련

질의

- 유치원 정교사 2급을 가지고 교육대 졸업시 1급 자격증으로 승급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1. 3. [교원정책과]

- 2급자격취득후 1년경력(유치원만 해당)있으면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취득 후 시도교육청에 1급자격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사범대학평가의 기준

질의

- 전국 사범대학 평가의 교육평가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28. [교원정책과]

-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내용은 10개 평가항목, 15개 평가준거, 43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평가영역은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 구체적으로 경영 및 여건 영역은 발전노력 및 특성화, 교원, 시설 및 행·재정 등 3개 평가 항목, 6개 평가준거, 16개 평가지표로 되어 있으며, - 프로그램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교현장실습, 무시험검정, 초·중등 교원교육기관 간 교류 등 5개 평가 항목, 5개 평가준거, 19개 평가지표로, - 성과영역은 2개 평가항목, 4개 평가준거, 8개 평가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 전기, 전자, 통신 중등교사 자격

질의

- 전기, 전자, 통신 중등교사 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전기, 전자분야는 실기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격으로 임용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중등교사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교원정책과]

- 전기, 전자, 통신은 중등표시과목 중 실업계열 표시과목으로 주로 전문계고 즉 상업공업계 학교의 교육과정개설 과목입니다. 취득방법은 교원양성기관(교육대, 사범대, 일반대학교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시어 소정의 학점(전공 50 +교직22학점)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기교사도 해당 학과가 교과부의 교직승인을 득한 전문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전공50학점+교직4학점)을 이수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요건

질의

- 전문상담교사 1급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전문상담교사(1급)의 자격기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8.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상담교사 경력 인정여부

질의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규정 중3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어떤 경력을 포함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질의

- 저는 대학에서 중등2급 정교사 자격(공업과목)을 취득하였으며 상당기간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중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상담전공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직교사 및 3년이



상의 교직경력이 없으므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에 사설기관에서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학사과정에 편입하여야 하는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 [교원정책과]

-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석사학위 연계과정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문상담교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하여 취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질의

- 교육학과 졸업을 하고 일반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논문 학기 남기고 자퇴를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6. [교원정책과]

- 아래 자격기준이 필히 충족되어야 하며, 전문상담교사 검정대상은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상담교사2급 신청시 교대 입학전 이수한 학점인정

질의

- 교육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1년 뒤에, 그 전부터 다니고 있던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교육대학원 졸업시에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을런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2.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입학전에 취득하여 학위를 받은 학점 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입학전에 입학하였으나 졸업이 대학원 수강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학점인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상담교사2급 취득 관련

질의

- 현재 유아교사 2급자격증(경력 무)을 가지고 있으며, 편입하여 상담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향후 대학원에 진학 시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이 아니라, 일반대학원 심리학과를 진학하여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8.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목+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문의하여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인정학점 등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2011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모든 전공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중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교사자격증 발급 가능 대학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교사 1급 자격기준 관련

질의



- 1급 정교사의 전환대상이 분명 학부에서 2급자격증 취득하고 교육경력 1년 이상인자가 대학원석사를 졸업하면 1급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5. [교원정책과]

- '08년 실무편람부터 정교사1급 자격기준 1호에 대한 검정은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발령 받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에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교사 1급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 검정을 시도교육감이 실시하여 현직교원으로 요건을 갖춘자 중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공사립에 교사로 발령 받은 후에 자격요건에 맞추어 상위자격 검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교사2급자격증 관련

질의

- 저는 미용정교사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미용교사가 되기보다 영어교사 되는 것이 더 쉬울것 같아 지금 편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용학과에서 교직관력 과목을 이수했는데 영어과목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2. [교원정책과]

- 귀하의 경우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하면 됩니다. 교직과목의 대부분이 면제가 되나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문의

질의

- 중등학교 정교사2급(정보, 컴퓨터)를 취득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수교육 등으로 특수학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력이나 보수교육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6. [교원정책과]

- 아래내용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또한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특수학교 정교사(2급) :
 1. 교육대학및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특수학교정교사(2급) :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특수학교준교사 :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질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 규정의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서 교육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대학은 해당하지 않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6.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원(비현직 포함)만 해당하며, 이외의 대학교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

질의

-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교원정책과]

-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은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관련

질의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교원정책과]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1.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의 자격 요건

질의

○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교사자격증에 1급 정교사가 있는데요.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 5. [교원정책과]

○ 민교원양성기관(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무시험 검정에 합격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 후 초등임용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가능하며, 정교사 1급은 현직교원만 해당되며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치료교사 자격 관련

질의



- 현재 특수학교 정교사 치료교육 2급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5월 갑자기 법이 바뀌게 되면서 치료교육이라는 항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아 상관이 없지만 이제 2012년까지로 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는 이 자격증을 전환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또한 2008년도에 졸업한 후배들은 법이 바뀌고 나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특수학교정교사 중등 재활과복지 2급으로 자격이 나왔더라구요. 그럼 우리도 중등 재활과 복지로 자격을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자격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4.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거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보며, 시도교육감이 변경된 표시과목의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개전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종전의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치료교육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조치에 따라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국·공·사립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행정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알려주시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치료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현직에 들어올 경우, 제일 먼저 자격전환 연수를 받게 되며, 다음으로 부전공 연수,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 후 1정 연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표시과목 변경에 있어서 현직 교원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통해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과목 변경이 불가능하실 뿐입니다.

특수 재활복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관련

질의

- 올해는 1급정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재활복지 1정연수는 없을 것이며 부전공 자격연수 또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활복지자격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교사들은 1급정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치료교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치료교과가 없어지고, 재활복지로 전환

하고나니 1정 연수는 언제 받을지 알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답답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0. [교원정책과]

- 특수 재활복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 현재 특수재활복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없으며, 선생님 취득한 부전공자격(2급 정교사) 전공교과별로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부전공 자격연수는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거나, 주관교육청 중심으로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안내 하였습니다.

특수교사(중등) 정교사 (2급)재활복지과목에 대한 1정연수 관련

질의

- 특수교사(중등) 정교사(2급)재활복지자격증을 가진 4년차 특수교사입니다. 이번에 1정연수를 들으려고 했더니, 대상자가 아니더라구요. 재활복지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1정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0. [교원정책과]

- 재활복지 1급 자격이 없기에 자격연수가 있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전공을 이수하여 2급 정교사를 취득한 후 3년 교육경력 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 후 교생실습 관련

질의

- A 대학교의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하여 특수(초등) 2급 정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B 대학교의 중등특수교육과에 편입을 하여특수(중등) 2급 정교사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교생실습을 한번 더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8. [교원정책과]



- 2011학년부터 편입학자의 교사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과 교직과목 6학점(교직소양 4학점, 교육봉사 2학점) 등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지만 대학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편입학시에는 대학에 교사자격 취득 가능여부와 교육실습 면제 여부를 확인 후 입학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09.23)' 제6조제3항입니다.

☛ 편입시 무시험검정 가능한지?

질의

- 대학 편입을 했는데 전에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이 편입학교와 다른 경우 무시험검정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과목에는 포함되나 편입학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편입학교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교직이론과목을 확대, 편입학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나 명칭이 다른 경우 해당 학생의 무시험검정 서류에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 편입시 학령계산 방법

질의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2. [교원정책과]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중 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호봉 산정에 반영되며, 또한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 편입전의 학점 인정여부

질의

- 교육대학원의 입학전 편입학후 대학을 졸업시 학점 인정여부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졸업대학과 동일한 전공으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교육대학원의 입학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며, 교육대학원의 재학중 또는 졸업 후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원 학점으로 교사자격증 발급 가능한지

질의

- 대학교(전문대)에서 전문 학사를 졸업한 후 평생교육원에서 나머지 학점을 채워서 방송영상학 전공 예술학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위 자격으로 교사 자격증이나 실기교사 자격 발급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8. [교원정책과]

- 평생교육원 학점도 인정할 수 있지만, 세부교사자격취득 관련하여 이수학점의 인정과 전공학과 여부 등은 교원양성기관(해당 대학)에 문의바랍니다.

● 현직교사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관련

질의

- 중등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교사입니다.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2학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으로부터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과목(교생실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을 이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생실습 학생의 지도교사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을 정도의 교직경력을 갖고 있는 현직교사인 제가 교생실습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교육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9. [교원정책과]

- 교육실습은 교사자격 취득관련 전문성의 핵심요소입니다. 교육대학원은 새로운 교사의 양정보다는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양성기관입니다. 현직교원이라 하더라도 표시과목이 다른 분야의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습을 받아야만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는 중지를 모은 결과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009학년도입학자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 표시과목이 다른 분야의 실습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대다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교사자격의 과잉공급이라는 점에서 연유된 것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편성과 관련하여 대학에 따라서는 교원양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세부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직교원 교육대학원을 통해 표시과목이 다른 부전공자격 취득시 교육실습 면제 여부

질의

- 정보·컴퓨터 1정 현직 교사입니다. 현재 수학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부전공으로 수학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정보컴퓨터 1정을 가지고 있는 현직교사인 경우 표시교과와 다른 수학 교사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취득할 경우 교육봉사와 현장실습 같은 교육실습영역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5. [교원정책과]

- 해당 교육청의 추천으로 입학하여 교사자격증 취득 시 실습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입학에 의해 교사자격증 취득 시 취득하고자하는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제 불가 하며,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 선택사항 이므로, 해당 대학에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직교원 아닌경우 대학원 진학후 교원자격 취득

질의

- 일반사회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상담교육 대학원에 진학할까 생각중인데 학교측에서 진학은 가능하지만, 상담교사 자격증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직경력 3년이상이면 대학원 졸업후에 전문상담자격증 1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경력이 3년이 안되면, 자격증 자체를 딸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6. [교원정책과]

- 현직교원이 아니면 교육대학원 진학후 자격취득이 어려우나, 전문상담교사 2급은 전공50, 교직22학점으로 자격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부학점에 따라 입학자격부터 취득방법이 모두 다르며, 전공관련학과 및 학부의 학점인정을 양성기관(대학원)의 장이 결정하오니 개별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대학에 문의바랍니다.

교육봉사 활동 관련**질의**

- 대학에서 사범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교직을 이수하려면 교육봉사를 해야 하는데 각 초, 중, 고에 가서 60시간을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받아 주지 않아서 졸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5. [교원정책과]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5항에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 이수학점 4학점 중에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하며,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는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하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 가능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합니다. 또한, 초기 시행 단계이므로 교육봉사활동의 범위는 논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1학년 일반학자금대출제한

질의

- 국가가 젊은이들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일학년들이 졸업하는 해부터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생겨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반대출도 열어주시고 취업 후 상환도 함께 열어주셔서 이자의 부담이라도 매달 조금씩 지고 나아가야 아이들도 책임감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7. [대학장학과]

- 든든학자금은 재학 중 필요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졸업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든든학자금 대출기준은 소득 7분위 이하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만 대출 가능합니다.
- 정부는 '09. 5월에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학자금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어 연간 소요될 국가 재정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불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 재학기간 동안 대출한도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올해부터 도입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1학년 신입생을 우선 적용하여 점차 대상 학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1학년의 경우 든든학자금의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의 소득분위별 이자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소득분위별 이자지원과 든든학자금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매월 상환 설정도 가능합니다.
- 모쪼록, 신용불량자 양산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든든학자금의 도입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정부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0년 희망 드림 장학의 신입생 수혜여부 문의

질의



- 희망 드림 장학금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2010학년도 학생에게는 줄 수가 없고 재학생에게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재학생이나 신입생이나 모두가 대학생인데 신입생이여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6. [대학장학과]

- 2010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여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액수만 비교한다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기존제도에 비하여 적어 지원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학생이 졸업후 기준소득 이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어 현 제도의 문제점인 신용불량자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대출자격 요건 중 신용제한을 폐지하여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자도 학비마련이 가능해 졌습니다.
- 또한, 차상위계층 장학금은 당초 '09.2학기부터 '11.1학기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학비를 면제받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이상이 되도록 하는 학비 지원(교내장학금) 규정을 각 대학에 적극 독려하여 저소득계층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신입생이 희망드림 장학금 수혜할 수 없는 것은 정부시책은 아니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대조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불어, 2011년도에는 연간 1,000억원을 저소득층 성적 우수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개강일로 인한 등록금 반환 금액에 관한 질의

질의

- 일부대학에서 입학식 및 개강일을 2월 중으로 학사일정을 잡고, 개강일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개강일(2월 중) 환불을 요청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6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4. [대학장학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의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일을 말한다'에서 입학생의 입학일은 고등교육법상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 2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2월에 입학식을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입학금 및 등록금의 반환 기준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경영부실대학과 대출제한제도 관련

질의

- 대출제한대학은 이미 공지되어 있으나, 방송에서는 여전히 “재정부실대학”으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 경영부실대학과 대출제한대학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인지 알려 주십시오.
- 대출제한대학선정시 지표기준에서 재학생충원율을 35%로 선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0. 9. 28. [대학장학과]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은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제고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것입니다. 대출한도 설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6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부실대학 선정기준과 대출한도 설정기준과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대출한도 제한 대학과 부실 대학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보도 자료에도 동 사항을 반영하여 대출한도 대학은 구조조정과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 또한 대출제한 대학은 해마다 평가하여 결정되어 학자금 대출 제한에만 영향을 주게 되므로, 대학의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각 대학의 지표값 개선 노력은 결국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는 재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학생 충원률은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6개월에 걸쳐 추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마지막으로, 20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



하여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평가를 위해 금년 말까지 발전된 지표를 제시하고, 동 수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계약학과 입학금 관련

질의

- 우리 대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정부 산하기관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입학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입학금은 등록금과 같은 수업료의 개념으로 보기에 정부기관에서 부담한다.
 2. 입학금은 등록금과는 별도의 개념으로서 학생이 부담한다.
 3. 정부기관과의 협약 내용과 학칙에 의하여 입학금 부담 주체를 결정한다. 입학금에 대한 정부기관, 학교, 학생의 입장정리가 사전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법령해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6. [대학장학과]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교육경비의 일체를 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육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전체 경비로서 등록금을 포함하며 등록금은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입학금으로 교육경비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 장학제도 확대에 관하여

질의

- ‘국가 장학제도 확대’를 통하여 장학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만, 대학(학생)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 요점은 ‘국가장학제도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3. [대학장학과]

- 정부의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최저소득층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취업 후에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을 도입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하며, 대학재원을 다변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향 및 제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1.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09.5) 하는 등 국가장학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학생의 경제 및 생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국가장학사업 신설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설('08년), 4년제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신설('09년)-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천억원, 11년), 전문대생 성적우수장학금(96억원, 11년) 신설- 이외에도, '11년부터 글로벌 Ph.D. 펠로우십('11년 95억원)을 도입하여 석·박사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 2011년 현재, 저소득층 및 성적 우수 대학생을 중심으로 5천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 타부처 및 민간기부 장학금, 대출 이차지원 등을 포함하면, '11년 정부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 규모는 1조 3,315 억원
 2. 든든학자금 제도의 도입 누구나 돈이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하기 위하여, 재학 중 이차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일정 소득 발생시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 도입('10년)하였습니다.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달 비용이 낮은 재원 발굴 등을 통하여 금리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가고 있습니다. * ('08.2학기) 7.8% → ('10.1학기) 5.7% → ('10.2학기) 5.2% → ('11.1-2학기) 4.9% 또한, 대출심사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 간소화('10년), 특별추천제 도입을 통한 학점요건 완화, 생활비도 취업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11년)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 등록금 안정화 유도 2008년까지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대학 총장간담회 개최 등 등록금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여 물가상승률 보다 낮게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정착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대학재정사업에 등록금 수준 반영 비중을 확대('10년 5%→'11년 10%)하여 등록금 안정화를 계속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4. 대학 재원 다변화를 통한 등록금 의존도 완화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 R&D 자금수입 확대 및 기부금 유치 확대 등 대학 자체 재원 다변화 및 세제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간접비 지급율을 확대하고 집행의 자율성 보장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와 아울러, 대학재정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오히려 현 정부 출범시부터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동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축소로 인한 피해

질의

-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축소 때문인지 학교 학생과에서 본래의 근로시간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의견을 고려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5. 3. [대학장학과]

- 국가근로장학금은 '09년부터는 기존 전문대에서만 실시하던 제도를 4년제 대학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1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시행계획(안)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별 예산 배분은 학제별, 지역별 예산 내에서 각 대학별 재학생 수 및 저소득학생 수, 이전 사업의 운영실적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원합니다.
- 따라서 배분 금액은 매년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은 의무비율에 맞춰 교내근로의 경우 총 예산의 20%, 교외 전공사업체 근로의 경우 총 예산의 10%를 대응투자로 지원합니다. 즉, 배분받은 금액과 교내 대응투자를 합한 예산으로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상한을 기준으로 학사과정에 맞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국가무상장학금 취지

질의

- 국가무상장학금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대학장학과]

- 국가무상장학금의 취지는 현재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학제도입니다만, B학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3/4 이상인 현실에서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업성취도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B학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시기 관련

질의

-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급여를 3개월에 한번 주기로 했다더군요. 그달에 일한 월급은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도록 조취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9. 3. [대학장학과]

- 현재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경우 수급권자의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권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 현재는 동 제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매월 지급되도록 개선했습니다.

☎ 근로장학생 정책에 대한 질의

질의

-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 대상으로 가정방문 돌보미지원사업(학습, 인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근로장학생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와, 현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해소를 위하여 근로장학생 인력을 장애인 기업체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3. [대학장학과]

- 국가근로 장학제도의 목적은 높은 대학 등록금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지원과 재학 중 전공 관련 직업 체험의 기회를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학생에게 사회봉사활동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 제고에 있습니다.
- 근로대상 기관은 전공 관련 산업체(창업보육센터, 교내입주업체, 학교기업 포함)며,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업이 가능한 근로기관의 산업체여야 합니다. 교내근로는 연구소, 시험·



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도서관 등이며, 교외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시설, 초·중·고 멘토링 지원 시설, 일반산업체(단,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만 가능)입니다.

- 우리부에서 '대학생 국가근로 장학제도 운영 규정'을 정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의 국가근로 장학보조금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며, 대학은 '대학근로장학제도 운영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첫 번째, 저소득층 가정 방문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여부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기업체에 인력난의 어려움만으로 근로장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학업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전공 관련 직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선정 여부는 대학에 문의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자녀 장학금 최대 수혜 학기수

질의

- 4년제, 2년 2학기 재학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학금혜택을 4학기 받았습니다. 전문대로 학교를 옮기고 싶은데 계속 장학금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2. [대학장학과]

- 미래드림 장학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무상장학금입니다. 최초 제도 시행과 더불어 학제에 따른 최대 수혜학기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4년제는 8학기 2년제는 4학기까지 수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4번의 수혜를 받으신 경우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동 제도의 수혜 기준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대학 진학시 보조혜택

질의

-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대학 진학시 보조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보조혜택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9. 2. [대학장학과]

○ [미래드림 장학금]

- 신청자격 : 대학에 재학(신입생)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성적기준(신입생):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영역(언어,수리, 외국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기준 80점 이상 ※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지원내용 : 연간 450만원

○ [튼튼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경우 - 신입생은 고교내신 이수과목의 1/2이상 이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인 경우
-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대출,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산학협력 및 인턴제 강화로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 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정 지원)

- 지원금액: 시간당 지원단가 6,000원 ~ 8,000원('11년 기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및 각 소속 대학(교)
- 근로대상기관: 전공관련 산업체, 학내근로, 사회복지시설 등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문의**

질의

- 학기 초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30일이후 60일이전으로 자퇴 처리 시 환불금액이 너무 작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의 2/3면 약 100만원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학교 규정을 30일이전 등록금의 5/6 환불을 40일이전으로 변경하여, 학기개시일 40일이



전까지 등록금의 5/6를 환불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5. [대학장학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이며, 동규칙은 최소한의 기간을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대학 자체의 등록금 환불 규정을 학교개시일 부터 30일 이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환불을 학교개시일 부터 40일 이전 등록금의 5/6해당액 환불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질의

- 몇 백만 원이나 하는 등록금이 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가 시행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투명한 거래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8. [대학장학과]

-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 편의 제공 및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의 책정과 납부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고 있어 등록금 카드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립대학 '03학년도, 사립대학 '89학년도 자율화

- 다만, 우리부에서는 그 동안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납부제, 분납·연기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등록금 납부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여 왔습니다.
- 각 대학에서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감면 또는 국가의 수수료 지원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수료율 감면 및 연간 125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는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우리 부에서는 서울시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며, 대학 주거래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등록금 카드납부제가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다만, 카드 수수료는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카드할부 이자(15~25%)로 인해 오히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대부분 대학(311개)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

시를 통해 일시적 목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대학교내 학생회비를 강제로 걷는 행위 관련

질의

- 학생회비라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감찰하며 또한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망신을 주는 행위나 학생회비를 횡령하는 이들을 잡아내어 학생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게 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9. [대학장학과]

- 학생회비 관련 사항은 대학 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인 바, 학생회비 수납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규정이 되어있는 바는 없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하여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등)에 대하여는 통합고지 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4년간의 학생회비를 한 번에 납부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대학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관련

질의

- 현재 개정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과부의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행정에서는 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학교행정에 운용하여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 20. [대학장학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2항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고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 소득 5~7 분위 이하 학생
 - 5분위 이하 학생에 대한 면·감액을 원칙으로 하되, 5분위 학생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7분위까지 확대하여 면·감액할 수 있음
- 10% 이상 학비감면이 되었는지의 판단 기준 : ①+②+③을 동시에 만족
 - ① 학부생 징수 총액 중 학부생 先면제 또는 先감액 금액
 - ② 대학원생 징수 총액 중 대학원생 先면제 또는 先감액 금액
 - ③ 전체(학부생+대학원생) 징수 총액 중 先면제 또는 先감액 금액
 - ※ 2011년까지는 학부, 대학원 구분 없이 합산하여 10% 이상 학비감면 되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학부, 대학원 각각 10% 이상 학비감면”에 대한 해석은 2012년부터 적용
-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액이 해당학교 학비감면 총액의 30%이상인지의 판단 기준
 - 총 면제 또는 감면 금액 중 학부, 대학원 구분 없이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한 경우 충족한 것으로 판단
 - ※ (例示) 등록금 총 수입액이 100억인 A대학에서 15억원을 면제·감면했다면, 15억원의 30%인 4억 5,000만원 이상을 학부, 대학원 구분 없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면해야 함

대학등록금의 학점에 운영요청민원

질의

- 대학등록금이 학기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하게 하면 어떨까요? 대학등록금도 비싼데 안 되는 이유와 대학등록금에 관련된 법률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3. [대학장학과]

-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입법되어 있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령은 법제처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동부령에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

대학 및 기술대학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학기제 등록금 징수가 아닌 학점제 등록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

- 2010년 군필 후 대학교 2학년 복학 예정인 자식을 두고 있는데, 일반학자금 이용 후 상환하지 못하고 구상채권 계약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대출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복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이용한 일반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8. [대학장학과]

- 2010년부터 도입한 든든학자금은 재학기간동안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는 제도로써, '10년 이전 학자금대출에 대한 든든학자금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까지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채권대납이자 등을 국고지원이 불가피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1.8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또한, 대출자격은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써 직전학기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 성적 기준은 전체 대학생 중 B학점 이상인 학생의 전체의 3/4 이상인 현실에서 최소한의 학업성취도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B학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엄격한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이 든든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2011학년도부터 성적기준에 대한 특별추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이 되지 않을 경우, 전체학기 성적 평균이 B학점 이상이면 대학의 특별추천(재학 중 2회에 한함)을 통하여 든든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적기준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 유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학기 성적 평균(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확인하시어 대학 담당자에게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이 휴학시 등록금 반환문제

질의

- 2학년 1학기에 등록하고 2월 26일자로 휴학하여 등록금 반환신청 하였더니 반환 받으려면 자퇴하여야하고 아니면 반환불가라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대학장학과]

- 대학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는 납부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처럼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반환사유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직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신입생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

-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등록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기등록대출 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군요. 2009년 7월부터는 일반은행에서 따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모든 업무가 한국 장학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대학원 신입생에게 등록전 대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0. 12. 2. [대학장학과]

- 정부는 최대한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 내에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대학원의 등록금 결정 및 수납일정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대학의 등록기간이 빠른 경우 모든 신입생에 한하여 기등록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등록 전 대출'은 '09년 1학기 이전 정부보증학자금대출까지 시행 했었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고지서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시 본인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실행 시 학교에서 등록한 수납원장 금액을 재단에서 학교로 바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전 대출'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대학학비 지원 관련****질의**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경우 학비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0. [대학장학과]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경우 재학생은 연간 450만원(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학생 모두 동일 지원을 받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등록금이 연간 450만원 미만인 학교 재학생의 경우 지원 금액이 등록금액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관련****질의**

- 제2010-1학기에 미래드림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밖에 승인이 되지 않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미래드림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인데



왜 든든학자금대출이 아닌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승인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5. [대학장학과]

- 장학금 기준은 나이 제한이 없으나 학자금대출은 한정된 기금으로 상환기간을 고려 나이가 제한됩니다.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드림 장학금]
 - 신청자격 : 대학에 재학(신입생)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성적기준(신입생):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영역(언어,수리, 외국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기준 80점 이상 ※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지원내용 : 연간 450만원
- [든든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경우 - 신입생은 고교내신 이수과목의 1/2이상이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인 경우 ○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대출,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8분위 이상인 만 5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경우 - 신입생은 성적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대출

등록금 인상을 학생대표 찬반없이 가능한지

질의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현 학교 총학생회장이나 학생 추천으로 들어간 사람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관련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와 등록금 인상을 학생대표 찬성 반대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4. [대학장학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 학생,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학생회장 등 대표성 있는 학생 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금 결정 전에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등록금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장학금 이중수혜 관한 질의

질의

- 장학금의 이중수혜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명분이 같은 동종으로 소속학교는 물론, 타기관이나 단체(예, 안동시 향토사랑장학회, 삼성 등 기업체 재단의 장학회)에 신청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장학금이라는 명칭은 같더라도 명분이 다른 이종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신청 수령하더라도 이중수혜라할 수 없는 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원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만학도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7. [대학장학과]

- 대학의 교내장학금은 자체 규정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다양한 장학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학금을 수혜 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에 대한 지원 또는 생활비 지원 목적인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있습니다.

미래드림장학금에 대해

질의

- 2011학년도에 미래드림장학금 제도가 금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생활비 지원(1년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4. [대학장학과]

- 정부는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 현재 든든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대출, 미래드림장학금, 희망드림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년 미래드림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연간 45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달라진 점은 '10년 한시적 운영했던 무상지원생활비(연간 200만원)는 지원하지 않으며, 전 학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불량자인부모의 자녀 학자금대출가능여부

질의

- 부모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대학생인 자녀가 학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3. [대학장학과]

-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신용 정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든든학자금대출은 학생의 신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 모두 재학기간 중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생활비 대출 관련

질의

- 대학 신입생입니다. 일반상환대출을 받았지만 생활비 대출 지원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신입생에게 생활비 대출 지원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8. [대학장학과]

- 현재 신입생이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기준은 대학수능시험 기준은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인 경우 또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기준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6등급 이내인 경우입니다. 범위 성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생활비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공계 장학금 기준의 문제점

질의

- 08년도까지 제한 학점이 3.0/4.3 이었던 이공계 장학금 유지 조건이 09년도에 3.3/4.3으로 올랐습니다. 국립대학교 공과대학에서 3.3을 넘는 학생은 통계상으로도 30% 내외 이하에 불과하며(전공마다 차이가 있음), 특히 전공과목을 많이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점 제한에 걸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9. [대학장학과]

- 우수학생 장학금(이공계)은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학업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계속지원 기준(B+)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지원 기준(B+)은 전체 학생의 학점분포를 볼 때 50%의 학생이 포함되는 성적이며, 국가 장학생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되어 이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외부에서는 국가 장학생의 위상을 고려하여 성적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많은 것이 현실정입니다. 탈락된 학생의 장학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지원 기준에 미달되어 장학생에서 탈락된 학생만큼 또 다른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다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고 당초 선발에서 제외된 우수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오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장학금의 성적기준

질의

- 이공계장학금의 제한 학점이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상대평가인데 어떤 수업들은 중간 정도의 석차만 되어도 C학점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 B+학점을 받아야 이공계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8. [대학장학과]

- 우수학생 장학금(이공계)은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학업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계속지원 기준(B+)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지원 기준(B+)은 전체 학생의 학점분포를 볼 때 50%의 학생이 포함되는 성적이며, 국가 장학생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되어 이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외부에서는 국가 장학생의 위상을 고려하여 성적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탈락된 학생의 장학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지원 기준에 미달되어 장학생에서 탈락된 학생만큼 또 다른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고 당초 선발에서 제외된 우수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장학금 상환 관련

질의

- 자녀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용자를 받았고 1학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이후도 이자가 계속 출금되는데 개선 할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9. [대학장학과]

- 군복무 시 경제활동을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역사병이자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거치기간 중 부담해야 할 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전역 후 유예한 이자를 3년 동안 상환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 정책

질의

- 자녀가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 방학엔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계속해서 근로 장학생 지원을 해 주셔서 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8. [대학장학과]

- 국가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정부 예산 80%와 학교 대응투자 20%로 지원합니다.
- 따라서, 대학은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상한을 기준으로 예산 및 학사과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도 많은 재학생들에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를 '09년부터 전문대학교 대상에서 4년제 대학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정부 차상위계층 장학금 개선 방안 관련

질의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입니다. 2011년도에 복지를 최대한으로 하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했는데 그 중 어렵고 힘든 대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제도를 조금만 더 늘려 주셨습니다. 내년 1월에 꼭 좋은 (장학금) 소식으로 정부 학자금대출 사이트에 공지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4. [대학장학과]

- 정부는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을 기금으로 20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및 대출금리 인하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설립 전 7%대의 이율을 5%대로 인하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10년 1학기부터 실행한 든든학자금대출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증감시켜주고 있습니다.
- 든든학자금대출은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 지원을 받고, 취업 후 소득발생시 매월 유예된 이자와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일반학자금대출은 대출 시점 다음 달부터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합니다.
- 이에 빈번한 연체이자 발생과 신용유의등재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되어 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고자 든든학자금대출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학자금대출



은 중도상환 시 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09년부터 전문대학 대상에서 4년제 대학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무엇보다 일반 소득활동과는 달리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종합소득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 정해진 예산으로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지원하며, '11년에 사용할 예산은 '10년 예산 보다 더욱더 증액되어 열심히 공부하는 재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와 불편함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장학금은 정부 예산 80%와 대학 대응투자 20%로 지원합니다.
- 이에 대학은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상한을 기준으로 예산 및 학사과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11년부터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과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학자금 대출 제도 관련

질의

- 중증장애인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되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5. [대학장학과]

- 정부는 저소득층의 학비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05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08년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 장학금을 시행하고 있고, '11년부터는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신설하여 일정 성적기준을 유지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학으로 무상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신청자격 : 대학에 재학(신입생)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성적기준
 - 신입생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기준 80점 이상
 - ※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지원금액 : 연간 450만원 내외
- [국가근로장학금]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봉사 및 사회경험 기회도 확대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도 신청 가능
 - 혜택내용: 교내근로 시간급 지원금액 6,000원, 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 시간급 임금은 8,000원('11년 기준), 근로시간은 주간 교육과정은 주 20시간 이내, 야간 교육과정 및 방학기간 중에는 주40시간 이내(1인당 연간 최대 수혜금액 1,100만원)
 - 신청방법: 각 대학에서 공고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온라인 신청하여 소속대학에 제출, 대학에서 심사 후 선발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 대상 : 대학에 재학(신입생) 중인 소득5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성적기준(A^o)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지원금액 : 연간 500~1,000만원 내외
- [전문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11년 신설)]
 - 전문대학에 다니는 성적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 기능인을 양성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온라인 신청 후 소속대학에 제출, 대학 추천 학생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 2010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여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단, 동 제도는 상환기간이 장기적이므로, 대출가능 연령을 만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튼튼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학생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는 제도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경우 - 신입생은 고교내신 이수과목의 1/2이상이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인 경우

-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대출,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 대출가능하며,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학기별 신청기간에 공지(대학등록기간 내 신청)

○ 정부는 저소득층의 학비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마련하여 무상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제적의 경우 등록금 반환 불가

질의

○ 대학진학 후 휴학을 했고 4개 학기 휴학이 되면서 자동 제적되었습니다. 제적된 후 휴학전 냈던 등록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했더니 제적된 경우는 등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8. [대학장학과]

○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동 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2일 이전에 재학중인 대학에 휴학기간의 종료 후 학적처리에 대한 제신청(복학 또는 자퇴)를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등록금 반환 대상이 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일 이후 휴학 후 제적된 경우 대학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어 휴학 후 제적이라도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질의

○ 이전 학기에는 든든학자금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B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든든학자금

을 이용하고 싶은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4. [대학장학과]

- 특별추천제는 기존 든든학자금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이 매우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학기 평점 평균이 100점 만점8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하여 든든학자금이 이용 가능하도록 완화한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 이는 전체학기의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전학기, 즉 매학기 마다 B학점 이상을 득해야 하는 종전의 기준보다 완화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입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격기준

질의

- 취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자격기준 중 성적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0. [대학장학과]

-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2분의1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이어야 하며,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이야 합니다. 그리고 만 35세 이하이며, 소득 7분위 이하인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질의

- 유학생의 경우에도 학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실적으로 볼 때 힘들 거 같기도 한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0. [대학장학과]



- 현재 우리부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에 대하여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국가 재정상 국내 고등학교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대학에 유학을 간 경우 학자금 대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

- 저는 이번에 2011년 대입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아이가 수시로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기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를 한 결과 이 학교는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점은행학교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5. [대학장학과]

- 현재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 설립되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정부 재정상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및 제33조 제3항에 의한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등만 대상이 되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방송진흥예술원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는 (법률 제8916호)에 의거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가장 상이한 부분은 설립에 대한 법률입니다.
- 자녀분께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 도전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곧 학비 마련의 고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는 국가재정의 한계 때문에 정부학자금대출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국내 여러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중도 상환

질의

- 학자금 중도상환이 업무시간 끝났다고 처리 안 된다고 합니다. 미뤄지면 매일 이자가 복리로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0. 11. 1. [대학장학과]

- 정부학자금 대출은 여러 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도 상환의 경우 부득이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향후,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하여 개선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든든학자금(취업후학자금상환 대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발생 되며, 이전 이자 금리는 단리 적용됩니다.

☎ 학자금대출과 일반대출 별도 관리 문의

질의

- 대학 졸업 후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는데 학자금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출금도 꼬박꼬박 잘 갚아가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일반대출과는 별개로 관리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8. 25. [대학장학과]

- 정부는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09년 1학기 이전의 정부학자금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이미 시중투자자의 자본으로 금융거래가 성립, 완료된 것입니다. 정부학자금대출도 금융거래의 일부입니다. 이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다르게 취급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

- 저는 만학도입니다. 학점은행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사회복지학과 석사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28. [대학장학과]

- 일반학자금대출은 대학원 재학(석·박사 과정) 중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6천만원, 전문대학원의 경우 9천만원입니다. 연령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55세 이하입니다.
- 대출신청은 매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승인' 후 '대출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전문학교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

- 전문학교 졸업하고 나면 전문대학과 같이 똑같은 학위를 준다고 하는데, 왜 전문학교는 학자금대출이 안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2. 16. [대학장학과]

- 정부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정부 재정상 '고등교육법 제2호에 규정한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및 제33조 제3항에 의한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등만 대상이 되며,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의 장학금 지급

질의

- 국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확대해 해외 유학생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게도 혜택을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 [대학장학과]

- 해외 유학생인 자녀의 학비 요청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장학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대통령과학장학생(한국장학재단), 국비유학생(국립국제교육원) 등이 있으나 모두 장학금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가 장학금 및 대출 제도는 예산 사정상 국내 학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유학 대학생 학비 대부

질의

- 미국대학에 유학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은 국내 대학교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국민의 유학생자녀에 대해서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7. [대학장학과]

- 현행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기 곤란한 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F122 현재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0년부터 든든학자금을 도입하여 재학 중 필요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를 시행중이며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만 대출 가능합니다.
- 현재,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유학생 대출제도 및 장학금 확대 시행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 첫째, 정부의 재정부족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위해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제도가 안정된 이후에 정부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이나, 기금의 안정화 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현재 유학생에 대한 대출은 어렵습니다.
- 둘째, 해외의 경우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대출제도는 각 대학의 관리에



의해서 운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학점, 성적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추천, 등록금 확인, 이중수혜 방지, 대출학생 신상변동 관리 등) 외국 대학의 경우 이러한 대학 관리가 어려우므로 학자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기 타

국비유학생 제도 합격자 국가변경 가능한지

질의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자의 국가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7. 26. [글로벌정책담당관]

- 지역연구분야의 국비유학생 선발시, 해당 국가로의 유학은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의 기본 전제이며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이유로 유학국가를 변경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합격의 기본 전제와 어긋나는 것이므로 유학 국가 변경 시에는 유학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제학교 편입학에 대해

질의

- 약 5년을 미국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지금 1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다음주에 11학년을 끝냅니다. 8월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한국에도 9월 학기제로 똑같은 수업으로 토플 및 SAT를 공부하여 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 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목록이나 자료 등을 알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0. [글로벌정책담당관]

- 현재 국내에는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그리고 제주국제학교 세 종류의 외국교육 양성 기관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자녀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정주여건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확대, 제주국제학교는 내국인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이 학생정원의 30%(최대 50%)까지 입학할 수 있으며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이 100%까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은 현재 재학생의 30%까지만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으나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정원의 30%(최대50%)까지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도록 조정 할 예정입니다. 동생분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계시므로 내국인에 해당하며, 미국에서의 5년 거주로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이 가능하시지만 12학년 편입이 가능한 학교는 찾기 어렵습니다.



- 졸업 후 한국대학으로 진학하려면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하셔야 하는데, 현재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채드워송도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대구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NLCS Jeju(제주국제학교), KIS Jeju(제주국제학교)가 현재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라달튼외국인학교를 비롯, 상기 명시해 드린 국내학력인정학교들은 현재 12학년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NLCS Jeju의 경우, 올 9월 말 경 개교를 하였고 현재 최고학년은 11학년입니다.
- 그 외 국내 외국인학교들은 국내학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졸업 후 국내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등을 통한 고등학교 과정 이수 증빙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에 알아보신다면 하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검토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www.isi.go.kr 로 들어가시면 국내 기 설립, 운영중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대학 유치에 대한 문의 사항

질의

- 유명 영국 대학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작업 중입니다. 한국의 연구소가 학생을 모집하고, 교수진은 영국의 대학에서 파견해서 서울에서 가르칩니다.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석사논문의 집필은 영국에 가서 해도 되고, 서울에서 그냥 계속 해도 됩니다. 수업료의 일부를 영국대학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한국의 연구소가 취득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육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31. [글로벌정책담당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이며, 서울 등지에서 연구소가 유치하는 형태로의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외국교육 기관은 WTO DDA, FTA 협상시 고등교육을 제한된 구역에 국내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한 제약을 두고 개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합작설립은 불가능하며(외국학교법인의 단독설 립만 가능)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동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si.go.kr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으로 현직, 예비교사 파견 관련

질의

- 현재 언론에 보도된 외국으로 현직, 예비교사 파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2. 9. [글로벌정책담당관]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차세대 글로벌 교육리더 양성을 위한 「우수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수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관련

질의

- 외국인 유학생은 들어와서 공부보다는 취업을 하고 다른 한국대학생에게 피해를 줍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2. [글로벌정책담당관]

- 우리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및 친한·지한 인사의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질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선발 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의 안내를 통해 대학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시행(개정, '10. 9. 17.)하고 있으며, 동 요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선발 시 서류 검증을 통한 수학 능력 심사 및 입학 시 한국어 능력 기준 제시 등 선발·관리 기준을 정하여 장려하고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도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상의 조건(예:한국어 성적 우수 등)이 없는 일률적 학비감면 및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유학생 선발 등을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적으로 법무부 등의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학칙 및 표준업무처리요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 우수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

질의

- 우수교원 선발기준으로 teps시험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선발된 교원은 정해진 기관등에서 근무를 하거나 프로그램등을 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자체연수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건가요?
- 우수교원 선발대상이 '1급 정교사만 된다'등과 같은 제한이 있을까요? 중국도 대상국가라고 하던데 예상되는 선발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3. 7. [글로벌정책담당관]

1. TEPS는 TEPS Speaking & Writing시험입니다. 일반 TEPS시험과는 다릅니다.
2. 사전 협약에의해 파견기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이미 합의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인별 자체연수는 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직 교사이면 됩니다. 즉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시면 됩니다.
4. 금년은 중국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내년에 일본, 중국 등에서 교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기관을 금년 중 발굴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하신 것에 답해드리기 위해 cafe.naver.com/goteach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우수교원해외진출지원5개년계획 지원자격

질의

- 1997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범대 중등2급정 교사 자격증을 1997년도에 땀다면, 20116월 선발평가에 예비교원 모집 선발에 응시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2. 14. [글로벌정책담당관]

- 본 계획서 내에는 현직교사, 미 임용 예비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및 교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사업의 자격은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취지가 해외 학교 등에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현지학교에서의 수업이 가능한 어학능력과 과목 지식'을 보유하고 '현지학교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진출이 용이한 교과목분야의 예비 교원'에 대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별도 졸업 년도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대 외국인입시 관련 문의사항

질의

- 공학전문학사도 기술직학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1. [글로벌정책담당관]

- 우리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선발 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대학의 업무 처리를 표준화하고,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개정, '10. 9. 17.)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요령에 따라 전문대학의 경우, 기술직 학과 입학생 등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영어능력시험의 기준이 완화 가능하며, 동 요령에 따른 기술직 학과라 함은 공학 등에 대해 이론보다는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과로, 관련 학과 입학생은 대학이 정한 기본적 수학능력과 한국어 능력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귀 대학의 공학전문학사도 공학 등에 대해 이론보다는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과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영어능력시험의 기준이 완화 가능합니다.

제주국제학교 전형료 관련

질의

- kis 제주국제학교 1학년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원서 접수할 때는 영어를 못해도 입학이 가능하다하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영어를 못해서 불합격 했다고 합니다. 다른 국제학교는 서울에서 시험 보는데 kis는 제주도까지 오라하고 전형료, 비행기표, 호텔숙박료 등 포함하면 100만원 이상 드는데, 전형료도 시험 한 시간에 40만원이 말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2. [글로벌정책담당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동 도시 내에 설립하는 국제학교(초·중·고 과정)는 외국으로 유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을 유치하여 글로벌인재

로 키우고자 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2이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학교 운영 또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내의 유일한 공립으로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동 법(제189조의8)근거하여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 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라고 의제되어 사립 국제학교와 같이 운영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 국제학교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설립 추진하고 있는 학교이나, 법적근거에 의하여 2010.4.29. 운영위탁 협약 체결하여 2011.9월 개교를 위한 학생 입학전형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법인인 (주)YBM시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수업료 및 입학전형료 징수절차 등에 관해서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과부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등록금

질의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설립목적인 외국에 나가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대체효과를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고 해서 NLCS제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4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나오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국책 사업내지는 국책프로젝트로 외국에 나가는 수요층의 외화낭비를 막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변질되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글로벌정책담당관]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국내를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세계 최고의 명문 학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해외 명문 사립학교는 수준 높은 교사 확보 등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수업료 등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NLCS Jeju의 등록금은 Junior 24,150천원, Middle 25,300천원, Upper 28,750천원이며, 기숙사비는 Junior 13,800천원, Middle과 Upper는 14,950천원 입니다. 학비가 다소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도입,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수준 높은 원어민 교사를 다수 채용해야 하고,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학비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영미권의 통상적인 조기유학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것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택 임대료, 생활비 등 고려시 부모동반 연간 유학 경비가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50%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학

교와 비교시에는 높은 등록금이지만 국제학교의 목적이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유학의 환경과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해외분교 설립 할 수 있는 지역

질의

-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내에 해외분교를 설립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9. [글로벌정책담당관]

- 현재 학교를 운영 중인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외국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가능하고 국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분교(고등학교 이하, 또는 고등교육기관 이상)를 설립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2. 기업도시 : 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 해남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8조)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4. 평택시, 김천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5.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 기업도시는 고등교육기관만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지역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유학생 지원제도 관련

질의

- 형편이 어려운 해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장학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6. [글로벌정책담당관]

- 현재 국가에서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대통령과학장학생(한국장학재단), 국비



유학생(국립국제교육원) 등이 있으나 모두 장학생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가 장학금 대출 제도는 예산 사정상 국내 학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실만한 국내 장학재단 목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국내장학재단 목록 * 분당중앙교회: <http://boondangchurch.org> * 삼성장학회: <http://www.ssscholarship.com> * 관정이중환장학재단: <http://www.ikef.or.kr> * 한미교육위원단: <http://www.fulbright.or.kr> * 신양문화재단: <http://www.sinyang.org> * 고등교육재단: <http://www.kfas.or.kr> * KOSNET
국비유학생: http://yuhak.interedu.go.kr/space/kookbi/pds/fpds_list.asp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http://www.eopportunity.or.kr>

현직 · 예비교사 1만명 외국파견

질의

- 첫째, 우수교원해외진출지원의 “시행 날짜”와 “파견인원 모집날짜”가 궁금합니다. 둘째, 교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파견정책의 모집인원”이 몇명인지요? 셋째, 파견교원 선발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알고 싶습니다. 별도의 시험이 있는지? 아니면 토익이나 졸업년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넷째, “해외파견 교사 모집”등의 정책 시행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2. 11. [글로벌정책담당관]

- ‘우수교원해외진출지원 5개년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2월 24일(목) 대전 한밭대에서 14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5개년 내에는 현직교사, 교사대를 졸업 후 임용되지 않은 예비교사, 및 교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들은 사업 성격에 따라 기간차를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3월 중순에 공고할 예정이며 6월말까지 평가를 통해 선발해 7월초에 선발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7월 말경에 사전교육 후 8월~9월 사이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 현재까지는 2개국에 총 30여명을 선발해 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규모나 최종 협약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 ‘10년 현직교사 선발의 경우 1차 서류심사시 TEPS S&W, 연구계획서, 경력 등을 통해 2배수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2배수 이상을 선발 후 현지기관 담당관(현지 외국인)이 최종 인터뷰를 통해 선발하는 과정

이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큰 틀에서 변화는 없으나 사업별 성격에 따라 선발 과정이나 요구내용들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넷째, 관련공고는 해당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내 국제학교 입학 및 학력인정

질의

- 아이가 9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가게 되며 한국 학력인정이 되는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대학을 가려면 한국 학력인증이 필요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글로벌정책담당관(글로벌인재협력팀)]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국내학력인정을 위한 인가는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신청받아 허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자녀분이 입학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학교에서 국어·사회 교과를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한 내국인 학생은 국내학력인정이 가능하며,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국어, 사회 교과를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국내학력인정이 가능합니다.

한국내 외국인학교 다니는 한국인의 학력인정

질의

- 한국내 외국인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의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나요? 졸업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4. 8. [글로벌정책담당관(글로벌인재협력팀)]

- 2009.2.6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외국인학교 내국인 졸업생도 국내 학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1.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증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 학교이거나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국어 및 사회(중.고등학교



의 사회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 교과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에 한합니다.

- 이 경우가 아닐 경우 국내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검정고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입 준비시에는 대학에서 정한 '외국학교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요강을 활용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외국인학교 내국인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력인정학교들이 개교준비 중에 있습니다.

WEST프로그램 상세 정보

질의

-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라도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게 꿈입니다. 교과부 정책으로 인해 대학교 학생들이 미국을 가는데 6개월 동안은 어학연수를 받고 6개월은 인턴형식으로 일을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9. [글로벌협력담당관]

- WEST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학연수와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의 구성(5개월 어학연수+최장 12개월 인턴십+1개월 여행 등 최장 18개월)등 프로그램의 개요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http://west.mest.go.kr>로 방문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자료 보는 방법

질의

-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자료 보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0. [인재정책과]

- 정책자료를 검색하시려면, www.prism.go.kr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정부부처 및 기타 산하기관의 연구 과제 및 연구 보고서를 탑재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기 술 대 학 에 준 하 는 각 종 학 교 에 범 위

질 의

-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기준에 뭔가요?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면 재단법인 설립만으로 전통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회 신

회신일 : 2011. 4. 12. [취업지원과]

-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범위에 전통술의 제조 및 연구개발을 교육하는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기술대학 설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대학은 고등교육법 제55조에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연구,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며, 학위과정(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 정 이 수 형 자 격 제 도 에 대 해 서

질 의

- 이수형자격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회 신

회신일 : 2011. 5. 31. [취업지원과]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수형자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원인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또한 과정을 이수했다고 무조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간 일회성 검정 그쳤던 것을 교육훈련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훈련과정의 질은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검정시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검정의 분리로, 민원인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현장의 과정과 다소 분리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주도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그 표준을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며, 평가 인증된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게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강화시키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업무의 연장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훈련과정을 인증하는 것으로 검정시험만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미스 매치' 현상이 해소되고, 기업의 재교육 비용 절감, 경쟁력 있는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왜 하는지

질의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5. 27. [취업지원과]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단순히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도 도입할 계획이며 해당 학교는 교육과정을 산업계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하고 체계적인 질관리를 해야 하며 다양한 평가를 거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 해당 전공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주어질 것이고 현재 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보다 과정이수형 자격 획득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우려

질의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하면 이제까지 힘들게 자격증을 딴 사람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학교만 졸업했다고 무조건 자격증을 주면 오히려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5. [취업지원과]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학교 질 관리를 통한 별도의 자격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또는 학생에 대한 평가·인증 거쳐 이를 통과한 경우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지금은 한 번의 시험으로 자격증을 부여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격증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일-교육과정-자격의 연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세부 운영 방법

질의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나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뭐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3. [취업지원과]

- 국가기술자격에 과정이수형 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은 고용부에서 정책 과제 연구중이며, 현재 인증된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하는 자격은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사서,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의 경우입니다.
- 해당 교육과정 이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과제 연구가 완료되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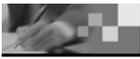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 허가 자격증인지 문의

질의

- 00처방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허가 받은 민간자격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취업지원과]



- 00처방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 1항2호에 따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 불가판단을 받은 자격으로서 앞으로도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우리부는 상기 자격증을 포함한 미자격 민간자격이 과장광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법령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민간자격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자격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할 예정이며, www.pqi.or.kr을 통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검색하시어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 우려

질의

- 전문대학을 졸업 후 기술계공부를 더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3년째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기술계자격증을 졸업만 하면 지급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학의 졸업이 너무나도 쉬운데 자격증의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되며 중요자격증의 경우(건축, 전기, 토목,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것인데.. 이렇게 졸업만 하면 지급되는 것 포퓰리즘이며 선심성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7. [취업지원과]

- 현재 자격증 취득은 2가지 경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 인증된 교육과정 이수, ② 별도 검정시험 통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특성화고·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질 관리하고 산업계요구 및 자격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자격을 수여하는 첫 번째 경로로써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해당학교를 졸업한다고 무조건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현재 특성화고·전문대학의 일부자격증은 관련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론시험은 면제되고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검정기능 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첫째, 학교 교육과정 비정상적 운영일부학교가 학생들의 자격취득을 위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또는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자격취득 과정을 3개월 정도로 방과 후에 개설하여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둘째, 일부 자격증은 학원 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학생

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셋째, 산업체에서는 자격의 기준과 검정방법을 강화할 것을 요구, 직업교육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습득한 이론·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또는 자격 검정 체제를 요구합니다.
- 우리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규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통하여 자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동 제도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핀란드, 호주 등에서 시행),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학원 수강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국가기술자격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일’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
- 이렇게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목표, 교육프로그램, 교사진, 시설·설비 등 다양한 기준을 통과한 교육기관에 한하여 과정이수형 자격 교육과정을 선정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평가를 통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검정형 자격제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과 객관적 평가과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고 검정형 자격제도도 종전과 같이 병행될 것이므로 기존 자격 취득자 및 자격 취득 예정자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에 과정이수형 자격 도입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연구 중에 있으며 향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 공인절차 관련

질의

- 민간자격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공인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3. [취업지원과]

- 민간자격등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pqi.or.kr>)에 등록되어 있는 2011년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 정보 및 신설 절차

질의

- 식품 분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과 등록 민간자격증에 관하여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법령중 하위 법령(예를 들면 훈령) 등을 기반으로 자격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국가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지에 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0. [취업지원과]

- 민간자격 최신정보는 www.pqi.or.kr에 접속하시면 등록된 민간자격 및 공인 민간자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정보를 득하신 후 추가 사항이 필요하시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2-3485-5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자격기본법제 11조에 의하면 국가자격은 국가법령으로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국가자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총 17개부처/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에 따른 국가자격은 23개 부처가 운영하여 대표적으로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면,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문의하시면 되고, 국가자격은 기술자격이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시고, 개별법으로 접근하시려면 관련부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민간자격증

질의

- 현행법상 민간자격 등록할 때 1회 발급 실적이 있어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미리 발급하고 나서 이후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제도이며, 법률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 [취업지원과]

- 미등록상태에서 자격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자격을 운영함에 있어, 당초 자격등록제를

시행할 때, 사회적 수요 및 민간자격 관리자의 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위해 1회 이상이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 대규모 공사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슷)

- 최근 미등록 민간자격 사회통용 및 과장광고로 인해민간인의 피해가 커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부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고안 중에 있으니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되지 않은 협회가 민간자격증발급시 효력

질의

- 등록되지 않은 협회가 자격증을 발급해줄 경우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 이때 자격증 발급이 아닌 수료증 발행인지
 - 민간자격증 신고, 등록을 하는 것과 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1. 28. [취업지원과]

- 민간자격은 민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누구든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자격의 효력은 수요가 있는 쪽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민간자격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규정이거나, 현재 일부 단체 등에서 등록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증 발급해도 되는지

질의

-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이 있으며, 민간자격증의 경우 자격증기본법 17조에 의하여 다음의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내용과 상관없이 일반 학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위 조건과 상관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4. [취업지원과]

- 현재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누구든지 금지 분야 외에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 운영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율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등록하지 않은 민간자격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부는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하는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www.pqi.or.kr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되지 않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등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피해대책

질의

- 국가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등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피해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0. [취업지원과]

- 민간자격 등록제는 다양한 자격 수요에 대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선택은 시장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어 민간자격이 남발하고 경쟁하게 됨에 따라 과장광고 및 수익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에 이러한 사항은 국회, 언론 및 관계부처가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고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러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발표될 예정이오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때 민원인께서 관심을 주셔서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상 금지된 자격 점검

질의

-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행동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이 치료사 자격증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금지 영역이라서 그런지 점검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금지 영역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30. [취업지원과]

-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및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신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단독으로 결정하는 하지 않고, 소관부처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결정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자격이 있다면 결격사유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며, 현행법상 금지 영역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불법일 것입니다.

☉ 등록되지 않은 치료사 자격증 제재 방법

질의

- 자격기본법상 금지분야에 대한 자격관리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등에 대한 정부대책

회신

회신일 : 2010. 10. 25. [취업지원과]

- 민간자격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재는 등록제이지만 의무는 아님), 허위 과장·광고하는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마련·적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시안을 마련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법령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입법예고 등 대 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민간 치료사 자격 발급 관련

질의

-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언어치료사, 원예치료사, 독서치료사, 행동치료사, 무용치료사 등 각 종 치료사 자격증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 치료사 자격증 발급이 불법인지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은 불가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발급은 현장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안 되지만 자격증 발급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3. [취업지원과]

- 우리나라 자격유형은 크게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사내자격 등으로 구분되며, 현행법상 민간자격은 신설 제한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국가의 법인, 단체, 개인) 다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 그리고 자격증 수여 절차나 관련기관,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범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민간자격이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신설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

☉ [사]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검정시험관련

질의

- 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검정시험 1~준3급은 공인급수이고 4급~8급은 교육급수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4~8급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닙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1. 30. [취업지원과]

- 한국어문회에서 실시하는 한자능력검정 중 공인받은 급수는 1, 2, 3 급, 3Ⅱ급 입니다. 나머지 급수는 한국어문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정시험입니다. 아울러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다양한 민간자격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취업을 산정 기준 중 건강보험 부분

질의

- 지방에 있는 대학교 4학년 재학생입니다. 최근에 대학교 취업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1인 사업)를 등록하면 국민연금은 자동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만 건강보험은 가입은 안 되는 취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나요? (1인 사업자 등록시)취업률에 포함되려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2. [취업지원과]

- '10년부터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기준이 취업자로 됨에 따라 민원인 같은 경우 미취업자가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대학 측에서의 부풀리기를 억제하고자 신뢰성을 담보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통계로써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12년부터는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국세DB로의 연계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경우는 내년부터 취업자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고 하는지

질의

- 학과에서 면허증 발급된 것을 찾으려면 건강보험증사본 혹은 재직증명서, 병원 직인이 찍힌 취업확인서, 병원 사원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증 지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 왜 이런 걸 내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26. [취업지원과]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관련하여 '10년부터 건강보험DB연계 조사방식으로 변경하여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수합된 졸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을 거쳐 취업자여부를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확인이 안된 졸업자의 경우 대학에서 진학자, 입대자, 기타 등을 구분하여 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건보DB연계 취업자에 대하여는 여타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지는 않습니다.

취업을 산정 기준

질의

-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안) 취업률 관련 해외취업률의 경우 해외 취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취업률산정시 하사관, ROTC, 장교입영의 경우 의무복무라도 건강보험가입시 취업률 산정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8. [취업지원과]

- 해외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비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3개월 이상의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일가 필요하며 법무부 DB를 통해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교입영의 경우 의무복무라도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취업률 산정에 포함됩니다.

취업을 산정 질의

질의

- 취업률산정시 일반 사병도 취업률 산정에 포함되는 지지와 하사관도 취업률 산정에 포함되는지, 1인 창업에 대한 취업률 산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3. 25. [취업지원과]

- 일반사병의 경우는 취업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취업률 산출시 분모인 취업대상자 산정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또한, 하사관의 경우는 1차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취업자로 산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입대자로 간주됩니다. 금년 대학역량강화사업에 1인창업자는 포함이 어려우며 12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한 취업률 산정 관련

질의

- 건강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한 취업률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취업률 산정시 포함되지 않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만 산정되는지요?
 2. 하사나 상근예비역은 직장가입제외자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5. [취업지원과]

- 취업률 산정은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취업자로 그렇지 않은 병역법에 의한 입대자는 입대자로 산정되어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특성화고 실습에 보수를 주는지

질의

- 특성화 실업계를 다니데 의무적으로 현장 실습을 가야해서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가 너무 힘든데 임금이나 차비는 주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1. [취업지원과]

- 병원실습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교육의 과정입니다. 780시간의 병원실습을 해야만 시험칠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즉 전국의 어떤 특성화고도 병원실습을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오히려 대학병원 같은 곳은 돈을 지불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떤 특성화고의 학생도 병원실습에서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



한 교육의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근거

질의

- 해외 인턴십을 한 학생에게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관련 법 또는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6. [취업지원과]

-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은 관련법과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본계획에 의하면 신청대학 요건이 학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된 대학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의거 학칙을 개정한다기보다는 대학 스스로 먼저 학칙에 반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등에 응모해야 합니다. 타 대학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학칙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수업적심사 관련 규정

질의

- 대학의 교무행정에서 교수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교육, 연구 등 대학 내 규정집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근거한 ‘연구윤리’ 규정을 대학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교수의 연구업적을 심사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의 대학 규정이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도 모두 해당된다고 공지하고 행정처분을 해도 되 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3. [학술인문과]

- 일반적인 경우, 교수의 업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자체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을 따릅니다. 이 경우 연구업적도 예외는 아니며, 연구윤리규정 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연구업적도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학도서관 개방 요청

질의

-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근처 대학도서관 출입이 불가능하고, 도서관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은 왜 개방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1. [학술인문과]

-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으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이용은 각 대학도서관의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대학도서관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우리부도 각 대학도서관이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로 대학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도서관 개방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운영방법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대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은 해당 대학도서관 담당자와의 직접 대화 혹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도서관 평가 시 지역사회 연계 반영

질의

- 대학도서관 평가에서 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협력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3. [학술인문과]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1차적인 이용자는 교수, 학생 및 직원과 같은 대학 내 구성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도 학내 구성원



에 대한 최고 수준의 학술정보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서관은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가공·보존하여 필요한 곳에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문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고려한다면 대학도서관 역시 지역 사회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다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가 학내 구성원들의 도서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따라서 대학도서관 평가에서도 그 비중은 다른 많은 평가 기준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가령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가 우수한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대학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연구윤리 규정이 없는 경우 처리방법

질의

- 대학교수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나 대학 내 연구윤리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학측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2. 15. [학술인문과]

- 1. 연구윤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연구윤리진실성(조사)위원회 등과 같은 조사절차를 거쳐 2. 해당 대학에서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원의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 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동 항에 해당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사례집

총괄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박준모
채안병

기획

사무관
교육연구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이영섭
김동호
김창주
박지영

편집정리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황정숙
송시은
최은영
최진아
박선은

인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PDF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또한 사례집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